월간

재정포럼

2014. August_Vol.218

8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 변화/ 최경수

현안분석

Piketty(2014)를 통해 살펴본 불평등도 심화와 조세정책적 대응방안/ 노영훈

공적연금 충당부채 회계의 이해/ 김완희

특집

2014 세법개정(안)

공공정책포럼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재정포럼

2014.08 · Vol.218
월간 재정포럼 2014년 8월호 통권 제218호_송파라00035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전화 02) 2186-2130~4 홈페이지 www.kipf.re.kr

CONTENTS

권두칼럼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 변화 · 최경수 02

현안분석
Piketty(2014)를 통해 살펴본 불평등도 심화와 조세정책적 대응방안 · 노영훈 06
공적연금 충당부채 회계의 이해 · 김완희 27

특집 · 2014 세법개정(안)
2014년 세법개정(안)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고광효 41
2014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정책방향 · 안종석 47

공공정책포럼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 54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스페인-2015년 세법개정 초안 발표 외 63

정책흐름
2014년 세법개정안 104
새 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방향과 1차 중간평가 결과 · 후속조치 확정 118
지방세외수입금 "납부는 쉽게, 관리는 효율적으로" 120

이슈&포커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중해야"…전문가들 세법개정안 갑론을박 외 121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 변화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은 먼저 발간된 프랑스보다 미국에서 크게 주목을 끌고 있다. 피케티가 다룬 '불평등' 문제는 프랑스에서는 오래된 이슈이지만, 미국에서는 그동안 부각되지 못하였다. 그러다 최근에 불평등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으며, 게다가 피케티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깜짝 놀랄만한 증거를 보여주었다. 전후 20세기에 소득분포가 크게 압축되면서 미국에서는 성장이 분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혹은 희망이 있었으나 금융위기는 이를 무산시켰으며 경제가 분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마저 흔들어 놓았다. 피케티에 의하면 미국에서 상위 10%의 소득비중은 현재가 1920년대보다 높다.

우리나라에서도 불평등은 지금까지 주류경제학의 관심사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보수정부의 경제수장이 '성장보다 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을 천명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오히려 이를 실현할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수준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어느 정도인가? 통계청은 지금까지 전국가계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불평등이 OECD에서 중간 정도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조사에는 최상위와 최하위 소득층이 누락되고 있다는 인식이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이 조사에 의하면 상위 10%에 해당하는 2010년 가구소득은 4인 가구 세전소득 기준으로 약 660만원이므로 체감보다 낮다. 표본을 수정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상위 10%(P90)의 가계소득은 약 8백만원 정도이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불평등도는 미국보다 낮지만 영국보다는 높으며 OECD 국가들 중 상위권이다. 이보다 더 높게 평가한 연구도 있지만 서베이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아니며, 영국보다 지니계수 값이 크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연금제도의 미성숙

도 한 요인이지만 그 영향이 크지는 않다.

자산분배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필자가 아는 한 신뢰도가 높은 추정결과는 없으며, 정부도 상세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피케티는 대학원생 시절부터 조세통계를 이용한 불평등 측정에 관심을 가졌으며 꾸준히 통계자료를 축적해 왔다고 한다.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외국과 비교해서 높다면 자산분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얻어질 가능성이 높다.

추이를 살펴보면 OECD 주요 선진국에서 시장소득(세전소득) 지니계수의 증가 시기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며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최상위층에 대한 소득집중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피케티의 21세기 불평등 확대는 이를 말한다. 선진국에서 2000년대 이후에는 중위-하위 격차가 더이상 확대되지 않아 지니계수는 증가하지 않았다. 미국의 노동소득 분포변화에서 불평등 확대는 대부분 상위 1% 소득 증가의 결과이며 이하 99%에서는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미국의 소득 불평등 확대의 주요인은 노동소득이며 경영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있다는 설명은 이러한 내용을 의미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1992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며 이후 증가세는 멈추고 있다. 20년간의 지니계수 상승폭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최고는 아니더라도 매우 큰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경제구조 조정이 수반되었으므로 소득 불평등 확대가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불평등 확대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제구조 조정의 결과라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소득 지니계수 상승은 20년간 진행되었으므로 OECD 선진국들과 같이 완만해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 추정치는 전국가계조사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대표성이 보다 높은 표본에서 추이가 어떠한지는 확인할 수 없다. 외국과 같은 추이가 진행 중이라면 상위층에서 소득 집중은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노동소득 분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불평등 확대는 대부분 상위 1% 소득 증가의 결과이며 이하 99%에서는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소득 불평등 확대와 자본소득 증가

소득 불평등 확대와 더불어 모든 국가에서 자본소득 분배율 역시 상승하였다. 특히 미국에서는 노동 분배율이 1960년대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하락하였으며 임금소득의 GDP 대비 비율은 53%에서 44%까지 하락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소득의 일부가 자영업 소득에 숨어 있어 추세가 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상식에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으며, 문제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렷하지 않지만 이를 분리하면 1990년대 중반부터 노동 분배율이 하락하였음이 드러난다. 소득 불평등과 자본소득 분배율 변화 사이에 어떤 수학적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위소득자의 소득원천을 생각해보면 자본 분배율 증가는 소득분배를 불평등하게 함을 알 수 있으며 양자는 경험적으로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특히 미국의 경우 노동소득 상위 1%는 절반이 금융부문이므로 최상위에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은 사실상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가계와 기업의 순자산 증가를 비교하면 가계는 매년 약 35조원으로 1997년 위기 이전과 같으나 기업은 이전에는 약 10조원에서 100조원으로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통화금융의 확대는 제도부문 간 분배는 물론 자본 분배율 증가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소득 불평등 확대에 대한 무역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 분배율 증가에 대한 금융의 영향을 명시적으로 지적한 연구도 많지 않다. 다만 ILO가 이를 지적하고 있는데, ILO는 금융이 투기자본화하여 자원배분을 왜곡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둔화된 데에서 노동 분배율 하락의 원인을 찾고 있다.

불평등 확대의 요인과 추이를 살펴보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매우 많은 부분이 달라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규모가 작은 경제는 민첩한 변신이 가능하므로 우리 경제는 범세계적 흐름을 비켜갈 수도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무엇이 우리 경제의 과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인식 전환의 지체가 정책기조의 전환을 지연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상식에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으며, 문제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조세와 재정정책을 다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KIPF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안분석

■ **Piketty(2014)를 통해 살펴본 불평등도 심화와 조세정책적 대응방안**
노영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적연금 충당부채 회계의 이해**
김완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Piketty(2014)를 통해 살펴본 불평등도 심화와 조세정책적 대응방안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yhrut@kipf.re.kr)

Ⅰ. 서론

세계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률이 보편화되고 지속적 성장이 의문시되면서 장기적 침체가 우려되자 많은 경제학자들이 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라는 현재의 정치경제시스템이 과연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1] 특히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30여 년 동안 한 경제 내의 총소득 중 최상위 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top 0.1%, 1%, 10% income share)에 대한 국가별 연구를 통해 소득과 부의 분포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고조되었다. 최상위 소득비중을 통해 파악된 불평등도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변화패턴이 나타남에 따라 성장지향적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미국, 프랑스 등의 나라들에서조차 선거공약으로서 조세정책 발표와 조세개혁 보고서들이 범람하게 된다.

OECD는 영어사용권(예: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 등), 대 유럽대륙권(예: 프랑스, 네덜란드 등) 국가군별로 나누었을 때 전자 국가군에서는 후자 국가군보다 상위 소득집중도의 증가가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특징적 사실들(stylized facts)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위 소득계층으로의 소득집중도 현상은 소득원천별로 구분해서 살펴보았을 때, 자본소득보다는 근로 및 사업소득 쪽에서 집중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이용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는 미국 및 영국의 경우 기업 고위직 임원이나 금융계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증가가, 상위 소득집중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국가들에서 관찰되는 소득집중 현상의 대부분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의 오바마 1기 행정부 말기에 Buffet Rule 등의 발표를 통해 최상위 소득자들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겠다는 주장이나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후보의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을 70%로 올리자는 주장이 대두된다. OECD는 성장잠재

1) Barro(1997), Arcemoglu and Robinson(2012)

력을 훼손하거나 경제적 비효율성을 높이지 않기 위해, 고소득계층에 대한 최고한계세율은 인상하지 않으면서 평균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각종 대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올해 3월 피케티(Thomas Piketty)의 *Capital in the 21 Century*(이하 'C21C'라 칭함)가 발간되어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C21C 발간 이전에도 소득 및 부의 불평등도에 대한 관심과 이에 따른 연구들은 넘쳐날 정도로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큰 줄기로만 살펴보아도 대체로 아래의 3~4 갈래로 나뉠 수 있다.

- OECD의 2008년 및 2011년 보고서[2] 및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 웹사이트
- Anthony B. Atkinson, Thomas Piketty, Emmanuel Saez, Wolff 등의 논문들
- Luxemburg Income Study 및 Review of Income and Wealth 학회지 등
- Capgemini(and Merril Lynch or RBC), Frank Knight & Citi Group 등, Global Financial Group 내 Worldwide Wealth Management Division 내 보고서 등[3]

본고에서는 이들 중 가장 첫 번째인 OECD의 연구와 피케티의 연구 간 큰 차이에 대해 부연 설명해 보고자 한다. 후자가 소득 불평등 심화의 주요원인으로 자본소유의 집중에 따른 자본소득 쪽에 초점을 맞춘 반면, OECD 연구보고서는 고용노동사회정책

> "OECD 연구보고서는 소득 불평등성 심화문제를 자본 대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의 대가라는 2분법적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최근 30년간의 경제상황 변화를 감안했다."

국(Directorate for Emplyment, Labor and Social Affairs)이 중심이 되어 불평등도 심화 문제를 다루게 되면서[4] 임금 등 근로소득 쪽에서의 불평등성 심화와 그 원인 규명에 주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득 불평등성 심화문제를 자본 대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의 대가라는 2분법적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최근 30년간의 경제상황 변화를 감안하기도 한다.

OECD(2011)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지난 100년 중 첫 75년간은 총소득 중 고소득자가 가져가는 비율이 하락하다가 1980년대 이후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 추세를 설명하면서, 미국 등 몇몇 회원국들의 경우 소득세 신고서상의 소득을 구성하는 노동소득(Salaries), 사업소득(business income), 자본소득(capital income), 자본이득(capital gains) 등 그 원천별로 구성요소 분석을 했을 때 기업의 CEO, 금융권 고액연봉자들이 최근 25년간 더 많이 포함되었음을 보고하기도 한다.[5]

이에 본고는 피케티가 C21C에서 제기한 부의 불평등도 심화 문제를 OECD 보고서상의 소득의 불평

2) OECD,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t, 2008, Paris.
OECD,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OECD Publishing*, 2011, Paris.
3) 한 경제 내의 최상위 부자들의 분포에 대해서는 다국적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의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영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HNWI(High Net Worth Individual)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부표 1〉을 참조할 것
4) www.oecd.org/employment/database DB 사용
5)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도 유사한 현상을 보이나,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함

> “
> 피케티 연구의 핵심은 자본에 대한
> 수익률은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서 자본소유자인
> 최상위계층으로의
> 부의 집중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 ”

등도 심화연구들과 함께 살펴보고, 불평등도 심화를 완화하기 위해 그가 제시한 글로벌 부유세 도입 주장, 이에 대한 비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소득과 부의 결합분포에 대한 실증연구가 진행되어온 과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Capital의 주요 내용들: 소득 및 부의 불평등

한 개인이나 가구의 (1년간의) ‘소득’이라는 유량변수와 (한 시점에서 평가한) ‘부’라는 저량변수를 분석할 때 주로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먼저 실증적(empirical) 분석에서 자료이용 가능성이 높은 소득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러다 부에 대한 자료들이 축적된 한정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가구단위의 부에 대한 동태적 연구(household wealth dynamics)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양자 간의 인과관계로 연구초점이 이전되는 발전과정을 겪게 된다. 피케티 역시 그의 C21C 발간 이전에는 주로 미국 및 프랑스를 중심으로 소득 불평등성(Income Inequality: 이하 ‘Ⅱ’라고 칭함) 문제를 주 연구대상으로 삼다가 Ⅱ 심화의 원인을 찾으면서 보다 장기간의 추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 소득보다 더 오래전 과거로 돌아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프랑스에는 19세기 초부터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에 착안해 연구를 진행했다. 1791년부터 상속증여세 면제혜택이 귀족들에게 없어지고 등기소 내에 보관된 자료를 통해 재산소유 상황이 노출되게 된다. 18세기 사망자들의 재산을 통해 당시 생존하고 있던 자산가들의 자산분포를 역으로 추정하는 방법론을 상속재산 배율법(estate multiplier method)이라고 하는데 〈부록〉에 소개되어 있다.

[그림 1]은 1810년부터 2010년까지 200년의 기간 동안 프랑스의 가구단위 부의 불평등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이는 시간적으로 한 가구를 추적한 panel 자료는 아니며 각 연도별 횡단면 미시자료(cross-section micro data)들을 기초로 계산한 집계치를 연결한 그림이다. 상위 10% 및 최상위 1% 부유층 가구들이 총 부의 80% 이상과 45% 이상을 각각 차지하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1910년부터 1970까지의 기간 동안 몰락하여 1970년 이후에는 각각 60% 및 20%대에서 대체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패턴을 보이게 된다.

[그림 1] 프랑스의 부의 불평등도 변화(1810~201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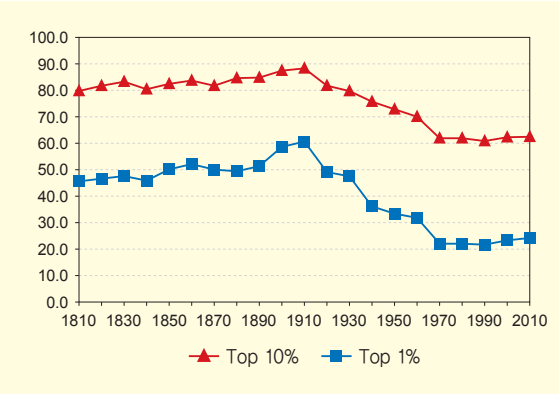

자료: Piketty, *Capital in the 21century*, p.340, TS10.1의 [Figure 10.1] 인용

피케티 연구의 핵심은 자본에 대한 수익률은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서 자본소유자인 최상위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세계대전이나 대공황과 같은 자본에 대한 파괴현상이 없는 한, 최상

위 1% 또는 0.01% 소득 분위자들은 대부분 자본소유자들로서 소득의 대부분이 저축되고 재투자되며, 또 자손들에게 상속되므로 소득이나 부의 불평등성(inequality)은 심화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C21C에서 피케티는 과거의 소득 불평등성 심화가 장기적 축적의 결과, 부의 불평등성(Wealth Inequality: 이하 'WI'로 칭함) 심화로 이어진다는 기존 사고에 추가하여, 소득 불평등성의 악화는 WI 때문에 발생한다는 반대방향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간단한 이론적 모형으로서 2가지 기본법칙이 나와 있다.

자본주의 제1기본법칙 $\alpha = r \times \beta$(α: 국민소득 대비 자본소득비율(Capital income/Total income), r: 평균 자본수익률(Capital income/Capital stock), β: 국민소득 대비 자본스톡비율(Capital stock/Total income))

자본주의 제2기본법칙 $\beta = \frac{s}{g}$

(g: 성장률($\frac{\dot{Y}}{Y}$), s: 저축률)

C21C에서는 제2기본법칙을 통해 불평등도의 심화를 국가별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제1기본법칙을 통해 자본소득의 비율, 즉 한 경제 내 소득 중 자본이라는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비율인 α가 장기간에 걸쳐 U자형 변화패턴을 보였음을 설명하면서, 자본이 축적되면서 β가 상승하고 성장률(g)이 하락하면서 자본의 소유 집중도가 더욱 심화되었던 나라들의 사례들을 통해 그의 간단한 이론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C21C의 제5장인 장기적인 자본/소득비율에서 피케티는 자본주의 제2기본법칙이라고 부르는 $\beta = \frac{s}{g}$관계식이 40년(1970~20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같은 나라들의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동 수식은 경제학자들에게는 솔로(Robert Solow)의 자본(K) 및 노동(L) 2-생산요소로 산출물(Y)을 생산하는 Cobb-Douglas형 생산함수의 경제발전모델을 통해 보다 손쉽게 설명할 수 있다. $y = k^{\alpha}$와 $\dot{k} = sy - (n+\delta)k = 0$로 구성되는 Solow 동태모델에서 1인당 소득(y)과 자본집약도($k = K/L$)가 변화하지 않는 정태균형(steady state equilibrium)이 달성되는 상태가 바로 피케티가 상정하는 장기적 자본소득비율 관계식이 성립하는 상태이다. 즉, $s = (n+\delta)\frac{k}{y} = (n+\delta)\frac{K/L}{Y/L} = (n+\delta)\frac{K}{Y}$가 되므로 한 경제 내의 총(민간)자본스톡의 소득배율인 K/Y는 장기적으로 $s/(n+\delta) = s/\beta$로 수렴하는데, 여기서 β라는 성장률은 위의 식들이 모두 인구 1인당으로 표시되었으므로 감가상각률(δ)과 인구증가율(n)의 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케티는 만일 어떤 경제의 저축률이 12%로 주어졌는데 성장률이 2%가 아닌 1.5%로 하락하면 장기적인 자본/소득비율은 6년(=12%/2%)이 아닌 8년(=12%/1.5%)으로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성장률이 2%가 아닌 3%로 상승하면 자본량은 국민소득의 4년(=12%/3%)치에 해당하도록 조정된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예로서 1인당 국민소득이 1.5~2% 증가하면서 인구

> "피케티는 과거의 소득 불평등성 심화가 장기적 축적의 결과, 부의 불평등성 심화로 이어진다는 기존 사고에 추가하여, 소득 불평등성의 악화는 부의 불평등성 때문에 발생한다는 반대방향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 상위 소득자 10% 계층에는 여전히 고액연봉의 근로소득자도 포함되어 있지만 1%로 국한하게 되면 이들 소득의 대부분은 자본소득이므로 1970년대 이후 다시 상위 10%의 소득 불평등도 증가는 대부분 최상위 1% 계층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증가율은 0이어서 총성장률이 1.5~2%인 많은 유럽 국가들은 저축률이 12%일 때 6~8년치 국민소득에 해당하는 자본량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다 자본집약적인 경제가 되는 장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본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소득비율이 높아져서 불평등도가 심화하게 된다.

과거 피케티는 사에즈(Emmanuel Saez)와 공동으로 미국의 연방소득세가 도입된 1913년 이후 1998년까지의 소득 불평등도를, 소득세 신고자료를 통해 분석한 Piketty & Saez(2003) 논문을 통해 지적하였다. 상위 소득자 및 상위 임금소득자 비중은 장기간에 걸쳐 'U자 모양의 변화'를 보이는데 1920년 후반 세계공황이나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자본소유자들이 겪은 대규모 충격은 상위 자본소득자들에게 영구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그 이후에도 높은 누진적 소득세와 상속세 제도 때문에 이러한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도록 작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상위 노동소득의 경우 제2차세계대전 전까지는 대체로 일정비율을 유지하다가 전쟁기간 중 급락했고 196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전쟁 전 수준보다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위 소득계층 구성원들이 과거의 자본소득자(rentiers)에서 고액 노동소득자(working rich)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소득분위 상위 10%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1930년대 초 45% 수준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2%로 낮아졌다. 그러다 1980년대 들어 특히 최고소득세율을 크게 낮춘 1986년 세법개정 이후 다시 40%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전반부만 보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쿠즈네츠 교수가 제시한 결론인 '경제성장에 따라 불평등도가 감소한다'는 가설이 지지되는 것처럼 보였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시장자본주의의 내생적 모순과 한계로 자본수익률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한 위안으로 주류 경제학자들이 쿠즈네츠 교수의 곡선을 믿었던 것이다. 반면 피케티는 쿠즈네츠가 주로 1950년대 및 1960년대 자료만 보았으므로 U자를 거꾸로 한 모양의 곡선 오른편이 60년대 말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 상위 10%를 더 세분화하여 [그림 3] 및 [그림 4]에서와 같이 상위 1%나 최상위 0.1% 계층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소득점유율의 1970년대 이후 변화는 새로운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을 피케티는 강조하였다. 상위 소득자 10% 계층에는 여전히 고액연봉의 근로소득자도 포함되어 있지만 1%로 국한하게 되면 이들 소득의 대부분은 자본소득이므로 1970년대 이후 다시 상위 10%의 소득 불평등도 증가는 대부분 최상위 1% 계층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이는 OECD(2011)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고소득자 계층을 1% → 0.1% → 0.01%로 좁혀나갈 때 해당 고소득자의 소득원천을 살펴보면 자본이득(capital gains), 자본소득(capital income), 사업소득(business income)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는 특징의 발견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림 2] 미국의 소득 상위 10% 집중도의 장기적(1913~2012)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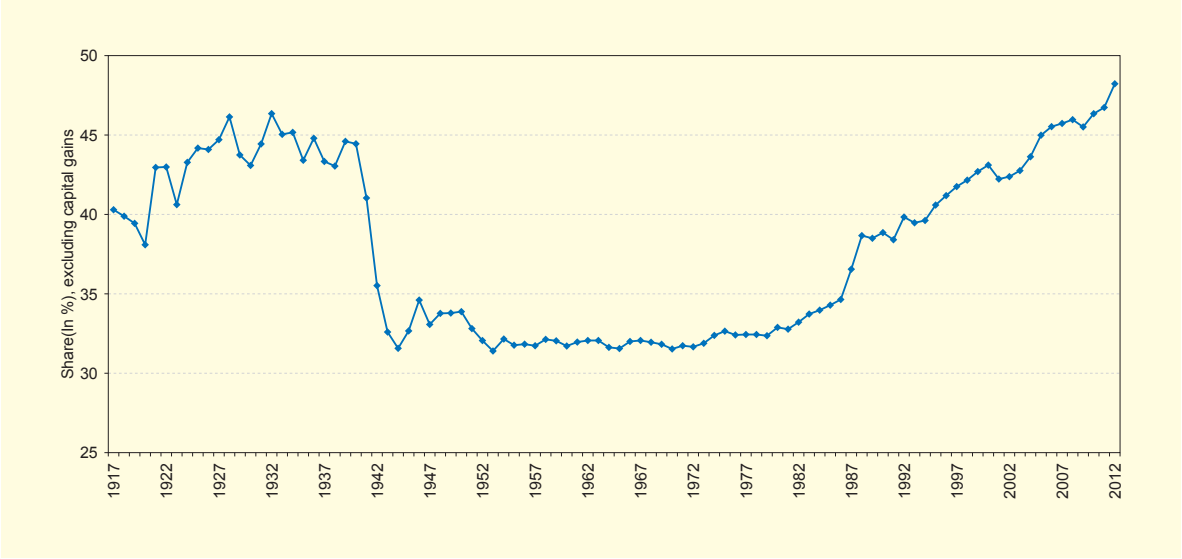

자료: Piketty & Saez(2001)의 [Figure I] The Top Decile Income Share(1917~1998)를 http://g-mond.parisschoolofeconomics.eu/topincomes/ 에 의거하여 2012년까지 update

[그림 3] 미국의 소득 상위 계층별 소득집중도의 장기적(1913~2012)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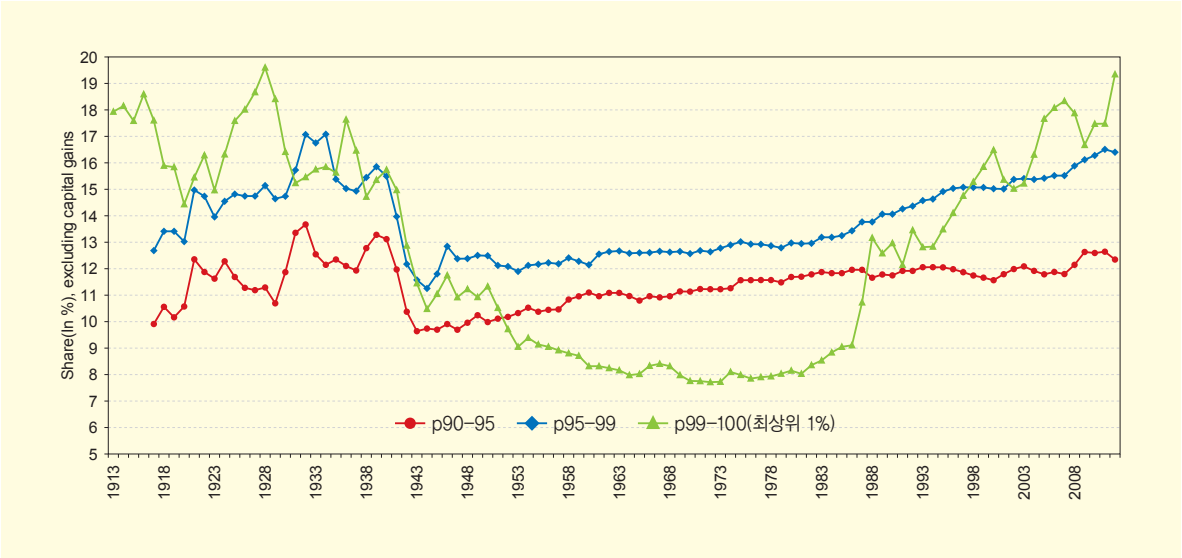

자료: Piketty & Saez(2001)의 [Figure II] Income Shares of P90-95, P95-99, and P99-100(1917~1998)을 http://g-mond.parisschoolofeconomics.eu/topincomes/ 에 의거하여 2012년까지 update

[그림 4] 미국 최상위 소득계층(0.01%)의 소득집중도의 장기적(1913~2012)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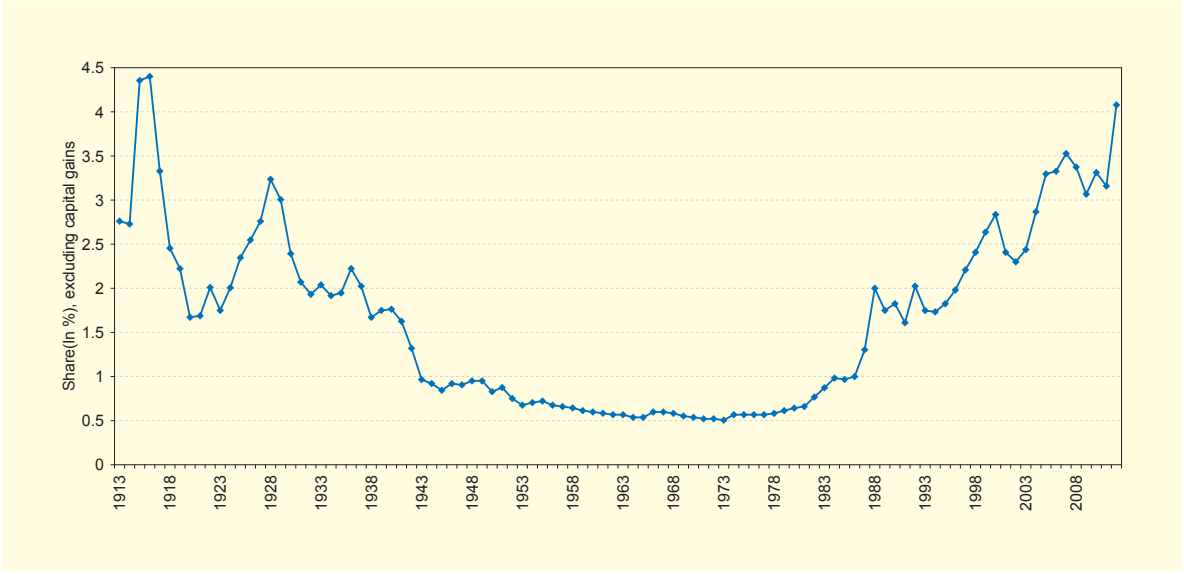

자료: Piketty & Saez(2001)의 [Figure Ⅲ] The Top 0.01% Income Share(1917~1998)를 http://g-mond.parisschoolofeconomics.eu/topincomes/ 에 의거하여 2012년까지 update

[그림 5]는 181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20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부의 집중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또 유럽과 미국 간에 지역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부의 상위계층 집중도는 상위 1%이건 상위 10%이건 유럽이 미국보다 훨씬 높다가 1960년대 들어 역전되어 대략 10%p 정도 유럽의 부 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케티는 영국, 스웨덴, 미국에 대해서도 수백 년 된 세금신고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그림 6] 내지 [그림 8]과 같은 부의 집중도 추세를 보고하고 있다. 특히 부의 최상위 1% 계층 집중도는 1910년에서 1970년 기간 중 스웨덴,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에서 급격히 하락하여 각각 50~60%, 40~60%, 50~70% 수준에서 20% 이하, 20~25%, 20~30%대로 반감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유럽과 미국에서의 부의 불평등도 변화 (1810~2010)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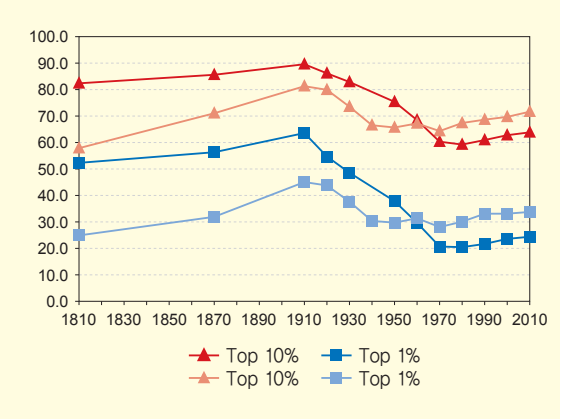

자료: Piketty, *Capital in the 21century*, p.349, TS10.6의 [Figure 10.6] 인용

[그림 6] 영국에서의 부의 불평등도 변화(1810~201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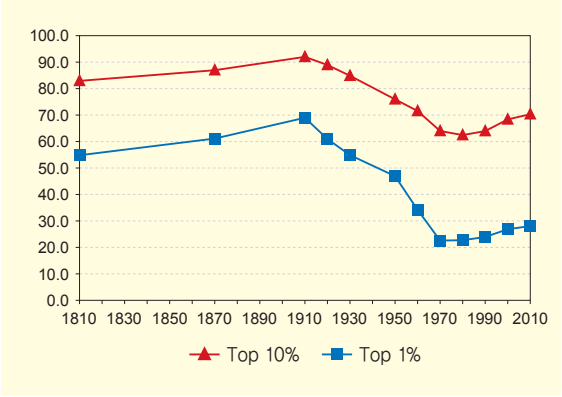

자료: Piketty, *Capital in the 21century*, p.344, TS10.3의 [Figure 10.3] 인용

[그림 7] 스웨덴에서의 부의 불평등도 변화(1810~201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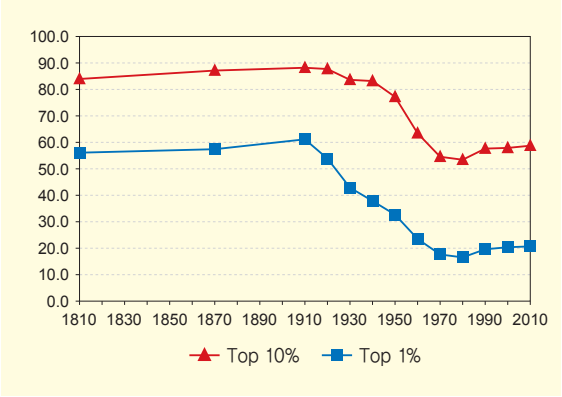

자료: Piketty, *Capital in the 21century*, p.345, TS10.4의 [Figure 10.4] 인용

[그림 8] 미국에서의 부의 불평등도 변화(1810~201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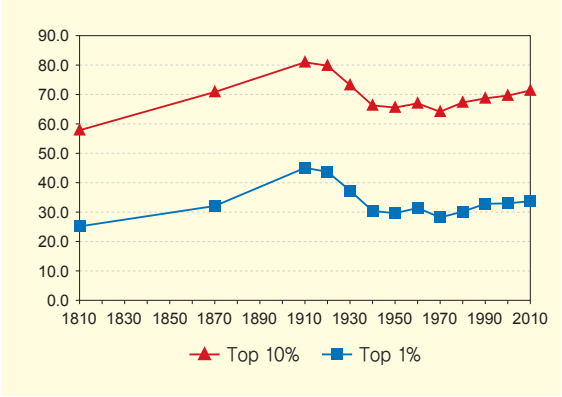

자료: *Piketty, Capital in the 21century*, p.348, TS10.5의 [Figure 10.5] 인용

Ⅲ. Piketty(2014)에 대한 두 가지 비판적 관점: 자료문제 및 정책대안 실효성

C21C의 미국 내 발간 이후 2달여 동안의 주요 언론의 서평 및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논평에서 드러난 두 가지 비판적 관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참고로 〈부록〉에는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Financial Times*, *Economist* 등 세계 유수한 일간지 등에서 피케티의 C21C에 대한 신간 서평 및 평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피케티가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수백 년에 걸친 기간 동안 소득 및 부의 집중을 실증분석 한 연구업적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있지만 그가 주장한 글로벌 부유세 부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고 압축하여 정리할 수 있다.

1. 분석자료에 대한 비판: *Financial Times* 기사를 중심으로

C21C가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피케티가 15년간 정리한 20여 개 국가의 수백 년간의 데

이터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의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C21C에 쓰인 통계자료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연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Financial Times*(이하 'FT)에서는 피케티가 사용한 분석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원자료를 잘못 인용하였다는 비판이다. 피케티는 스웨덴의 부의 집중도를 보기 위해 Waldenstrom(2009)[6]의 원자료로 참고하였지만,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된 C21C의 통계자료와 그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우선, 〈표 1〉은 원래 자료인 Waldenstrom(2009)에 실린 스웨덴의 부의 집중도 및 상속세를 보여주는 도표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1920년도 스웨덴 상위 10%, 1% 부의 집중도는 각각 음영으로 표시된 91.69%, 51.51%이지만 〈표 2〉의 피케티가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해당 수치는 각각 87.7%, 53.8%로 원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C21C에 서술된 영국 상위 10%의 부의 집중도는 71%이지만 영국 통계청에 기록된 해당 수치는 44%밖에 되지 않는다.

〈표 2〉 스웨덴의 부의 집중도

(단위: %)

(Share of the top x% wealthiest in the total wealth)	Sweden		
	Top 10%	Top 1%	Top 0.1%
1810	83.9	55.9	
1870	87.2	57.3	29.6
1910	88.2	61.1	29.4
1920	87.7	53.8	
1930	83.6	42.8	
1940	83.2	37.7	17.7
1950	77.3	32.8	9.7

자료: http://piketty.pse.ens.fr/en/capital21c2, the set of spreadsheet files (xls), Table S10.1 재인용

〈표 1〉 스웨덴의 부의 집중도 및 상속세

	Net worth (net marketable wealth)									
	Wealth tax data, market values					Estate tax data, tax values				
Year	P90-100	P95-100	P99-100	P99.9-100	P99.99-100	P90-100	P95-100	P99-100	P99.9-100	P99.99-100
1873						88.34	81.19	60.46	35.6	5.75
1874						85.82	77.35	52.82	24.23	4.41
1875						85.83	77.49	54.18	24.46	6.79
1876						86.14	77.66	55.69	23.15	7.4
1877						85.99	77.39	54.07	23.55	5.6
1906						87.38	78.37	57.75	26.14	4.36
1907						88.32	79.88	61.29	31.7	11.19
1908	86.04	76.17	53.79	28.13	13.64	88.15	79.44	61.1	27.01	3.57
1920	91.69	79.25	51.51	25.37	9.6					
1930	89.49	77.35	50.05	22.35	9.23					

자료: Waldenstrom, *Lifting All Boats?*, p. 120 Table3. A1 재인용

6) Waldenstrom(2009)의 p. 120, Table3. A1

둘째, 국가별 대표수치를 제시함에 있어서 정교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표 3〉은 피케티가 공개한 자료의 일부분인데 유럽의 부의 집중도를 구하는 계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적은 인구의 스웨덴에 대한 가중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FT는 지적하였다. 계산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프랑스, 스웨덴, 영국 각 나라의 해당 수치를 더하고 단순 평균한 수치를 유럽의 수치로 사용하고 있는데 스웨덴의 인구는 영국, 프랑스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음에도 단순평균을 통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결과로 유럽 전체를 대표하는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70년도 미국 상위 1% 수치에 2% 포인트를 더한 것이나, 영국 상위 1%에 임의적인 수치를 더하여 상위 10%를 구한 것[7] 역시 이에 대한 설명이나 근거가 부족하여 방법론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출처가 통일되지 못하고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 냈다는 비판까지도 있다. 미국의 경우 주로 가구의 횡단조사 자료를 이용한 반면, 영국의 데이터는 재산세 데이터를 이용하여 피케티가 주장하는 불평등도 정도를 더욱 심화시켜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영국 통계청 홈페이지에는 재산세 데이터가 전체 부의 불평등도를 추정하기엔 적절치 못하다는 안내문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케티는 해당 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원데이터 어디에도 1910년과 1950년에 해당하는 수치가 없는데, 피케티는 상위 1%에 36%를 더하여 미국 상위 10% 부의 집중도 수치를 만들어냈다. FT는 이러한 잘못된 방법들이 피케

〈표 3〉 유럽과 미국의 부의 집중도 데이터와 계산식

O12 =(B12+F12+L12)/3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4	(Share of the top x% wealthiest in the total wealth)	Franc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Sweden			Europe		
5		Top 10%	Top 1%	Top 0,1%	Top 1% (Paris)	Top 10%	Top 1%	Top 0,1%	Top 10%	Top 1%	Top 0,1%	Top 10%	Top 1%	Top 0,1%	Top 10%	Top 1%	Top 0,1%
6	1810	79.9%	45.6%	17.1%	53.7%	82.9%	54.9%		58.0%	25.0%		83.9%	55.9%		82.2%	52.1%	
7	1820	81.8%	46.7%	19.0%	59.0%												
8	1830	83.2%	47.5%	17.1%	52.0%												
9	1840	80.4%	46.0%	15.5%	52.6%												
10	1850	82.4%	50.3%	19.4%	58.6%												
11	1860	83.7%	52.0%	18.3%	55.1%												
12	1870	81.8%	50.4%	18.3%	55.7%	87.1%	61.1%		71.0%	32.0%		87.2%	57.3%	29.6%	85.4%	56.2%	
13	1880	84.6%	49.5%	21.1%	61.9%												
14	1890	84.7%	51.1%	20.2%	58.2%												
15	1900	87.3%	58.7%	28.1%	66.1%												
16	1910	88.5%	60.5%	29.0%	70.7%	92.0%	69.0%		81.1%	45.1%	24.8%	88.2%	61.1%	29.4%	89.5%	63.5%	
17	1920	81.7%	49.2%	23.1%	60.0%	89.0%	61.0%		79.7%	43.7%	22.9%	87.7%	53.8%		86.1%	54.7%	
18	1930	80.0%	47.4%	22.4%	54.8%	85.0%	55.0%		73.4%	37.4%	20.1%	83.6%	42.8%		82.8%	48.4%	
19	1940	75.8%	36.3%	13.7%	52.4%				66.4%	30.4%	13.5%	83.2%	37.7%	17.7%			
20	1950	72.8%	33.4%	12.1%	38.9%	76.0%	47.2%		65.7%	29.7%	12.3%	77.3%	32.8%	9.7%	75.4%	37.8%	
21	1960	69.9%	31.9%	11.5%	35.3%	71.5%	33.9%		67.0%	31.4%	13.4%	63.2%	23.4%	8.2%	68.2%	29.7%	
22	1970	62.0%	22.0%	7.0%	25.5%	64.1%	22.6%		64.2%	28.2%	11.5%	54.7%	17.7%		60.3%	20.8%	
23	1980	61.8%	22.0%	6.7%	25.0%	62.6%	22.7%		67.2%	30.1%	12.4%	53.4%	16.5%		59.3%	20.4%	
24	1990	61.0%	21.7%	6.4%	24.2%	64.0%	24.0%		68.7%	32.9%	13.9%	57.7%	19.5%		60.9%	21.7%	
25	2000	62.1%	23.5%	7.0%	26.2%	68.5%	27.0%		69.7%	33.1%	14.4%	57.8%	20.5%	6.7%	62.8%	23.7%	6.7%
26	2010	62.4%	24.4%	7.2%	27.2%	70.5%	28.0%		71.5%	33.8%	14.7%	58.8%	20.7%		63.9%	24.4%	

자료: http://piketty.pse.ens.fr/en/capital21c2, the set of spreadsheet files (xls), Table S10.1 인용

7) http://piketty.pse.ens.fr/en/capital21c2, the set of spreadsheet files (xls), 각각 TS10.1 Details US, TS10.1 참고

"로버트 실러는 납세의무자나 과세대상 자산의 지역적 범위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부유세는 조세가 갖추어야 할 시간적 형평성의 일관성 문제, 그리고 저축에 대한 억제라는 부작용 문제를 강조한다."

티의 주장을 돋보이게 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였다며 방법론과 분석 자료에 관한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2.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제안의 효과성 측면: 글로벌 부유세 부과에 대한 비판

2013년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실러(Robert J. Shiller) 교수는, 피케티의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가 여러 나라의 경제적 불평등도 심화 이슈를 제대로 제기했지만 그가 제시한 해법이나 정책적 대응방안들 중 전 세계 단위의 부유세 부과는 지극히 실행 가능성이 낮고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과거 자신의 저서 *The New Financial Order: Risk in the 21st Century*에서 제안한 불평등성 보험(Inequality Insurance)이 불평등도 악화 및 부의 집중을 막는, 보다 나은 대안이라고 주장한다.[8] 글로벌 부유세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그의 주장을 살펴보자.

실러는 납세의무자나 과세대상 자산의 지역적 범위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부유세는 조세가 갖추어야 할 시간적 형평성의 일관성 문제, 그리고 저축에 대한 억제라는 부작용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한다. 어떤 시점에 도입되건 도입시점 이전까지 부를 축적하기 위해 투입된 과거의 노력이나 근로활동들에 대해 소급적으로 과세한다는 불공평성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은퇴자가 젊었을 때 근검절약하여 평생에 걸쳐 축적한 재산에 대해 나중에 부유세로 세금을 부과를 하여 그 세수가 저축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타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출된다면 저축활동에 징벌을 가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부유세가 도입될 줄 알았더라면 매년 소득활동을 한 후 소득세만 내고 나머지는 모두 소비하여 부를 축적하지 않으려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때의 소비에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구입소비뿐만 아니라 자식을 많이 낳아 이들에 대한 교육비 지출을 통해 자식들에 대한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축적시켜 부유세를 회피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실러는 자신이 주장하는 '불평등성 보험(inequality insureance)' 정책이 불평등성이 심화되어 재앙적 수준에 이르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해 글로벌 부유세 부과보다 더 나은 정책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주장하는 불평등성 보험은 미래에 불평등도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이 자동적으로 인상되도록 사전에 정부가 법제화해 놓는다는 것이다. 민간의 보험계약처럼 사전에 위험(risk)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부의 불평등도가 악화되어 이들 최고 부유층들이 정치적 이권 활동을 통해 그들의 부를 공고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위험을 보험의 원리를 사용하여 소득세 쪽에서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다.[9]

8) Shiller, "Inequality Disaster Prevention," May 14, 2014 Project Syndicate: The World's Opinion Page.
9)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Shiller · Burman · Rohaly(2006)와 Shiller · Ayres · Edlin(2011)에서 밝히고 있음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는 OECD 보고서 등 많은 연구를 통해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총소득 비중(top income shares)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20세기 내내 하락하는 장기적 추세를 보이다가 1980년대부터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는 시간적 추세(trend) 현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전반부의 75년간 하락추세를 설명하는 원인들로 두 차례 세계대전에 의한 대량의 자본파괴, 전쟁기간 중의 인플레이션 및 가격통제, 1930년 세계공황에 따른 부의 붕괴, 누진적 개인소득세의 강화 및 상속증여세 확대를 통한 개인 부의 축적 억제효과 등이 제시되었다. 반면 후반부 30년간의 고소득자 소득비중 상승 현상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상황이 많이 다르고 이를 설명하는 요인들도 차이가 있지만 가장 뚜렷한 상승현상을 보인 미국을 포함하여 주로 고소득 근로자(working rich)가 받는 고용관련 소득과 사업소득에서의 불평등도가 심화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피케티의 단독 또는 공저자 연구논문들은 이미 과거 OECD 보고서들에서도 많이 인용되었지만, 2014년 발간한 그의 C21C 신간이 기여한 바는 소득보다는 부(wealth)에 초점을 맞추어 부의 불평등도가 심화되는 원인이 자본소유의 집중 때문에 발생한다는 주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의 경우 181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상속세 자료에 기초하여 수백 년 동안의 자본소유 집중도 변화추이를 제시하면서 유사한 방법론과 자료를 활용하여 스웨덴, 영국, 미국에서의 자본소유 집중도를 국제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을 대비하여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자본수익률이 누적된 결과, 부의 불공평성 심화를 설명한 연구업적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부의 불평등도 심화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한 글로벌 부유세에 대해서는 이견과 논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전 세계를 지역단위로 하는 ‘글로벌 부유세’를 부과해야만 부 및 소득불평도 완화 목적의 정책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과거 부유세를 부과했던 각종 문제점들 때문에 폐지했던 실패 경험 때문에 이를 도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자녀의 교육이나 직장 출퇴근의 필요성이 없어져 저세율 부과국가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mobility)이 높은 은퇴자들 때문에 부유세 부과는 몇몇 국가들만이 시행할 경우 실효성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전 세계를 지역단위로 하는 ‘글로벌 부유세’를 부과해야만 부 및 소득불평도 완화 목적의 정책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과거 (국가단위의) 부유세를 부과했던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등 국가들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각종 문제점들 때문에 폐지했던 실패 경험 때문에 글로벌 부유세를 도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원래 국가단위 부유세의 경우에도 내국 거주인이나 가구를 납세의무자로 하면서도 이들 납세의무자가 전 세계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부채를 공제한 후 신고하도록 하였지만 성실신고 여부를 상호대사(cross-check)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가들의 조세당국 간 과세정보교환이 필수 전제조건이었지만 과세자 주권(sovereign tax power) 문제 때문에 과세당국 간의 협조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었고 이러한 허점을 활용하여 국적이나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역외소득 비신고 등 절세기법 활용(tax planning)이 성행했었다. 그러다가, 최근 OECD를 중심으로 자동조세정보교환(AEOI) 프로그램 확산, 미 국세청의 FATCA 및 FBAR,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 "부유세 부과에 있어 가장 핵심문제는 부유세 부과가 갖는 저축억제라는 부작용, 그리고 시간적 형평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이다."

시행 등으로 금융자산의 소유 및 이에 따른 금융소득 발생 정보에 대해서는 세원관리가 강화되어 글로벌 부유세 부과를 위한 행정 인프라는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10] 특히 2015년 말에는 G20 국가들 간에 자동금융정보교환이 실시되어 해당국 조세당국은 자국 내국거주인의 국내외 금융자산 소유 현황을 보다 잘 파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내 부동산자산 보유 현황 및 부동산평가제도 측면에서 부유세 부과를 위한 인프라가 비교적 정비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부유세 과세를 위한 세정여건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핵심문제는 부유세 부과가 갖는 저축억제라는 부작용, 그리고 시간적 형평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이다. 이를 극복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과세방식을 기술적으로 고안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서야, 부의 집중도 심화를 억제하는 정책대안으로서의 부유세 부과의 합목적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피케티가 국가 간 최상위 1% 부유층의 부의 집중도 변화를 설명하면서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1910년에서 1970년 기간 중 급격히 부의 집중도가 하락한 나라들 그리고 1970년 이후에도 집중도가 증가하지 않은 나라들이 공교롭게도 스웨덴이나 프랑스와 같은 부유세 시행국이었다는 사실은 눈여겨 볼 만하다.

우리나라의 개인 또는 가구단위 소득 및 부의 집중도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득과 부(자산-부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세정책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납세신고서(tax return) 수준의 상세한 납부세금 정보가 포함된 조세패널자료가 장기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자료」는 여전히 설문조사자료(survey)라는 기본적 한계를 응답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보완하는 수준에 있고, 아직 과세당국인 국세청 측의 종합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신고자료 같은 소득-자산 모집단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

또한 통계청 · 한국은행 · 은행감독원의 「가계금융 · 복지조사」는 2006년 가계자산조사와 2010년 가계금융조사로 시작할 때 1만명 정도의 표본가구로부터 전년도 3월 말 시점의 자산 및 부채정보와 전년도 1년간의 소득 및 지출정보를 2차원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 동일가구를 추적 조사하는 패널조사로 시작하여 유용성이 상당히 기대되었으나 2012년 복지부문 설문조사서를 추가하면서 표본을 변경하여 패널자료로서의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피케티 교수와 같이 상위 1%나 0.1% 같은 최고소득자나 최상위 자산가들에 대한 소득 및 부를 기초로 하여 불평등도를 가늠하기에는 1만여 개의 설문조사(survey)자료로는 무리고, 또 납부한 조세의 항목과 납세액이 세분화되어 제공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금융 및 실물자산과 같은 저량변수(stock variable)에 대한 모집단 또

10) 2010년 3월 신설된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는 미국인 납세자 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들이 미국 IRS에 해당계좌정보를 제공하면 미국은 해당 금융기관의 미국 내 원천소득에 대한 30%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인데, 미국은 이미 영국, 프랑스, 일본, 스위스 등 19개 국가와 상호교환방식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했고, 올해 3월 19일 한미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타결하였음. 〈부록〉 참조

는 표본 자료를 가계 소득 및 소비지출 자료와 같은 유량변수(flow variable)와 연결시켜 대표성 있는 연도별 횡단면 자료를 주요 시점별로 파악하여 분석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소득(income)과 부(wealth)를 2차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여러 원천의 데이터셋(datasets)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결합분포(joint distribution)를 구하면서, 피케티처럼 최상위 자산계층까지 포함한 연구로는 노영훈·김현숙(2005)이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C21C에 대한 개인적인 서평을 하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30대 초반부터 세금신고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실증분석 연구에 천착하여 얻은 연구 결과물로서 그의 근면함과 성실함에 기초한 연구노력이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된 책 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단순화된 이론모형을 설정하면서 제약적인 가정하에서 수리적으로 도출 가능한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학술지에 발표하는 연구논문들보다도 훨씬 더 큰 일반인 및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경제학자가 택할 실증분석 방법론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생각이다. 그의 C21C에 대한 비판은 크게 국가 또는 지역별 집중도의 계산 방법론, 그리고 집중도 완화를 위한 글로벌 부유세 도입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의 핵심주제인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부의 집중도 심화문제를 40년, 100년, 200년에 걸친 장기적 기간 동안의 국가별자료로 제시하며 충분히 신중함을 보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부의 집중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 측면에서도 글로벌 부유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다른 형태의 자본에 대한 과세 또 그 외의 규제조치들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음으로 보아 여전히 해법을 모색 중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케티가 불평등성 심화문제의 근본원인으로 자본의 집중화를 지적하였는데, 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과연 현재의 정치·경제 시스템으로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자생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해법들을 갈구하는 전 세계적인 분위기와 맞물려 피케티의 C21C는 분명 큰 impact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Daron Acemoglu and James Robinson(2012)는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에서 겉으로는 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불평등성의 심화에 따른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관건은 포용적인(Inclusive) 정치·경제적 제도가 있느냐라는 주장 등이다.

“
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과연 현재의 정치·경제 시스템으로
불평등 심화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자생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

〈참고문헌〉

노영훈, 「부유세와 소득 및 자산관련 조세개혁 방향」,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12. 5월호.

_____, 『부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부유세의 조세정책적 의미』, 연구보고서12-07, 한국조세연구원, 2012. 12.

_____, 「부유세로 불평등 해소: Piketty의 혁명 들불처럼」, 『한국일보』, 2014년 5월 27일 16면.

Acemoglu, Daron and James Robinson, *Why Nations Fail: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2012.

Robert Barro, *Getting it Right: Markets and Choices in a Free Society*, The MIT Press, 1997.

Thomas Piketty,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Press. 2014.

Thomas Piketty and Emmanuel Saez,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atates, 1913-1998,"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Feburary 2003.

OECD,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2008.

OECD,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OECD Publishing, Paris, 2011.

Chris Giles, "Data problems with Capital in the 21st Century," *Financial Times*, 2014

Waldenstrom, "Lifting All Boats?," *Lund Studies in Economic History 51*, Lund University, 2009

〈부 록〉

1. 고소득자(High-income earner)와 부자(Rich)의 구분, 소득과 부의 결합 분포(joint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의 특성: HNWI, highly-skewedness

고소득자는 소득이 많은 개인들을 말하며, 이때의 소득은 일정기간, 예를 들어 1년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모두 합한 유량개념으로서 한 개인의 경제적 능력(economic position)을 측정하는 한 척도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연간소득을 버는 개인 또는 가구를 고소득자 또는 상위 소득가구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집단 소득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충실하다면 소득자 서열을 매긴 후 10분위, 100분위로 소득기준 계층을 만들어 순위에서 차지하는 상위 10%, 상위 1% 소득계층에 속한 개인이나 가구들로 정의할 수도 있다. 만일 어느 나라의 개인소득세가 매우 포괄적 소득(comprehensive income)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과세당국이 소득세 신고자료를 통해 포착한 과세소득 또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최상위 1% 또는 10% 고소득자 소득의 전체 소득 대비 상대비율 또는 납부소득세비율 등을 통해 소득분포의 집중도나 납세부담을 가늠할 수 있다. 반면 어느 나라의 개인소득세가 특정 소득유형(예,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신고할 의무조차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과세(exclusion)되면서 이러한 유형의 소득이 고소득자 계층에서 특별히 많이 발생한다면, 신고된 개인소득세 과세자료를 통한 최상위 1%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집중도나 세부담 형평성 논의는 기본적인 한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최상위 1% 고소득자의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들이 납부하는 개인소득세액의 세수비중을 통해 소득집중도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연구할 때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 등 소득원천(source of income)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편 가구(household)가 소유한 부(wealth)나 순자산(Net Worth)의 크기와 분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 비해 이용 가능한 실증자료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리가 속칭 어느 나라에서 부잣집이라고 부를 때 사용하는 기준은, 일정시점에서 소유한 자산의 평가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구들을 말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은 나라별로 다를 뿐 아니라 한 나라에서도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들은 통상 고액 순자산가(High Net Worth Individual, HNWI)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고액 순자산가는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net worth)'으로 적어도 미화 100만달러 이상을 갖고 있는 개인을 말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이나 가구 등 동산은 제외하고 투자목적용 순자산(investable asset)만으로 그 정도 부를 갖고 있는 계층을 말한다.

1997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Capgemini & RBC의 "2013 World Wealth Report"를 보면 전 세계에 고액순자산가가 2013년 약 1,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2011년 대비 일년 사이에 9.2%나 그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북미지역의 373만명이, 아태지역에는 368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고액순자산가 1인당 평균이 북미, 아태(3.3백만달러), 유럽(3.1백만달러)의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고, 국가별로는 미국(3.1백만달러) 독일 일본의 순서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 세계 71개국 총소득의 98%와 전 세계 주식시가총액(market cap)의 98%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계-지역-국가별로 세분화하여 조사 발표하고 있다. 시티그룹(Citibank & Knight-Frank)에서도 "Wealth Report: A Global Perspective on Prime Property and Wealth"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 "가구가 소유한 부나 순자산의 크기와 분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 비해 이용 가능한 실증자료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부의 규모나 분포는 민간 금융회사 이외에도 중앙정부 특히 국세당국이나 중앙은행도 업무의 특성상 이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 및 중앙은행 등은 일정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민간가계가 보유한 실물 및 금융자산, 부채 등을 (설문)조사한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개인 또는 가구단위의 '부'의 분포를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등에서의 소비자금융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s SCF),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조사나 가계금융조사가 대표적인 예들이다. 어느 나라나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청이나 중앙은행은 국부통계의 개인(및 비법인사업) 부문 대차대조표 잔액을 통해 민간부문 개인 순부(=자산-부채)의 총계치(aggregate value)를 추정하거나, 부문별 자금순환표 작성을 위해 부의 변화를 추정하고 있다.

과세당국도 자산소득, (실물자산) 보유과세, 상속·증여 등 이전과세 자료를 활용하여 한 경제 내의 인별, 가구별 부의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다.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과세자료상의 이자·배당 등 (연간) 금융소득으로부터 (원본 스톡인) 금융자산 소유분포를 계산 또는 추정하거나, 스웨덴 등 순부유세 부과국들은 과세당국에 신고된 부유세 신고자료를 직접 활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종합토지세나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해당 부동산유형에 대해서 그 분포를 직접 계산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역추정 방법론(Estate

> "한 경제 내에서 부의 분포에 대한 신뢰할 만한 조사자료나 통계를 확보하고 이에 기초한 실증연구 수행은 어려운 작업이며 특히 시간적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동학연구, 국제적 비교연구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Multiplier Method)을 사용하기도 한다. 과세당국의 상속세 신고자료는 해당 연도 중에 사망한 피상속인(deceased)들의 상속재산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들을 연초에 생존하고 있었던 부자들 모집단으로부터의 추출된 표본(sample)인 것으로 가정하고, 연령·성별·자산규모별 하위그룹들의 비중(weight)과 사망률(mortality rate)의 역수로 확대하여 생존하고 있는 부자들의 부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전술한 가계금융조사와 같은 설문조사상의 부의 분포는 통상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상위 분포(upper tail)가 잘려져(truncate) 있어서, 최상위부자들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는데, 위의 상속세 과세자료 역추정법으로 최상위 0.5% 또는 1%의 부자 정보를 추가하여 보완하는 방법론이 통상 사용된다.

먼저, 민간부문의 개인 또는 가구단위의 부의 분포에 대해 동일한 기준에서 국가 간 상대비교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아니다. 시장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민간 부(marketable wealth)를 계층별 또는 인별 수준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포착하고 있는 나라들은 순부유세를 부과하는 나라들과 상속·증여세 및 인지세, 그리고 개인소득세 과세자료로 추정하고 있는 몇몇 나라들에 불과하다.[11] 따라서 부만을 놓고 볼 때 상위 몇 %의 부자가 일정기간 또는 생애기간 동안 한 국민경제 전체에서 몇 %의 비중을 차지하고 이들이 총세수에서 몇 %의 세부담을 하는지는 파악하기 불가능할 정도이다. 기껏해야 최상위 몇 명의 재벌가 소유주식가액이 몇 조라거나, 우리나라의 상위 몇 %의 땅 부자가 전국 토지가액의 몇 %를 소유하고 있다는 정도와 같이 언론에서 단편적으로 보도하는 수준에 그친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보아 증권거래소 등의 상장주식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며 공시지가로 계산한 전국 토지가액이 얼마이고 국세청 기준시가로 계산한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이 얼마라는 통계치들은 존재하나 그 분포의 특성인 상위계층 집중도(예: top 1% share), 분위배율(예: interdecile ratio), 지니계수 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집단 전수 또는 표본에 대한 미시자료들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한 경제 내에서 부의 분포에 대한 신뢰할 만한 조사자료나 통계를 확보하고 이에 기초한 실증연구 수행은 어려운 작업이고 특히 시간적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동학연구(dynamics), 그리고 국제적 비교연구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앞에서 기술한 부유세의 신규 부과가 갖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일단 논외로 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부유세 부과를 위한 세정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67.8%인데 거주주택자산

11) 다만 부유세를 부과하게 됨으로써(예, 스웨덴 등) 또는 상속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인 부의 분포를 추계한 통계(예, 영국 국세청 국세통계) 및 연구자료는 존재함. 특히, 미국 및 영국에서는 상속세 과세자료를 통한 간접추계방법으로, 그리고 영국 및 영연방국가들에서는 인지세(stamp duty)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고 있음. 또한 포괄적 소득세제(comprehensive income tax)에 가깝게 개인소득세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도 자본소득 및 자산소득을 통해 인별 자산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 총량적인 차원에서는 국민경제계산을 통해 부문별 자산소유상황을 매년 추적하고 있으나 인별 단위로는 이용 가능하지 않은 상황임

이 36.3%를 차지하고, 금융자산은 전월세 보증금까지 포함하여 26.7% 정도이다. 결국 서베이 자료로 파악한 우리나라 민간가계의 부 중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인별 또는 가구별 소유현황 및 과세평가금액이 과세당국에 포착되어야 한다. 주요 가계자산 중 토지는 인별 소유상황이 종합토지세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20년 가까이 주택은 9년여 기간 동안 축적되어 있어서 과세가능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이들 부동산도 유형별로 시가 대비 과세가액의 비율인 평가율이 불균일하다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매년 공시가격이 재고시되는 등 업데이트 되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양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산구성 비중은 높지 않지만 고가 서화 및 골동품 등에 대한 세원관리는 이들 자산의 소유권 현황 및 평가액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므로 여전히 거래시장을 통한 시가파악이나 소유현황이 불모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 20년에 이르지만 배우자나 자녀명의를 통한 분산소유가 일반화되어 있고, 금융자산의 소유실태 및 분포에 대한 모집단 정보도 미비한 상황이다. 내국거주인의 해외부동산 및 해외금융자산 소유 현황이 외환당국이나 국세청에 이미 노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각지대였는데, 최근 미국과 한국 등이 자국민에 대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또 국가 간 조세정보자료교환협정의 체결 등으로 과세당국에 보다 노출되게 되었다.

2. 피케티의 C21C 발간에 대한 서평 및 평가들

"피케티의 '21C 자본'은 작년 프랑스어로 출간되었고 올해 3월 영어로 출간되었다. 영문판은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동시에 수많은 토론, 논란의 중심

> "우리나라 민간가계의 부 중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인별 또는 가구별 소유현황 및 과세평가금액이 과세당국에 포착되어야 한다."

에 서게 되었다. 한편에서는 오늘날의 최고부자(Super-rich)의 부유함이 근로소득이 아닌 대를 이어 내려온 유산 때문이라는 피케티의 의견에 동의한다. 반면, 한편에서는 피케티의 연구는 경제학적으로 고안된 정책이 아닌 이데올로기적인 정책 제안일 뿐이며 이는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진실이 무엇이든 피케티는 경제학자와 독자들에게 많은 이슈를 던져 주었다." (The Economist explains, "Thomas Piketty's "Capital," summarised in four paragraphs," *The Economist*, May 4, 2014.)

"피케티는 최초로 세금 통계를 이용하여 지난 300년간의 유럽과 미국의 불평등을 측정하였다. 물론 통계의 처리과정에서 몇 가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부(wealth)의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아주 유용하다. 부의 집중에 대한 그의 예측은 단순히 자본주의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의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소리는 아니다. 한편으로 '바보 Piketty'라 부르는 사람들은 그의 글로벌 부유세에 대한 주장이 자본주의의 신뢰성을 잃게 만든다고 한다. 그는 왜 부의 집중을 축소시켜야 하는지를 그저 강하게 주장할 뿐, 왜 축소시켜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며, 이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비용이나 다른 목표들과의 상충관계(trade-offs)에 대해서는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실천목록(to-do-list)은 부자에

>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서구 사회는 영국의 일부 기득권층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였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그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대한 과세정책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이 무시되고 있다. 즉, 피케티는 학문이 아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집중하였으며, 베스트셀러가 될 수는 있지만 행동을 위한 청사진으로서는 부족하다." (The Economist, "A modern Marx," *The economist printed edition*, May 3, 2014.)

"피케티의 책은 미국에 커다란 소용돌이를 가져왔다. Paul Krugman은 그의 책에 대해 '피케티의 주장은 대를 이어 부를 축적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소리'라고 묘사하였다. 600p에 달하는 그의 책에서 그는 자본주의가 불평등의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에 글로벌 부유세의 도입을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과연 급진적인가? 사실, 별로 그러하지 않다. 프랑스에서 여전히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를 공부하는 사람은 많지만, 피케티는 그들과는 다르다. 책에 대한 논란이 미국에서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조용한 것만 봐도 그렇다." (Pascal-Emmanuel Gobry, "Thomas Piketty, a Not-So-Radical French Thinker," *WSJ*, May 22, 2014.)

"피케티가 소득불평등의 급격한 악화문제, 특히 상위 소득과 하위소득계층간의 격차 심화를 지적했던 첫 번째 경제학자는 아니다. 부자들의 소득원천 중,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이 상당하며, 이 자본 또한 상당수 유산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피케티의 의도는 이 질문이 상당히 의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1차세계대전 이전, 서구 사회는 영국의 일부 기득권층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였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그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한편,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잇달아 피케티를 마르크스주의자라며 비난하고 있다." (Paul Krugman, "The Piketty panic," *NYTimes*, April 24, 2014.)

"피케티의 연구는 다양하고 수많은 논쟁을 만들고 있다. 마르크스가 19세기에 주장했던 것처럼 피케티도 자본의 수익(return)이 경제 성장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본소득이 재투자되었을 때, 이 역시 경제성장보다 빠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자본가들이 점점 국가의 소득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노동소득이 부당하게 'supermanagers'의 손에 흘러들어 간다는 점이다. 2050년 혹은 2100년, 세상은 누구의 손에 있을 것인가? 하고 피케티는 묻는다. 상인, 자본가, 경영자, 산유국 혹은 BOC(bank of China)? 정답은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든 간에 최대한 빨리 글로벌 부유세를 시행하지 않으면 민주적인 자본주의는 푸틴, 시진핑과 같은 정실주의를 내세우는 권위적인 집단의 지배로 대체된다는 점이다." (James Pethokoukis, "The New Marxism," *National Review*, March 24, 2014.)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가 굉장한 책을 썼다. 선견지명이 있는 독자라면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 증거로 제시된 자료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 경제학을 '역사, 사회과학, 정치, 인류학의 하위 학문'이라 부른다. 그 결과 방대한 역사적 범위를 아우르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물론, 그의 연구에도 약점은 있다. 그는 불평등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Martin Wolf,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Financial*

Times, April 15, 2014.)

"지난주 있었던 토론토의 한 컨퍼런스에서 매 세션마다 적어도 한 번씩은 피케티가 언급되었다. 이러한 신드롬은 1970년대의 Friedman을 떠올리게 한다. 그때 당시 논쟁의 대상이었던 인플레이션은 현재 금권정치와 불평등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피케티의 주장은 자본주의와 그에 따른 불평등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다가온다. 특히, 그가 해법으로 말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을 80%로 인상하자는 주장은 현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의 임무는 소득 불평등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Will Hutton, "Capitalism simply isn't working and here are the reasons why," *The guardian*, April 12, 2014.)

3. 최근 시행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등 금융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당국 정보교환제도들

〈부표 1〉 FBAR와 FATCA의 기본사항 비교

	FBAR에 의한 금융자산 신고	FATCA에 의한 금융자산 신고
신고의무자	모든 미국인(Each US Person: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법인, 파트너쉽, 신탁 등)	① IRS와 FFIA를 맺은 해외금융기관(FFI) ②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특정 비거주 외국인 (모두 개인)
신고기준(threshold) 금액	연중 1만달러 이상	(연말금액/연중최고액) 싱글: 5만달러 / 7만 5천달러 부부합산: 10만달러 / 15만달러
주요 신고 정보	해외금융계좌의 최고액	해외금융자산의 최고액
신고 방식	개별적인 전자신고	소득세 신고시 첨부(Form 8938)
양식 및 신고처	e-file 114 양식 (BSA E-Filing System) /재무부	① FFI: IRS에 정기적으로 보고 ② 신고의무 있는 개인: Form 8938
신고대상 금융계좌	- 요구불 또는 정기예금, 당좌예금,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계좌 등 은행계좌 - 뮤추얼 펀드, 증권계좌, 증권파생상품 계좌 등 - 특정 펀드에 대한 일정지분을 보유하는 금융계좌	-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예금, 수탁계좌, 수익증권, 현금가치 보험 및 연금보험 - 연금계약과 예금계좌 및 집합투자증권의 지분, 현금가치 보험계약 등
신고 날짜 마감일	6월 30일	① FFI: 정기적 또는 IRS의 요청시 ② 신고의무 개인: 소득세 신고와 동일(4월 15일)
미국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에 있는 자산	신고해야 함	신고의무 없음
금융기관에 예치되지 않은 해외 주식	신고의무 없음	신고해야 함
과태료	과실 미신고: 500달러 반복적 미신고: 5만달러 고의성 없는 미신고: 1만달러 고의적 미신고: 10만달러 또는 계좌잔고의 50%	개인에 대해, 미신고/허위신고: 1만달러 과소신고: 과소납부 금액의 40%를 가산세
형사상 처벌	고의적인 경우에만 25만~50만달러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과	개인에 대해, 형사 처벌 추가 가능
해외 부동산, 보석, 외국지폐, 골동품 등	신고의무 없음	신고의무 없음

〈부표 2〉 미국과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제도 명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BAR)
시행시기	2011년	1972년[1)]
기준금액	10억원 이상	1만달러 이상 (약 1천만원 이상)
기준금액 산출방법	매월 월말 기준 잔고가 10억원을 넘는 경우	단 한 번이라도 잔고가 1만 달러를 넘는 경우
신고 시기	익년 6월 1일~30일	익년 6월 30일까지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미신고금액의 4~10%	과실미신고: 500달러 고의성 없는 미신고: 1만달러 고의적 미신고: 10만달러 또는 계좌잔고의 50%
미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50억원 초과시 인적사항 공개 및 형사처벌	고의적인 경우에만 25만달러~50만달러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과

주: 1) FBAR는 1972년에 31 C.F.R. Section 103.24 (1972)로 제정되었고, 1977년부터 소득세로부터 분리되어 별도의 행정상 협력의무·보고사항이 되었음

[부도 1] FATCA 정보교환 개념도 (Model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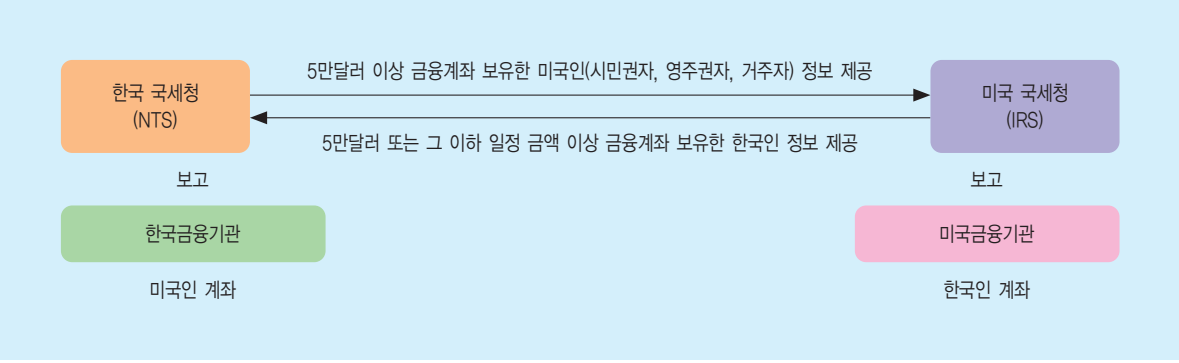

주: 시행일은 2015년 9월. 시행범위는 2013년 말 금융계좌 잔고와 2014년 말 금융계좌 잔고

공적연금 충당부채 회계의 이해

김완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wanhikim@kipf.re.kr)

Ⅰ. 머리말

우리나라 정부는 2011년도부터 국가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현금주의를 적용한 전통적인 세입·세출결산서 외에 발생주의에 근거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재무제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많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산의 경우 고속도로, 항만, 댐 등 종전에 국유재산으로 파악되지 않던 사회기반시설을 보고하고 있으며, 기타 물품에 대하여는 감가상각 이후의 적정한 자산평가금액을 계상하고 있다. 부채의 경우 금융부채가 주를 이루는 기존의 국가채무 외에 이행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충당부채도 보고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공적연금에 대한 충당부채라고 할 수 있다. 2013년도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는 1,117.9조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중 연금충당부채가 593.6조원으로 무려 53%를 차지하고 있다. 여러 언론매체들은 국가부채의 절대규모뿐만 아니라 연금충당부채의 중대성 및 장기재정의 지속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과감한 개혁을 요청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11년부터 국가재무제표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를 계상하면서 2013년까지 매년 불가피한 사유로 측정방식을 변경하여 충당부채 금액의 연도별 비교가능성이 저하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연금충당부채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 재무제표 본문 외에 제공되는 연금보고서 등 필수 보충정보의 활용 미흡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그동안 연금충당부채와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논점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필수 보충정보로 공시되고 있는 연금보고서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기로 한다.

Ⅱ. 공적연금의 현황

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노령, 질병, 사망 등의 사고에 따른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해 생활보장을 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적연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의 두 종류가 있다. 공적연금(public pension)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기여금 또는 조세 형태로 재원을 조달하여 노령, 장애,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연금 제공을 통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여 국가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공적연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이 있다.

Ⅲ. 공적연금 충당부채의 인식 조건 및 대상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를 말하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장기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장기충당부채 등을 말한다.

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

〈표 1〉 공적연금 비교표(2013년도 기준)

구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민연금
설치 연도	1960	1963	1975	1988
가입 대상	국가 · 지방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전 국민(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입자 수(a)	107만 3천명	18만 3천명	27만 6천명	2,054만명
수급자 수(b)	36만 3천명	8만 2천명	4만 7천명	377만명
부양률(b/a)	33.8%	44.6%	17%	18.4%
기여율(기준소득 대비)	14% (국가 7%, 공무원 7%)	14% (국가 7%, 군인 7%)	14% (법인 7%(국가40%), 교직원 7%)	9% (사용자 4.5%, 가입자 4.5%) *지역임의가입자 9%
지급률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9%			1%
적립기금	8조 4천억원	8,600억원	14조 2천억원	427조원
관리운영	안전행정부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교육부 (사학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회계처리	• 연금충당부채 계상 • 연금보고서 필수보충정보 제공		• 충당부채 미계상 • 연금보고서 필수보충정보 제공	
산정방식	• 예측급여채무(PBO)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부분만 연금미지급금으로 인식	
국가 보전의무	강제규정 (「공무원연금법」 제69조)	강제규정 (「군인연금법」 제39조의2)	임의규정 (「사학연금법」 제53조의7)	규정 없음

한다.[1] 현재 운영되고 있는 4대 공적연금 중에서 위의 〈표 1〉에서 보듯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국가재무제표상 연금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연금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국가가 지급해야 할 의무의 존재 여부이다. 공무원과 군인의 경우 국가가 고용주체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근로자인 공무원과 군인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재직 중 급여 및 퇴직 후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사학연금의 경우 고용주체는 국가가 아닌 사립학교가 되고 사학교원의 근로대가인 급여 및 퇴직급여의 지급의무는 사립학교법인에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역시 고용주체는 국가가 아닌 고용을 한 기관이며 급여 및 퇴직급여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금급여에 대한 충당부채는 국가재무제표에 계상될 근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상기 〈표 1〉의 하단에 기재한 국가의 보전의무 즉, 연금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국가가 부족분을 해소하여 줄 의무를 근거로 사학연금의 경우에도 국가의 충당부채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현재 법적 근거조항은 없지만[2] 공적연금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보전은 전형적인 비교환거래(non exchange transaction)[3]에 해당되므로 지급의무의 확정 혹은 지급액의 합리적 추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국가부채로 계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표 2〉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이 되는 급여 및 수당의 범위

공무원연금 제42조(장기급여)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 여부	군인연금 제6조(급여의 종류)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 여부
1. 퇴직급여		1. 퇴직급여	
(1) 퇴직연금	O	(1) 퇴역연금	O
(2) 퇴직연금일시금	O	(2)퇴역연금일시금	O
(3)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O	(3) 퇴역연금 공제일시금	O
(4) 퇴직일시금	O	(4) 퇴직일시금	O
2. 장해급여		2. 재해보상적 · 부조적 급여	
(1) 장해연금	X	(1) 상이연금	O
(2) 장해보상금	X	(2) 공무상요양비	X
		(3) 사망조위금	X
		(4) 재해부조금	X
		(5) 사망보상금	X
		(6) 장애보상금	X
3. 유족급여		3. 유족급여	
(1) 유족연금	O	(1) 유족연금	O
(2) 유족연금부가금	O	(2) 유족연금부가금	O
(3)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O	(3)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O
(4) 유족연금일시금	O	(4) 유족연금일시금	O
(5) 유족일시금	O	(5) 유족일시금	O
(6) 유족보상금	X		
(7) 순직유족연금	X		
(8) 순직유족보상금	X		
4. 퇴직수당	X	4. 퇴직수당	X

〈표 2〉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세부 지급항목 중에서 연금충당부채의 측정대상이 되는 항목들을 나

1)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는 부채는 충당부채와 구별하여 우발부채라고 한다.
2) 2012년 의원입법안으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하고자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이후 2014년 법률개정을 통해서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3조2)는 취지의 상징적인 조항을 추가하였다.
3) 교환거래는 국가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등 반대급부를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교환하는 거래를 말하며, 비교환거래는 교환거래 이외의 모든 거래를 말한다.

> “대부분의 공적연금은 제도 조성 초기에는 적립방식의 특성을 지니지만 성숙기에 돌입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부과방식으로 귀결된다.”

열하고 있다. 장해, 사망 등에 대한 재해 보상적·부조적 급여, 그리고 퇴직수당과 같은 근로보상에 대해서는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미래 예측액을 추산하고 이를 대상으로 부채를 산정하고 있지 않다. 퇴직수당은 공무원 혹은 군인이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월기준소득액의 6.5~39%의 금액을 퇴직급여와 관계없이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그 재원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민간의 경우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근로자들이 퇴직급여의 일부를 수령하였지만 공무원과 군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없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추가된 항목이다.

재해보상성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미지급한 금액만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근로보상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은 퇴직수당충당부채라는 별도의 항목을 설정하고 평가시점에서 재직자가 전원 일시에 퇴직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하고 있다.

Ⅳ. 연금충당부채의 측정기준 및 방법

1. 연금충당부채의 세대 간 인식범위

대부분의 공적연금은 제도 조성 초기에는 적립방식(funded pension)의 특성을 지니지만 성숙기에 돌입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부과방식(Pay-As-You-Go pension)으로 귀결된다. 간략히 정리하면 초기의 연금은 자기가 젊어서 불입한 금액의 범위에서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지만 성숙기의 연금은 수급권자와 가입자 수 포트폴리오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금수급자가 받아야 할 연금비용을 현재 근로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초래하며 따라서 연금의 지속가능성 논의에는 세대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보다 앞서 공적연금의 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서구의 나라들은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연금충당부채의 포괄범위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설정하는 시도를 하였다.[4]

① 현재 발생부채(Accrued-to-date liability): 평가시점까지 발생한 수급권만을 반영한 부채로, 이후 현재 가입자의 미래 계속가입으로 인한 추가 수급권 획득이나, 다음 세대의 신규가입 등을 고려하지 않음.[5]

② 현재가입자 폐쇄형 포괄부채(Projected liability): 평가시점까지 현재 가입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만 연금제도가 유지되고 신규가입자가 포함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부채 산출. 따라서 평가시점까지 발생한 수급권뿐 아니라 현재 가입자가 미래에 추가 가입할 경우

4) Van der Noord and Herd, “Pension Liabilities in the Seven Major Economies,” OECD working paper No 142, 1993
5)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평가시점 현재에서 연금제도를 종료한다고 가정할 경우를 상정한 부채범위라고 할 수 있다.

획득할 수급권까지 반영한 부채를 산출. 신규 가입자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폐쇄형 계산구조(closed group calculation)를 가지고 있음.

③ 개방형 포괄부채(Open-system liability): 평가시점까지 발생한 수급권뿐 아니라 이후 계속 가입이나, 신규가입자를 고려하여 부채를 산출함. 신규가입자의 포괄범위는 평가시점 현재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부터 무한대의 시간을 감안하는 것까지 다양한 옵션이 가능함.

이러한 연금충당부채 개념을 대응되는 자산항목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6]

〈표 3〉 연금충당부채의 세대 간 인식범위 및 대응 자산

연금충당부채 정의	자산	부채
현재 발생부채	• 연금기금 적립금	• 현재 연금지출액의 현재가치 • 현재 재직자 평가시점까지 기여분에 해당 하는 미래 연금지출액의 현재가치
현재가입자 폐쇄형 포괄부채	• 현재 재직자의 미래 연금기여분의 현재가치	• 현재 재직자의 미래 연금기여분에 해당하는 미래연금의 지출액의 현재가치
개방형 포괄부채	• 미래 세대의 연금기여분의 현재가치	• 미래 세대의 연금기여분에 해당하는 미래연금지출액의 현재가치

2. 회계상 연금충당부채 인식기준

이러한 세대 간 연금충당부채의 범위 인식문제는 연금제도를 설계하고 장기적인 연금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는 유용한 논제이다. 그

> “정부 및 민간기업의 재무제표상 부채를 계상하는 상황에서는 평가시점에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장 객관적인 수치를 산출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현재 발생부채를 기준으로 한다.”

러나 정부 및 민간기업의 재무제표상 부채를 계상하는 상황에서는 평가시점에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장 객관적인 수치를 산출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현재 발생부채(Accrued-to-date liability)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 수급권을 완전 확보한 가입자와 부분 확보한 현재 재직자의 급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정방식이 존재한다.[7]

① 확정급여채무(VBO Vested Benefits Obligation): 평가시점에서 연금수급권을 완전히 확보한 수급권자에 지출되고 있는 연금급여의 현재가치 그리고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재직자) 일시 퇴직급여를 현재 보수기준으로 계산.

② 누적급여채무(ABO Accumulated Benefits Obligation): 평가시점에서 연금수급권의 완전 확보 유무에 상관없이 전체 가입자의 예상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산출한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를 현재 보수기준으로 계산.

③ 예측급여채무(PBO Projected Benefits Obligation): 평가시점에서 연금수급권 유무에 상관없이 전체 가입자 예상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산출한 연금급여과 일시금급여를 계상하되 예상퇴직 시

6) Holzmann(2004)의 Table.2 수정
7) 『2013 공무원연금보고서』, p.88.

〈표 4〉 연금충당부채 산출 기준 비교

연금급여채무 종류	특징	기준소득
확정급여채무(VBO)	평가시점 현재 수급권 확보 여부에 따라 달리 계산 (확보 시 연금급여, 미확보 시 일시금)	현재보수
누적급여채무(ABO)	평가시점 현재 수급권 확보 무관하게 연금급여 산출	현재보수
예측급여채무(PBO)	평가시점 현재 수급권 확보 무관하게 연금급여 산출	미래보수

보수기준으로 계산. 즉 승진, 승급 및 자연 상승분 등 급여상승분을 감안하여 계산.

이론적인 관점에서 PBO 방식이 연금충당부채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는 데 가장 우수하므로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PBO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현재 완전수급권자(퇴직자)에 해당하는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지급되는 연금급여를 기준으로 미래 예상금액의 합계를 현재가치로 계산하면 되므로 간단한 절차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재직자에 해당하는 연금충당부채의 산출은 다소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간략히 도해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2013년 현재 20년을 재직했고 향후 10년 추가로

[그림 1] 현재 재직자의 연금충당부채 계산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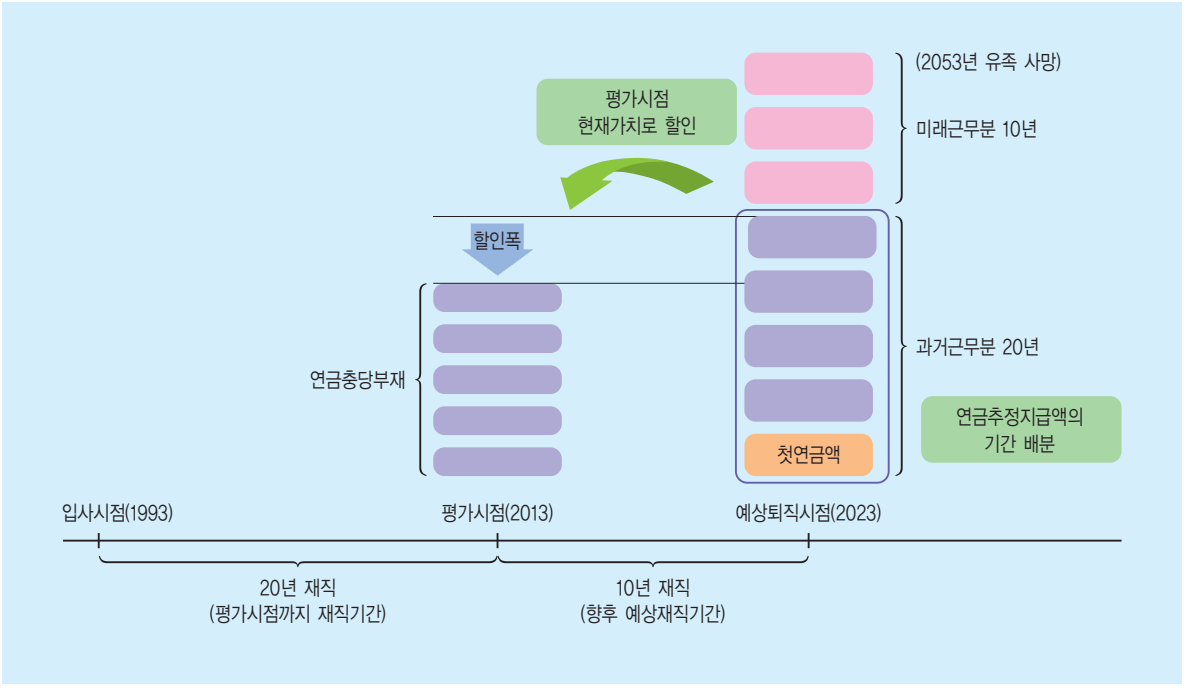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2013 공무원연금보고서』

재직 이후 퇴사가 예상된다고 하자. 해당자의 10년간 승진, 승급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자연상승분을 감안한 미래 급여수준을 예측하여 연금급여의 기준액을 산정한다. 이후 사망률 등에 근거하여 퇴직 후 예상되는 연금지급 기간을 예측하고 퇴직시점에서 이에 해당하는 총연금급여를 계산한다. 총연금급여 중 평가일인 2013년 현재까지의 권리확보분은 20년/30년 즉 총연금급여의 3분의 2이다. 퇴직시점인 2023년도의 금액을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2013년의 현재가치로 전환하면 연금충당부채가 산출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1년도부터 결산 시에 발생주의를 적용한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재무제표는 본문 외에도 주석과 필수 보충정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기금계정의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필수 보충정보로 연금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Ⅴ. 국가결산서상 연금 충당부채 관련 정보의 이해

1.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현황

우리나라 정부는 2011년도부터 결산 시에 발생주의를 적용한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재무제표는 본문 외에도 주석과 필수 보충정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기금계정의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필수 보충정보로 연금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표 5〉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간 연금보고서에 공시된 주요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계산 대상자 합계는 2012년부터 2013년에 각각 167만 4,868명과 170만 4,512명이다. 2년 평균치로 볼 때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전체 인원 중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 재직자와 수급자 모두 매년 점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전체 인원 중 재직자 수의 비중이 75.6%이며 군인연금은 67.%로 군인연금의 상대적 성숙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두 연금의 최근 3개년간 연금충당부채 규모의 변

〈표 5〉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주요 현황(2011년~2013년)

(단위: 천명, 천억원)

연금	연도	인원 규모			연금충당부채 규모			연금비용				측정방식
		재직자	수급자	계	재직자	수급자	계	당기근무원가	이자원가	보험수리손익	연금지급액	
공무원연금	'13년	1,073	363	1,436	3,031	1,813	4,844	122	162	583	94	PBO
	'12년	1,064	345	1,410	1,988	1,527	3,514	71	121	512	89	ABO
	'11년	1,060	323	1,383	1,578	1,321	2,898	66	112	253	79	ABO
군인연금[1]	'13년	182	87	269	680	439	1,119	41	37	127	23	PBO
	'12년	180	85	265	474	381	855	27	32	51	22	ABO
	'11년	+3	+3	n/a	168	355	522	8	20	47	21	VBO

주: 1) 군인연금은 '11년도에는 VBO 방식을 적용으로 재직자와 수급자의 총수를 공시하지 않고 전년 대비 인원 증가분만을 공시. 즉, 재직자와 수급자가 각각 전년 대비 3천명 증가함.

동 상황을 재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최근 3년간 연금충당부채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1	2012	2013
공무원연금	298.8(ABO)	351.4(ABO)	484.4(PBO)
군인연금	52.2(VBO)	85.5(ABO)	111.9(PBO)
합계	351	436.9	596.3
총부채	773.5	902.1	1,117.3
연금충당부채/총부채	48.0%	51.8%	53.4%
재직자연금부채/총연금부채	51.0%	56.3%	62.2%

연금충당부채 정보를 분석함에 있어 우선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 연금의 측정방식이 일관되지 않다는 것이다. 최초 적용시기인 2011년도에 군인연금은 VBO 방식을 적용했고, 공무원연금은 ABO 방식을 적용했다. 2012년에는 모두 ABO를 적용했고 2013년도에는 PBO로 전환하였다.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보험수리적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회계기준에서도 PBO를 적용하기에 앞서 적용 유예기간을 인정하였고 준비기간을 거쳐서 2013년도에 적정한 회계정보를 산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2011년부터 2013년 기간에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연금수급자 수 혹은 연금제도의 변화라기보다는 연금충당부채 산정기준의 변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 군인연금의 경우 2011년도에는 VBO 방식을 적용하면서 당시 재직자 중 19년 6개월 이하 재직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원 일시 퇴직을 가정하여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지 않았으나 2012년도에는 ABO 방식을 적용하여 동 인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충당부채를 계상하게 되므로 연금충당부채는 2011년도 16조 8천억원에서 2012년도 47조 4천억원으로 급증한 것이다.[8)]

또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할인율로 적용하고 있는 국고채 수익률(과거 10년 평균치) 하락 등에 따라 연금충당부채가 직전 회계연도 대비 22.4조원 증가하였으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5년마다 전망, 2011. 12월 발표)를 토대로 공무원 기대여명 증가, 사망률 등을 조정하여 연금충당부채가 직전 회계연도 대비 약 33.9조원 증가하였다. 참고로 최근 10년간 국고채수익률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7〉 최근 10년간 국고채 수익률

(단위: %)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국고채(1년)	3.92	3.97	4.68	5.19	5.12	2.91	2.95	3.42	3.12	2.66
국고채(3년)	4.11	4.27	4.83	5.23	5.27	4.04	3.72	3.62	3.13	2.79
국고채(5년)	4.35	4.52	4.96	5.28	5.36	4.64	4.31	3.90	3.24	3.00
국고채(10년)	4.73	4.95	5.15	5.35	5.57	5.17	4.77	4.20	3.45	3.28
국고채(20년)	0.00	0.00	5.37	5.44	5.60	5.39	4.98	4.34	3.53	3.46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2013 공무원연금보고서』

8) 군인연금보고서 2012년도 분석에 의하면 2011년도에 ABO를 적용하였을 경우 재직자에 대한 연금충당부채는 41조 8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즉 평가방법 변경효과 약 24.5조원이 된다.

2013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 증가액 대부분은 새로 발생된 부채가 아니라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할인율 하락,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른 물가상승률 상승, 산정방식 변경(ABO → PBO) 등 부채의 인식방법이 달라진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할인율로 적용하고 있는 국고채 수익률(과거 10년 평균치)의 하락(전기 대비: 3.97~4.95% → 3.79~4.76%)으로 인해 연금충당부채가 직전 회계연도 대비 약 22.2조원 증가하였으며,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 적용한 가정 변화로 물가상승률이 2037년까지 평균 0.57포인트 상승하여 연금충당부채가 직전 회계연도 대비 약 50.8조원 증가하였다. 2012회계연도까지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물가상승률을 재무적 가정으로 적용하였으나 2013회계연도에는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연금회계준칙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공무원·군인연금 모두 누적급여채무(ABO)에서 예측급여채무(PBO)로 평가방식을 변경하여 연금충당부채가 직전 회계연도 대비 약 63.9조원이 증가하였다.[9)]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전체 연금충당부채 중 재직자해당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에서 2012년은 군인연금의 측정방식이 VBO에서 ABO로 전환한 효과이고 2012년에서 2013년은 ABO에서 PBO로 전환됨에 따라 재직자의 미래급여 상승분이 반영된 효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2. 연금비용의 해석

연금비용은 다음과 같은 산식을 통해서 계산된다. 연금비용은 당기의 연금충당부채 증가(감소)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초부채와 당기비용의 합계인 기중

> "2013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 증가액 대부분은 새로 발생된 부채가 아니라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할인율 하락, 산정방식 변경등 부채의 인식방법이 달라진 결과이다."

부채총액에 대하여 부채 청산의 관점에서 당기에 연금급여를 실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기말연금충당부채가 된다.

- ○ 기말연금충당부채 = 기초연금충당부채 + 당기연금비용 − 연금급여지급액
- ○ 당기연금비용 = 당기근무원가 + 이자원가 ± 과거근무원가 ± 보험수리적 손익

이러한 연금비용의 세부항목은 충당부채의 증가(감소)원인에 따라 당기근무원가, 이자비용, 과거근무원가, 보험수리적 손익 등으로 구분되며 그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연금회계준칙 제7조).

① 당기근무원가: 회계연도 중 연금가입자가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충당부채의 현재가치 증가액

② 이자원가: 직전 재정상태표일보다 1회계연도 만큼 연금개시일에 더 가까워짐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충당부채의 현재가치 증가액

③ 과거근무원가: 연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연금충당부채의 현재가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그 증감액

9) 평가방식의 연금별 변경효과는 공무원연금이 55.7조원, 군인연금이 8.2조원으로 추산된다.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의 미세한 차이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연금충당부채 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요 가정들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정보는 향후 연금충당부채의 규모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④ 보험수리적 이익과 손실 :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 및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

당기근무원가, 이자원가, 과거근무원가는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총원가 또는 관리운영비로 인식하며, 보험수리적 손익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인식한다. 즉 당기근무원가 등은 당해 연도의 프로그램 수행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원가가 되며 보험수리적 손익은 외부 환경요인의 변화를 반영하므로 원가가 아니라 순자산의 직접적인 변동요인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연금비용의 구성항목을 분석하면 연금충당부채의 증감 원인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표 5〉 군인연금의 2011년에서 2012년 당기근무원가가 8천억원에서 2조 7천억원으로 급증한 이유는 VBO에서 ABO로 평가방식 전환에 따라 연금가입자 즉, 재직자의 미래연금급여가 충당부채로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2012년도에서 2013년도 당기근무원가가 각각 5조 1천억원과 2조 4천억원 급증한 이유는 PBO 적용에 따라 재직자의 미래급여 상승 예측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이자원가는 기초연금충당부채에 전년도 말에 예상한 금년도 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연금충당부채 잔액과 할인율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과거근무원가는 현행의 연금제도를 변경하여 연금지급조건의 변화가 있을 때 조정될 항목으로 분석기간 동안에는 해당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보험수리적 손익은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국고채수익률, 사망률 등 미래연금급여 예측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증감효과를 나타낸다. 『2013년 공무원연금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수리적 손익은 총 58조 3천억원이었다. 세부항목은 할인율이 3.97~4.95% 에서 3.79~4.76%로 하락함에 따라 18조 9천억원, 물가상승률이 2037년까지 0.57포인트 상승함에 따라 44조 6천억원 상승하였다. 한편, 보수인상률이 예정 2.7%에서 실제 1.7%로 물가상승률이 예정 2.7%에서 실제 1.3%로 하락함에 따라 -5조 3천억원의 효과가 있었다.

공무원연금보고서의 2012년과 2013년의 주요 보험수리적 요소에 대한 장기전망 변화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3. 보험수리적 가정 변화의 민감도 분석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의 미세한 차이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연금충당부채 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요 가정들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정보는 향후 연금충당부채의 규모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연금보고서에서는 주요 변수에 대한 민감도 자료를 공시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연금충당부채 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할인율로 나타나고 있다. 할인율이 0.5% 하락할 경우 연금충당부채는 약 10% 증가하고 반대로 0.5% 상승할 경우 연금충당부채는 9%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그림 2] 연금충당부채 산정의 보험수리적 가정 변화(2013년 공무원연금보고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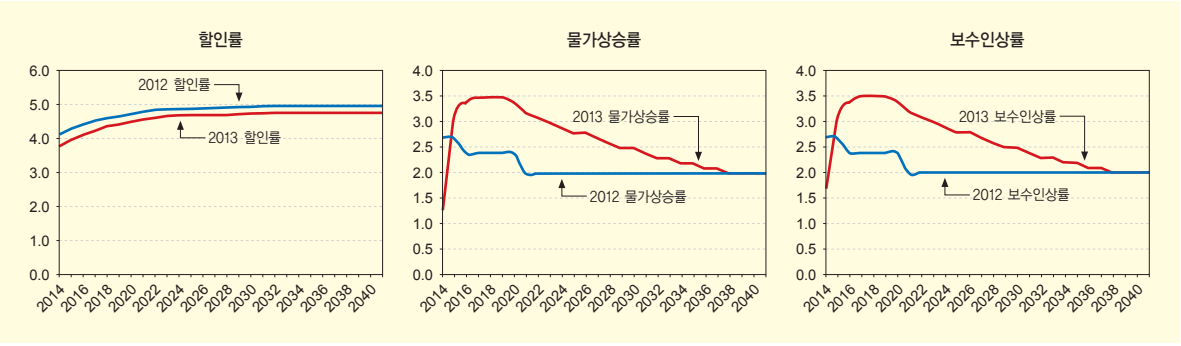

분석되었다. 다음으로는 물가상승률의 영향이 큰 것으로 집계되는데 0.5% 상승 및 하락에 따라 대략 연금충당부채에 6~7%의 영향이 나타난다. 영향력이 가장 작은 것은 보수상승률로 연금충당부채에 대략 2.6~3.3% 정도의 영향이 나타난다. 이는 보수상승률은 수급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직자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공무원연금은 현재 연금가입자(재직자)가 불입해야 할 표준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도 공시하고 있는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할인율>보수상승률>물가상승률의 순으로 영향력이 집

〈표 8〉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보험수리적 가정 민감도 분석(2013년)

(단위: 천억원)

연금	구분	기준금액	할인율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0.5% 하락	0.5% 상승	0.5% 하락	0.5% 상승	0.5% 하락	0.5% 상승
공무원연금	수급자	1,813	1,928	1,709	1,813	1,813	1,715	1,920
	재직자	3,031	3,426	2,691	2,882	3,190	2,836	3,245
	계	4,844	5,355	4,399	4,695	5,004	4,551	5,165
	규모		511	−445	−149	160	−293	321
	민감도		10.5%	−9.2%	−3.1%	3.3%	-6.0%	6.6%
	표준보험료	147	170	128	136	158	138	157
	규모		23	−19	−11	12	−9	10
	민감도		15.7%	−13.2%	−7.2%	7.9%	−6.3%	6.9%
군인연금	수급자	439	469	411	439	439	410	470
	재직자	679	767	604	650	710	630	734
	계	1,118	1,237	1,016	1,089	1,149	1,041	1,204
	규모		118	−102	−28	31	−77	85
	민감도		10.6%	−9.2%	−2.6%	2.7%	−6.9%	7.7%

자료: 『2013년 공무원연금보고서』, 『군인연금보고서』

> “공적연금의 충당부채는 가치평가의 대상 혹은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세대 간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 정보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계되고 있다.

Ⅵ. 몇 가지 논점 및 맺음말

1. 사학연금, 국민연금의 충당부채 계상 여부

상기하였듯이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보충정보로 공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환거래에 대하여 예측부채를 계상한다는 것은 재정정보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교부금 등을 정기적으로 교부하였다는 사실로 이를 국가의 확정부채로 인식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며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

다만, 장기재정전망을 위하여 잠재적인 재정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연금보고서상에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과 동일한 내용의 정보 공시를 요구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학연금의 경우 고용주체인 사학법인의 재무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를 계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에도 중앙공무원은 현재와 같이 국가재무제표에 계상하되 지방공무원은 고용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계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의 추가적인 논점이 있다.

2. 현재 연금충당부채는 과대계상되어 있다?

2011년 이후 발생주의와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한 연금충당부채가 발표된 이후 여러 언론에서는 연금충당부채의 절대금액과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주목하고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 일부 기사는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현재 보고된 연금충당부채는 국가의 실질적인 지급의무를 과대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연금급여지출의 재원이 되는 연금기금 적립금을 상계한 순부채가 아닌 총부채가 발표되고 있다. 둘째, 연금충당부채는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가입자의 기여금이 부담할 부분도 있다. 셋째, 미래에 지급할 연금부채만 계상하고 미래에 연금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반론들은 대개 설득력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표 1〉에서 보듯이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 적립금은 2013년 현재 8조 4천억원과 8천 6백억원에 불과하며 상계처리해도 전체 부채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둘째, 현재 수급권자에 대한 연금급여지출 중 상당부분은 국가뿐만 아니라 현재의 가입자(재직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재정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는 재직자 부담분을 제외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런데 국가와 재직자의 연금기여금 전액은 정부 산하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국방부가 관리하며 연금급여의 온전한 지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재무제표상에 계상되고 있는 연금자산과 연금부채의 대응은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연금충당부채의 세대 간 포괄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이미 위에서 정리하였듯이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연금충당부채의 포괄범위는 현재 발생부채(Accrued-to-date liability)이므로 미래의 연금기여분을 자산으로 추가 계상하는 것은 기준에 적절치 않다. 상기 주장은 〈표 3〉의 현재가입자 폐쇄형 포괄부채 개념에서의 자산 계상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에는 대응하는 부채의 범위 역시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가재무제표상 계상되어 있는 연금충당부채의 인식범위, 측정기준 그리고 필수 보충정보로 공시되는 연금보고서의 내용은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 큰 상이점이 없이 적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보이용자 측면에서 연금충당부채 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부채 평가 측면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OECD의 Blondal(2003)은 "정부부문의 재무보고가 발생주의 사고를 지향하는 목적은 정부서비스의 진정한 원가를 투명하게 보여주자는 것이며, 그 예로 정부공무원에 대한 연금원가를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난 후 제공된 서비스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고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재직하고 연금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듯이[10] 연금충당부채를 계상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당해 기간의 프로그램에 투입된 실질적인 인건비 총액을 계상하는 데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부채평가의 측면에서도 해당 정보의 해석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연금충당부채의 규모와 무관하게 동 금액은 정부가 당장 상환하여야 할 채무와는 분명히 구분을 하여야 한다. 채무의 경우 변제를 불이행할 경우에 국가부도 등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로 연결될 수 있지만 연금충당부채는 그러한 성질의 부채가 아닌 것이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M&A 등을 통해서 기업을 인수할 경우 연금충당부채는 인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채로 기업가치 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국가는 M&A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충당부채는 가치평가의 대상 혹은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세대 간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 정보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10) 김경호(2012) 재인용

〈참고문헌〉

김경호, 「공적연금의 부채인식 및 측정에 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고윤성 · 김수성, 「연금회계준칙 제정에 따른 국가회계의 개선방안 연구」, 『회계저널』, 제21권 제1호, 한국회계학회, 2012.

Franco, D, "Pension liabilities-Their Use and Misuse in the Assessment of Fiscal Policies," *Economic Papers*, No.110, Europea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1995.

Holzmann, R, R. Palacios and A. Zviniene, "Implicit Pension Debt: Issues, Measurement and Scope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World Bank, March. 2004.

Paul van den Noord and Richard Herd, "Pension Liabilities in the Seven Major Economies," OECD working paper No. 142, 1993.

특 집

2014 세법개정(안)

■ 2014년 세법개정(안)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고광효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 2014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정책방향
안종석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경재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를 목표로 하는 201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재정포럼』에서는 정책담당자의 2014년 세법개정(안)의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는 특집을 마련하였다. 〈편집자 주〉

2014년 세법개정(안)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Ⅰ. 2014년 세법개정(안)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올해 상반기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의 안정이 지속되고 EU가 성장세로 돌아서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가 주춤하여 예상보다는 완만한 회복을 보였다.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이 통화정책 완화를 지속하여 변동성은 크지 않으나, 우크라이나 · 이라크 사태 등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당초 안정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세월호 사고라는 대내적 충격에 따른 소비 둔화 등으로 상반기에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물가상승률 둔화와 투자부문의 개선은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고용 증가세 및 소비의 둔화는 아직까지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반기 부진과 내수위축 등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은 당초 3.9%보다 낮은 3.7%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는바, 이러한 저성장 기조를 반전시키고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발 빠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국 · 내외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인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를 정책테마로 하여 ① 경제활성화, ② 민생안정, ③ 공평과세, ④ 세제합리화를 4대 기본방향으로 마련되었다.

Ⅱ.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1. 경제활성화

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

경제활성화를 세제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① 근로소득 증대세제, ② 배당소득 증대세제, ③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일컬어지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근로소득 증대세제로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임금 증가분의 10%)를 허용하고, ②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14% → 9%)하여 소액주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③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신설하여 투자 · 임금증가 ·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추가과세(단일세율 10%)하는 방안이다. 동 제도의 도입취지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내수경기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나. 투자 · 소비 확대 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기본공제율을 1%p 인하하는 대신 추가공제율을 1%p 인상하고, 지방투자 또는 서비스업에 대한 추가공제율을 각각 1%p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투자비용을 조기 회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영위기업이 설비투자 시 기준 내용 연수의 50%(서비스업 4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가속상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허권에 대한 비용처리 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건전한 소비 진작 ·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체크카드 소득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30% → 40%)하는 방안도 포함하였다.

다. 중소 · 벤처기업 지원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여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와 자본금이 증가하여도 중소기업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하고, 졸업기준도 자산총액(5천억원 이상) · 매출액(1천억원 이상) 기준만 존치하도록 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벤처 ·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500만원 이하분의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상(50% → 100%)하고,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유치에 스톡옵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주발행형 스톡옵션도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 코넥스 상장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을 '1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였다.

라. 가업승계 지원

중소 ·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피상속인 경영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1인 지분 25% 이상인 경우도 지분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는 등 가업 요건(피상속인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2년 이상 가업종사 요건 및 1인 단독상속 요건 폐지 등 가업승계 요건(상속인 요건)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 더불어 사후관

리기관도 단축(10년 → 7년)하고, 가업용 자산 유지의무 및 고용유지의무 완화 등 각종 사후관리의무도 완화하여 독일과 같이 가업승계가 원활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마. 기업경쟁력 제고

M&A 등 기업 구조조정이 활발해지도록 구조조정 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 또한, 문화 · 의료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성장동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문화콘텐츠 분야 핵심기술(영화 · 애니메이션 기술 등)을 추가하고,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에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외화획득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 민생안정

가. 서민 · 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서민 ·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저축제도의 재설계를 추진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고령자 · 장애인 등의 지원을 위한 생계형저축과 통합하여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신설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가입대상을 고령자 ·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납입한도는 5천만원(기존 생계형저축 3천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고령자 가입연령은 단계적으로 조정(60세 → 65세)할 예정이다. 청 · 장년층의 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120만원 → 240만원)와 서민층 및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대한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완화(7년 → 3년)하고, 농어민에 대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1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하였다. 저축지원 외에도 영유아용 기저귀 ·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7년 말까지), 음식 · 숙박업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등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물품 · 용역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함께 담았다.

나. 노후소득 보장 강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과세체계를 연금친화적인 과세제도로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금계좌 납입한도와는 별도로 연 300만원을 추가하고,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부담을 30% 경감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 또한, 고액 퇴직자에게 유리한 퇴직소득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정률공제(40%)에서 퇴직급여 수준별로의 차등공제(100%~15%)로 전환하며, 소규모 자영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의 원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근로 · 퇴직소득 간 실효세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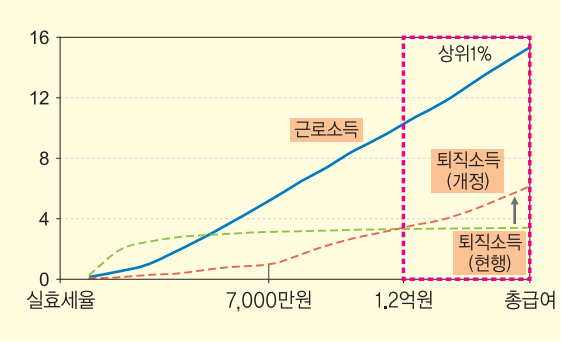

〈퇴직소득 과세체계 개편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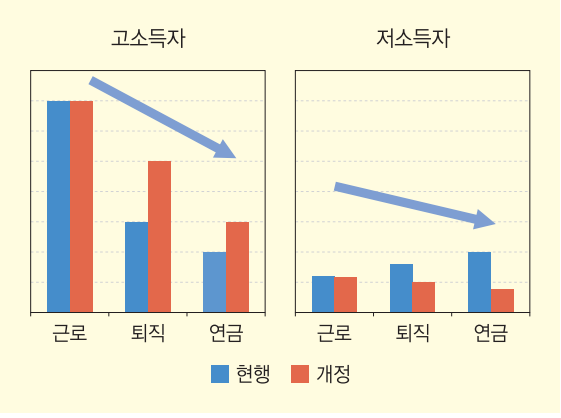

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임대주택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2년 연장하되 분리과세 금액의 한도를 설정하고, 기존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기존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준공공임대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

3. 공평과세

가. 비과세 · 감면 정비

지난해에 이어 성과평과를 통해 비과세 · 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범위에서 손(孫)회사를 제외하고 공제대상 자(子)회사의 지분율도 25% 이상으로 강화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세율(현행 9%)을 당기순이익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7%으로 조정하고,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현행 9/109 → '15~'16년 7/107 → '17년 5/105)도 포함하였다. 사회기반시설채권 분리과세,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해외펀드 손실상계 등 정책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실효성이 없는 과세특례는 폐지하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대상을 축소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합하는 등 지원 필요성이 있는 과세특례는 재설계하여 제도의 목적에 더욱 부합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나. 세원투명성 제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법인사업자 및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자동차 관련업 ·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을 추가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을 추가하고 서화 · 골동품을 외국인에게 양도 시 양도자가 원천징수 후 신고 ·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대상법인을 모든 법인으로 확대하여 세수일실 방지를 위한 납

부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공평과세에 반하는 탈세 감시 및 조세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건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조세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5년 → 7년)하는 방안도 포함하였다.

다. 역외탈세 방지 강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과세강화 방안으로 거주자 판정기준 중 거주요건을 1년 이상에서 6개월(183일) 이상으로 조정하고, 국외재산 증여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 시 국내과세 면제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외 모회사로부터의 차입금 한도를 축소(자본의 3배 → 2배)하고 과세대상 자회사의 범위 판정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자회사의 과다한 이익유보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제재 확대(과태료 최고 20%),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의 연장(10년 → 15년)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인상 등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4. 세제 합리화

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영세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선 세무대리인제도를 법령화하고, 경정청구기간을 확대(3년 → 5년)하는 한편,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사업 대토보상 시 양도세 감면율을 인상(15% → 20%)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및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기한을 '17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납세협력비용 감축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자 등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 또는 관세 납부 시 납부한도(1,000만원)를 폐지하고,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청서류를 줄이고 사업용 계좌의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 각종 신고 · 납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다.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개인 · 중소기업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10%p) 유예기간을 '15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농지 · 임야의 재촌 요건도 완화(20㎞ 이내 → 30㎞ 이내 거주)한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조정(400달러 → 600달러)하고 영세사업자의 가산세 경감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16년 말까지)하는 등 세부담 수준을 합리화하고 변화된 경제여건에 조세제도가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Ⅲ. 세법개정 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1. 세법개정 세수효과

금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총세수효과는 5,680억원 증가로서 주요 증가요인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 퇴직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등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퇴직연금 세

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등이다.

이를 세부담 귀착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고소득자 · 대기업'의 세부담이 9,680억원 증가하는 반면 서민중산층 ·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4,890억원 감소하는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되 서민 · 중산층에 대한 생활지원도 함께 감안하여 이번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2. 향후 추진일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내국세 13개, 관세 3개)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해 8~9월 중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9월 말 금년도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제출된 세법개정안은 국회 법안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14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정책방향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고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 가지 관점에서 검토한다. 제일 먼저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정부가 제시한 네 가지 정책방향–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그리고 세제 합리화–은 적절한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적절한 정책수단을 선택하였는지 살펴본다. 두 번째로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 대해서, 의의와 내용, 특징, 문제점을 살펴본다.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 서민 · 중산층, 노년층 등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 검토한다.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경제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면 서민 · 중산층 지원은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에서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창업기업, 지방이전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언론의 보도나 논의된 내용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큰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비롯하여 중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정부가 제안한 방안들의 필요성과 의미, 내용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본고에서는 정부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1. 전반적인 정책방향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그리고 세제 합리화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비롯하여 중소 · 벤처기업 지원방안, 가업승계 및 창업지원방안 등을 제안하였으며,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에는 서민 · 중산층 지원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공평과세 방안에는 비과세 · 감면 축소, 세원투명성 제고, 역외탈세 방지 등

이 제시되었으며, 세제 합리화를 위한 방안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협력비용 감축에 초점을 맞췄다.

흔히 조세정책을 수립하거나 평가할 때는 경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며, 그 외에 세제가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지, 세제가 단순하고 명확한지,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소요되는지 등을 고려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2014년 세법개정안」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빠뜨리지 않고 고루 고려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이라는 정책방향을 통해 조세가 경제성장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으며, 공평과세에서는 세제의 단순화와 공평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세제합리화에서는 납세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조세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조세정책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은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활동의 왜곡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세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시장에서 가격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고 보고 조세를 통해서 경제활동의 변화를 유발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기업이 투자를 주저하여 저축이 과다한 상태인데, 미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이 문제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세정책을 통해서 기업의 저축을 축소하고 소득을 가계로 이전하며, 가계가 그것을 소비하도록 하여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불씨로 삼고자 하였다.

그런데 조세정책은 기본적으로 가격정책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조세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소득을 포함한다-에 약간의 변화를 줌으로써 경제주체의 행태에 영향을 준다. 소비세는 생산품의 가격을 변화시키고 소득세는 생산요소의 가격을 변화시킨다. 재산과세는 재산가격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가격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조세정책이 경제주체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데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2008년 이후의 법인세율 인하가 기대하였던 투자증대 효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조세정책의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의 일반적인 결론은 조세정책이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약간 촉진하거나 약간 완화하는 수준에 그칠 뿐 활동의 방향을 전환하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기업의 설립이나 이전, 투자 여부 등 어떤 행태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discrete choice)은 대체로 조세 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 좌우되며, 조세정책은 시행하기로 결정한 투자나 고용의 규모에 약간의 영향(marginal effects)을 줄 뿐이라는 것이다.

가격정책인 조세정책을 직접적인 규제와 같은 목적으로 활용할 때, 남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좁은 범위로 특정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제도가 복잡해진다.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하면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너무 넓게 하면 과도한 혜택이나 부담으로 인한 비효율성, 조세회피 유발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조세정책을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사용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제상황

에 따라 단기적으로 적극적인 규제나 지원 정책을 대신하여 조세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그 정책의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책효과와 부작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수입에 거의 변동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은 연간 500억~1,000억원 정도의 세수변동이 예상될 뿐이다. 빠른 고령화와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 증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세수 부족 현상 등은 세수입 증대를 예상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이러한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수입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이는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증세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과 경제활성화 관점에서 증세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치 ·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세율체계 등 조세제도를 형성하는 큰 틀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경제활성화, 민생경제 안정과 같은 중요한 정책목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다 보니 선별적인 지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비과세 · 감면이 확대되고, 조세제도가 복잡해지게 되었다.

2.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

2014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근로소득 증대세제, 그리고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세 가지로 구성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이전하여 소비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서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 이 패키지의 목적이다.

우리 경제는 1997년에 시작된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수준 또는 그 이하로 경제의 탄력성이 실종되어 장기침체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되었다.[1)]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려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활발한 기업활동에서 얻어진 소득이 임금과 배당을 통해 가계에 배분되고, 가계는 배분된 소득을 소비하여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상황은 이러한 선순환구조와는 거리가 있다. 특히 경제전망이 불투명하여 기업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며,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배분하는 데 있어서도 소극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2008년 이후 7년째 실질임금이 증가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으며, 배당률은 2013년 평균 21.1%로 미국(34.6%), 일본(30.1%), 프랑스(55.1%), 독일(43.3%) 등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전세계 기업의 평균 배당률은 40.2%이다. 국민소득에서 가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74%에서 2013년 61%로 하락하였고, 기업부문의 비중은 13%에서 25%로 상승하였다.[2)]

이런 상황에서 실물부문에 투자되지 않은 기업의 소득을 임금이나 배당의 형태로 가계로 이전하

1) 박종규(2014)
2) 전병목(2014)

여 소비되도록 함으로써 경제의 총수요를 확대하면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중 첫 번째는 임금의 증대를 유도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된다.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 그 초과분의 10%(중소기업) 또는 5%(대기업)를 세액공제 형식으로 정부가 보조하는 제도이다. 단, 전년에 비해 고용을 축소한 기업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두 번째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이다. 배당률이 높거나 배당률을 많이 증가시킨 상장기업의 주식배당에 대해 배당세율을 인하하는 제도이다. 현재 14%로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는 세율이 9%로 낮아지고, 종합소득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25% 세율의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이 경우 개인단계에서 납부하는 배당에 대한 세금의 최고 실효세율을 6%p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배당률이 높은 상장주식은 배당성향 ·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인 상장주식을 말하는데, 총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당성향 ·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총배당금 증가율이 30% 이상이 되어야만 혜택을 받는다.

세 번째는 임금이나 배당으로 가계에 배분되지도 않고, 국내 실물부문 투자에도 사용되지 않고 남은 소득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많은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법인세에 추가하여 세금을 좀 더 내도록 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이다. 앞의 두 제도와는 달리 이 제도는 징벌과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초과분 과세의 적용대상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제시할 계획이다.

기업의 과다한 저축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조세정책의 측면에서 기업이 과다하게 저축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배당을 할 때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법인단계와 개인단계에서의 세부담을 합하여 배당에 대한 총세부담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하여 51%이다. 이 수치는 법인세에 개인단계에서 납부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더하고,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배당에 대한 세부담은 34개 회원국 중 6위에 해당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2%로 OECD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최고세율이 지방세를 포함하여 41.8%이다.[3)]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 시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이다. 미국은 이미 10여 년 전에, 일본은 그 이후에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배당소득 저율분리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조세로 인한 왜곡을 축소하여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장은 부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미국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제도를 도입할 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았다. 우리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동시에 도입하여 부자 감세의 문제를 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3) OECD Tax Database, Table II.4-Overall statutory tax rates on dividend income

저축을 가계의 소득으로 전환하여 국내소비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서 국내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배당 증대의 혜택이 대부분 고소득층 가구의 저축을 증대시키는 데 집중되고 국내소비를 증대시키는 효과는 아주 적게 나타날 수 있다. 증가된 배당의 상당부분(약 3분의 1)은 외국인에게 돌아가며, 또 상당부분은 다른 기업에 돌아간다는 점도 가계소비 증대 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단기적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를 안착시키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임금 인상을 통해 기업의 저축을 근로자의 가계소득으로 전환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인건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서 저소득층보다는 중간소득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먼저 제도의 효과가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 제도를 포함하여 3대 패키지를 모두 2015~2017년 소득에까지만 적용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임금 인상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정책이다. 한 번 결정하면 다시 환원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3년간의 세제 혜택이 이와 같은 기업의 장기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임금과 달리 배당은 매년 변동되는 것이어서 임금보다는 조세지원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 인상과 고용의 증대 중 어느 쪽을 더 강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임금 인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은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생산을 증대시키고, 고용과 투자를 증대시키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배분되는 수익도 증가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정책이 이러한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의 두 가지 방안이 기업의 저축을 가계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는 유인제도라면,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도의 복잡성, 실효성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임금, 배당에 대해서 앞의 두 제도에서 충분히 고려하였다면 여기서는 투자에만 초점을 맞추면 제도를 단순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적용되는 기업의 범위는 아직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았지만,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한다면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문제가 지적된다. 한편 적용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경우 기업 활동의 왜곡, 조세회피 · 탈세를 위한 노력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의 이익 배분 행태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적용범위를 좁혀서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익을 과도하게 유보하여 수동적 투자(passive investments)에 집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역할을 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중소기업, 중 ·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원

「2014년 세제개편안」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 창업기업, 저소득층, 노년층 등에 대

한 조세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공장자동화기계 등에 대한 관세감면율 확대,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중견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가업상속 공제대상 확대,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 인상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민생안정을 위한 방안으로는 세금우대저축의 정비,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 완화, 서민이용 물품 · 용역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 농 · 어민 지원방안, 중산층 상속 · 증여세 부담 경감방안, 연금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최근 수년간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저소득층 및 노년층의 생활안정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정책에서 중소기업 지원, 중 · 저소득층 지원, 노후소득 보장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세부담을 증대하거나 크게 완화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을 차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좁은 범위로 지원대상을 한정하여 조세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과 관련하여 중소 · 벤처기업, 중 · 저소득층,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방안들은 대체로 좁은 범위의 대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들로 구성되었다.

제시된 개편방안을 항목별로 보면, 대부분 개별 항목에 대해서 지원의 타당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유지 또는 확대의 타당성이 의심되는 항목도 있다. 특히 중소기업 공장자동화에 대한 지원,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고용에 대한 지원과 병행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고용지원 정책과 생산성 향상 및 공장자동화를 위한 투자지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KIPF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14년 세법개정안-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보도자료, 2014. 8. 6.

김우철,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중소기업 지원세제」, 경제활성화를 위한 2014년 정부 세법개정안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발표자료, 2014. 8. 13.

박종규, 「2014년 세법개정안: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쟁점과 대안」, 경제활성화를 위한 2014년 정부 세법개정안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발표자료, 2014. 8. 13.

전병목,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계소득 증대와 고령화 세제」, 경제활성화를 위한 2014년 정부 세법개정안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발표자료, 2014. 8. 13.

OECD Tax Database, http://www.oecd.org/tax/tax-policy/tax-database.htm

공공정책포럼

■ 제36회 공공정책포럼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및 정부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격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

개 요

- **주 제**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
- **일 시** 2014년 7월 23일(수), 07:30~09:30
- **장 소** 서울 팔레스호텔 그랜드볼룸A(별관 B1)
- **진행순서**

07:30~08:00	조찬
08:00~08:10	인사 말씀 송대희 좌장
08:10~09:00	주제 발표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09:00~09:30	자유토론
09:30	폐회

* 본 원고는 2014년 7월 23일 서울 팔레스호텔 그랜드볼룸A(별관 B1)에서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개최한 제36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발표 및 토론요약입니다. 주제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 기관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인사 말씀

송대희/좌장

오늘은 고용·노사관계 전문가인 김동원 교수님을 모시고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정상화'에 대해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다루는 당사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제적 전문가인 김동원 교수님의 발표와 이어질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공공기관이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상화를 이룰 수 있었으면 한다.

주제발표 요약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

김동원/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 겸 경영학과 교수

1.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추세

노동조합은 1750년경 생겨나서 이제 200여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과거의 노동운동이 민간제조업 중심이었다면 1960년대 이후에는 공공서비스 분야로 그 중심축이 이동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아도 최근에 발생한 파업이나 중요한 사건 대부분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며, 최근 몇 년간의 일시적인 것도 아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노사관계 헤게모니 자체가 공공서비스로 옮겨 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임금근로자 중 제조업 종사자보다 서비스나 공공부문 종사자의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제조업 종사자가 20% 정도이며, 미국 등은 10% 정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17% 정도인데 이 수치는 기술발달과 자동화로 인한 제조업 종사 임금근로자 감소로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동화에 한계가 있는 서비스 분야는 향후 현재의 72% 정도에서 80%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부문은 사용자들이 노조를 약화시키는 강한 인센티브가 있는 반면에 공공부문은 대부분 독점이거나 과점상태이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과도하게 약화시킬 만한 인센티브는 없다. 이 때문에 공공부문은 노조가 생기면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된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약 10% 정도이다. 우리나라 총인구 5천만명 중에서 취업자가 2,500만명 정도인데 그 중 임금근로자는 1,700만명이고, 노동조합에 소속된 노조원의 숫자가 170만명이다. 조직률 10%는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OECD 국가 중 노동조합 조직율이 가장 낮은 국가인 프랑스가 7%이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로 10% 정도이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을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공무원이 40%, 교사는 37%로 공공서비스 부문의 조직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원이 가장 많은 분야는 금융노조가 14만명이며, 그 다음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이 6만명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제조업 중 조직률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현대차가 4만명 정도이다. 미국 역시 NEA라는 교원노조가 가장 크며, 일본의 경우 '자치로'라는 지방공기업 노동조합이 100만명 정도로 가장 큰 규모의 조직이다. 또 영국의 공공노조인 UNISON, 독일의 Verdi라는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이 각 국가에서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이다.

최근 우리나라 양 노총의 위원장을 공공노조 출신이 맡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즉 공공부문의 노사관계가 민간에 전달되어 헤게모니 자체가 공공부문에 있다.

2.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이론적 특징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민간과 매우 다르다. 과거 공공부문에 노동조합이 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고, 한편, 노동조합의 역사 200년 중 공공부문에 노동조합이 생긴 지는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서로 다르다는 데에 기인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부문 사용자의 중첩성을 들 수 있다.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은 기관장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의회, 정부부처,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까지도 이에 관여하는 등 다양한 층위에 걸쳐져 있다. 소유권 자체가 국가 전체에 걸쳐 있어 의사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하며, 노사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 장기화되는 경우도 많다.

또 공공부문은 노동조합 결성과 유지가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데에 있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이 안정적인 조직률 유지가 용이하여 정치 세력화의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이론적 특성은 다면성이다. 민간은 사용자가 협상의 결과를 책임진다. 노(勞)측에 임금을 인상해 주면 사용자가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사관계 전문가들이 일반 민간부문 기업에 가서 노사관계를 평가할 때 초점을 두는 부분 중 하나가 사용자가 노조를 탄압하는지 여부이며 실제 탄압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노/사/납세자로 다면화되어 있어 노사협상의 결과를 납세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결과에 대해 무관심하며, 이로 인해 일부 기관의 경우 노사유착 가능성이 존재한다.

3. 한국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정상화 필요성

최근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과다부채와 방만경영이 이슈가 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500조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또 일부 공기업의 교육비 또는 의료비 과다지원, 경조금 지원, 과다한 특별휴가, 느슨한 복무형태, 고용세습, 경영 · 인사권 침해 등의 비정상적인 노사관계 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큰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노사관행은 민간부문의 모델 사례가 되므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4.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동향

공공기관의 대표적 문제인 부채감소와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정상화대책을 수립 · 추진 중이다. 방만경영의 경우 전체가 아닌 일부 공공기관의 문제로, 양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청년실업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노동계에서는 양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교섭권 위임 등 투쟁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공대위에 대한 공공기관 노조의 참여는 다소 미흡한 편이며, 일부 기관은 협상 타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영향력이 큰 대규모 기관의 협약 타결이 불투명하고, 일부 기관은 대치상태가 지속되는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5. 공공기관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과제

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한 과제 중 첫 번째는 공공부문 개혁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시도하고 있으나 실제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노동조합에서는 공공기관 개혁을 정권 초기의 소나기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의 공공기관 정상화가 제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투명한 원칙 제시와 공정한 평가기준에 근거해 현 정부 임기기간 내내 공공기관 노사관행 정상화에 대한 신상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조치나 일과성 정책이 아니라는 의지를 국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개혁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 및 국민 공감대 구축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공감하고 직원들이 동의해야 국민여론이 형성되고 최고경영자의 개혁 노력이 수용되어 노동조합 지도부도 정상화 이행에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방적인 추진은 노동조합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동조합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정공법이다.

세 번째는 법적인 문제인데, 법제도를 준수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개혁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보니 현행법 테두리를 지키지 않고 개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피한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근로자대표)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방만경영 개선에 집중하다 보니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방만경영의 정상화라는 큰 원칙의 달성이 중요하며, 세부적인 사항에 집착하여 현행법을 어기는 것은 공공기관 정상화의 지속적인 추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갈등 발생이 우려된다. 이는 오히려 지속적인 갈등이나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설득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철저한 성과주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경영평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주무부처에서 공공기관 정상화에 발맞추어 일관된 평가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기타공공기관의 정상화 작업에 대한 동참이 미흡한데, 주무부처의 자율평가도 현재의 공공기관 개혁과 호흡을 맞추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에 입각하여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원칙 있게, 그리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과다부채와 방만경영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한다.

■ 질의응답

한상열 / 주택금융공사 고객가치경영본부장

발표 내용에 대해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노사협상을 진행할 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설득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노측에서 설득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다. 현재는 자율적 협상의 여지가 부족하다. 이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

김동원 /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

노사협상은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사측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노조의 기득권을 없애는 것 밖에 없어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노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해법을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노사관계는 많은 대화를 통해야만 함께 바람직한 대안이 나올 수 있으며, 단기적인 주고받기 식으로 생각하면 잘 풀리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었으면 한다.

안기영 /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본부장

현재의 어려운 노사협상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관의 경영혁신 노력과 관련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한다. 최근 경영혁신을 통해 기관의 이자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내부적 반발이 있었다. 기관이 경영혁신을 통해 이자수익이 향상되더라도 정부에 반납해야 해 기관으로서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진행할 유인이 없는 것이다. 결국 반발을 무릅쓰고 진행하고는 있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성과를 직원 복지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과도한 복지가 아니라 현재 공무원보다 낮은 수준의 복지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했으면 한다. 즉, 기관에서 스스로 경영혁신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격려 차원에서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광해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국장

주택금융공사의 한상열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고충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다. 정상화 추진 초기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정상화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다. 저희가 정상화를 위한 노사협상에 대해서는 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보니 기관 스스로 발굴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 저희가 드린 원칙이나 가이드라인 내에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했으면 한다. 사실 그런 동력을 가진 기관들이 협상을 많이 타결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결국 현재의 가이드라인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기 위한 것이다.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성실히 이행한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안기영 한국환경공단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역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예컨대 정원의 경우, 기관 정원을 늘렸을 때 실제 필요한 인력을 증원한 것이 아니라 기관이 그만큼 채용하지 않고 일부러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경영평가제도가 기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평가를 통해서 성과

로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의 인센티브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다 정확히 잡아낼 수 있도록 경영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기관의 창의적인 제도 운영이나 노력들이 확인될 수 있는 장치를 고민해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꿔 나가도록 하겠다.

정인억/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노사협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노와 사의 요구사항의 균형이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측의 요구는 가짓수는 많지 않지만 노측에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구조조정이나 사전동의권 등이다. 이에 비해 노측이 요구하는 복지의 리스트는 가짓수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사측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복지의 리스트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창의적인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기관이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했을 때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노사협의 과정은 반드시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정상화를 성실히 수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또는 직원에 대한 보상을 고려했으면 한다.

윤석호/공무원연금공단 경영본부장

방만경영 정상화 중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 점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저희 기관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 이미 사라진 제도이거나 또는 아예 없었던 제도가 점검 중에 거론되었다. 이에 대해 내부 구성원이 알게 되면서 다른 기관과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다. 방만경영의 정도의 격차가 현격히 벌어지는 기관 간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해 나가고 감축 비율의 경우에도 앞으로 조정될 것인지,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될 것인지 궁금하다. 이러한 내용들이 노사협상에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양장석/인천항만공사 경영본부장

방만경영과는 조금 다른 노사관계의 문제를 거론하고자 한다. 저희 공사 200여 명의 직원 중 무기계약직이 17명이다. 무기계약직 직원이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능력이 뛰어나 단순업무 이상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직원도 있다. 이런 직원들의 승진 요구에 대해 주무부처에 문의해 보았으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직원들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법규상 무기계약직이 승진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없어 노사관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최광해/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국장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지만. 정규직이어야 할 업무들이 여러 이유로 인해서 비정규직화되면서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대우해 주지 못하기도 하다. 관련된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다.

방만경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나 공무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 어떻게 할지 역시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그 문제를 꺼낼 단계는 아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 먼저 고르고 난 후 고민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공공기관 전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한 후 공감을 얻고 나서 공공기관이 생산성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감안해

야 할 것이다. 기관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김원식 / 건국대 경제경영학부 교수

기업들의 특성이 다양한 만큼 공공기관에 접근할 때에도 하나의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그 특성이 변모한다. 과거의 공기업이 인프라 중심의 자본집약적 기관이었다면 미래의 공기업은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공기업 정책을 현재와 같이 획일적으로 보는 것보다 자본집약형, 금융형, 서비스 공기업 등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관 구성원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용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혜택 파악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이 노사협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도 과감하게 공기업의 역량 강화를 하는 데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노사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창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획본부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경우 정상화와 관련된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 이는 일부 기관의 문제를 공공기관 전체가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정부가 지나치게 확대하여 유포시켰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정정과 함께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면서 공공기관 정원을 증원해 주지 않는 문제, 그리고 직원들의 성과급 역시 내부구성원 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과거 정부 때부터 시작된 제도적 틀에 대해 이제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할 때이다.

공공기관 평가에는 S~E급이 있는데 이번 평가에서 공기업은 B등급이 최고 점수였다. 이런 경우 국민들이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이슈들이 모여 공공기관이 공공의 적처럼 비춰지는 상황이 되고 이는 곧 정부에도 이어진다. 긍정적인 것을 부각하면서 부정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송대희 / 좌장

발표자인 김동원 교수님께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적으로 발표해 주신 덕분에 많은 토론과 의견 제시가 있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 외로운 노사협상을 해야 하는 당사자로서 기관을 지원해야 하는 정부에 대해 과거 경험을 토대로 개선할 점이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이다.

유금상 / 국민연금공단 인재경영실장

임금이나 단체협상 등의 유예기간이 2년이라 단위사업장으로는 2년 주기로 노사협상이 이루어진다. 노사관계와 관련된 정상화는 한 해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최소한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상임이사 연봉 역시 임기가 2년인 만큼 계약기간이나 근무 시작 연도에 맞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지 않다. 이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

김동원 /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

노사협의 과정에서 사측이 정상화와 관련된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을 노동조합에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서로 연대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과연 그러한지 의문이다. 기관 간 애로사항이나 모범사례 등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무리 말씀

송대희 / 좌장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이 대한민국 전체 또는 전 세계의 노동조합을 대표하듯이 원만한 노사관계도 공공부문에서 주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노사관계, 노동조합 대응은 일종의 아트(Art)이다. 논리나 법률, 합리성 역시 중요하지만 노동조합과의 스킨십과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현장의 경험 또는 느낌을 발표자인 김동원 교수님이나 정부에 전달하여 기관의 원만한 노사관계가 전체 공공기관과 전체 기업으로 공유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러한 역할이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사명감을 통해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또 전체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중요한 현안을 발표해 주신 김동원 교수님과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36회 공공정책포럼을 마치겠다. KIPF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4-07

요 약

■ 스페인은 2015년에 적용할 세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법인세율 및 개인소득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법인세율은 현재 30%인 명목세율을 25%까지 인하를 하며 이에 따른 세수 부족을 대비하기 위한 개정안도 동시에 발표됨
- 개인소득세는 현재 최고세율이 51%인 것을 45%까지 인하하고, 개인에 대한 CFC규정 적용, 파견인에 대한 세율 조정, 출국세에 대한 개정안도 포함됨
- 비거주자인 개인에 대해서는 EU나 EEA 거주자에 대한 세율인하 방안이 포함됨

■ 아일랜드는 2014년 6월 23일 조세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세소득 산입시기 불일치로 공제되지 못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음
- 단, 이 지침은 단순한 과세소득시기의 불일치로 인한 외국납부세액 불공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기타 다른 사유에 의한 불공제는 해당하지 않음

■ 호주 재무장관은 2014년 7월 17일 과소자본세제 및 국외배당소득면제세제 변경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 과소자본세제는 과소자본세제 적용비율의 강화, 적용이 배제되는 금융비용한도 상향조정, 국내투자에도 전세계 부채비율의 적용, 공정부채비율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지분율 10% 이상 보유 시 적용되는 국외배당소득 면제 규정을 보다 실질에 부합시키기 위해 세무상 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신탁, 집합투자증권 등의 이익분배에도 적용함

■ 인도 재무장관은 2014년 7월 10일 의회에서 2014-15 예산을 공개함
- 예산에서는 경제, 교육, 산업, 사회간접자본, 자본시장 및 금융부문, 사회안전망, 문화 및 관광 등과 더불어 세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세제는 면세수준, 각종 공제 및 이전가격의 직접세와 관세, 물품세, 서비스세의 간접세 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1. 스페인-2015년 세법개정 초안 발표[1)]

■ 스페인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세법 개정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법인세, 소득세 및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등이 주요 내용임

1) 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4.nsf/PDFs/TI1750721.pdf/$file/TI1750721.pdf

가. 법인세

■ 법인세의 개정안은 현재 30%인 명목 법인세율을 2015년에 28%, 2016년에 25%까지 인하하는 방향을 제시함

■ 스페인 정부는 세율 인하로 인한 과세수입 감소에 대응하고, 과세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유형자산의 손상, 부동산 투자의 손상, 무형자산(영업권 포함)의 손상으로 인한 손실은 손금산입을 금지
- 이익공유형 대출 같은 혼성거래를 위한 비용은 손금불산입 처리
- 주식 취득(share acquisitions)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손금산입 일부 제한

나. 개인소득세

■ 국제적 활동 증진으로 인한 과세관점에서 개인소득세에 대한 개정안으로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규정 도입, 파견인에 대한 과세 개정, 스페인 거주자의 출국세 도입을 제시함

■ 스페인의 개인소득세율은 EU 국가 중에서 높은 수준에 속하며, 일반적인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을 2015년에 47%, 2016년에 45%로 인하할 것을 제안함

■ 저축소득(배당과 자본소득이 포함됨)의 세율 또한 2015년에는 24%, 2016년에 23%로 인하할 것을 제안함
- 단 지방정부 수준에서 각기 다른 조정이 있을 수 있음

1) 개인에게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규정의 적용

■ 현재 법인에게 적용되는 CFC규정이 법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인에게도 확대 적용될 것임
- 스페인 거주자인 납세자가 다른 EU 회원국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있을 때, 그곳에서 법인 설립을 위한 유효한 경제적 저변이 있음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CFC규정이 적용됨

■ 이에 따라 개인도 해외에서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 능동성 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수동적 소득에 대한 소득액수 및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신고해야 함

■ CFC규정의 적용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음
- 비거주자인 실체를 지배하면 그 실체에 대한 과세총액이 스페인 법인세 총액의 75% 이하일 것

■ 개인이 스페인의 CFC규정에 정의된 수동적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비거주자인 실체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파악될 때임
- 비거주자인 실체가 사업 영위에 필요한 물적 · 인적 자원을 가지지 못할 때 및 그러한 자원들이 같은 경제적 집단 내의 또 다른 비거주자인 실체에도 존재하지 않는 때
- 비거주자인 실체가 법인 설립과 운영이 유효한 경제적 바탕을 가지지 못한 경우

2) 스페인의 파견인에 대한 정책 개정

■ 개정안은 근로자의 연봉과는 관계없이 스페인으로 파견된 자들에 대해서 해당 정책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것임

- 스페인의 파견인에 대한 정책은 세제 혜택을 통해 해외의 우수한 기술 인력, 근로자들을 스페인으로 입국하게 하여 스페인의 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임
- 현재는 60만유로의 제한이 있어서 파견자는 60만유로까지는 25%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누진적 세금이 적용되고 있음
- 개정안은 스페인에 있는 법인 관리자나 이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음
- 그러나 프로운동선수들은 제외되며 개정안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스페인 거주자인 근로자들과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됨
  - 2005년에 축구선수 베컴에 의해서 논란이 된 이후 프로운동선수들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이슈가 되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불평등한 과세체계를 바로 잡게 된 것임

■ 새 규정은 처음 60만유로까지는 24%(2015년부터)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60만유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45%(2015년은 47%)의 세율 적용을 도입함

■ 새로운 정책은 2015년 1월 이전에 파견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임

3) 개인의 출국세에 관한 새로운 조항 신설

■ 개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출국세의 개정안은 지난 10년 중 5년 이상을 스페인에서 거주하고, 집단투자기구 또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거나 지분을 가진 개인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제안함
-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 400만유로를 초과하여야 하며, 100만유로를 초과하는 가치를 가진 회사의 경우 회사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대상임

■ 과세 대상이 된 경우 스페인의 거주기간 동안 인식되지 않았던 자본이득에 과세될 것임

■ 다만 납세자가 5년 이내에 다시 스페인의 거주자가 되고 출국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을 국외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는 이연될 수 있으며 지정된 곳으로 이주 시에도 과세가 이연됨
- 거주지를 스페인에서 EU 또는 EEA 회원국으로 옮기는 경우에 대한 특별 규정도 신설되어 과세를 이연함
- 그러나 납세자가 다음과 같은 이전행위를 할 때는 과세가 됨
  - 주식이나 지분을 생전 증여를 했을 때
  - EU나 EEA에 거주하는 것을 중단할 때
  - 기타 특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

다.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개정

■ 현행법하에서는 2015년에 비거주자에 대한 일반소득의 소득세율이 24%로 예정되어 있으며, 배당, 이자,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20%임

■ 그러나 개정안은, EU 또는 EEA 회원국가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2015년에는 20%, 2016년에는 19%로 인하할 것을 제안함
- 해당 국가는 스페인과 효과적인 과세정보 교류를 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인하를 제안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성열 회계사〉

2. 아일랜드-과세소득 산입시기 불일치로 공제되지 못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지침 발표[2)]

■ 아일랜드 국세청은 2014년 6월 23일 아일랜드 회사의 비거주자인 지점에 의해서 납부된 외국세액에 대한 이중과세의 해결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함
- 이 지침서는 수익에 대한 인식의 시간적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혜택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 이 지침서는 해당 상황에서의 감면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업계와 관련됨
  - 보험업계는 투자수익의 인식과 비용인식에 있어서 시간 차이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음

가.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하의 문제점

■ 일반적으로 아일랜드 거주자인 기업은 외국관할에 있는 지점을 포함한 전 세계의 수입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고 있고, 해외 지점들은 해당 관할에서 세금을 납부할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
- 아일랜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조세조약이 있는 관할뿐 아니라 조약이 없는 관할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중과세 감면 조치를 취함

■ 현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아일랜드의 회사와 국외 지점의 회사와의 과세목적상 수익 인식시기가 불일치 할 경우, 외국에서의 세금 발생시기와 아일랜드의 세금 신고시기의 불일치로 인해서 관련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감면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 즉, 서로 다른 회계 인식시점의 차이로 과세소득이 관할마다 다른 시점에서 인식됨
- 또한 수익이나 기타 수익이 외국 자회사 관할에서 최종적으로 인식될 때, 해당 과세기간에 아일랜드에서 세액이 발생되지 않아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함

■ 아일랜드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의 관할로서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일랜드 국세청에서 사용하지 못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환급의 형태로 경감해주는 방식을 도입하였음

나. 외국 자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공제제도 도입

■ 새로 도입된 외국납부세액 미공제액에 대한 환급은 외국 지점에서의 세액납부가 과세목적상의 수입인식 시기의 차이로 인해서 아일랜드 내에서 인정되지 않을 때만 가능함
- 즉, 기타 다른 이유의 수입인식 차이로 인한 것은 환급이 금지됨
  - 예를 들어 두 관할의 세율 차이로 인한 미공제액과 한 관할에서는 손금산입이 되지만 다른 관할에서는 손금산입이 금지되거나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미공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은 환급 대상이 되지 않음

■ 수입시기 인식의 차이로 인한 외국납부세액 미공제액이 판별되면 미공제액의 87.5%를 이전 과세기간에

2) http://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global/Documents/Tax/dtt_tax_world taxadvisor_140725.pdf

대응해서 환급해 줌(소급공제 형식)

- 이 방식으로 인해서 전기에 외국 지점의 이익을 계상함으로써 과세된 법인세에 대한 공제가 적용됨

■ 환급은 관련 환급 대상일이 포함되는 회계기간으로부터 4년 이내에 IRC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음

- 새로운 제도는 결과적으로 이전 기간에 납부하였던 법인세 환급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임

■ 남아 있는 미공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이 가능하며 해외지점 이익에 대응하는 아일랜드 법인세에 대한 공제의 형태로 다음 회계기간으로 이월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성열 회계사〉

3. 호주-과소자본세제 및 국외배당소득면제세제 변경 법안 의회 제출[3)]

■ 호주 재무장관은 2014년 7월 17일 과소자본세제 및 국외배당소득면제세제 변경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 이 법안은 2013년 5월 14일 연방예산안에서 최초 공개되었으며, 2014년 5월 공개 초안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짐
- 과소자본세제와 관련된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국외배당소득면제는 국왕의 재가(Royal Assent)가 이루어진 날부터 적용할 예정

■ 과소자본세제는 개별기업 적용 부채비율 및 전 세계 부채비율의 가중비율 하향조정, 적용이 배제되는 금융비용한도 상향조정, 국내투자에도 전세계 부채비율의 적용, 공정 부채비율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강화함
  - 일반기업의 경우 기존 부채비율을 3:1에서 1.5:1로, 수신기능이 없는 금융기관(non-bank financial entities)의 경우 부채비율을 20:1에서 15:1로 변경
  - 수신기능이 있는 금융기관(authorised deposit-taking institution)은 위험가중자본비율을 4%에서 6%로 변경
  - 일반기업의 국외투자 시 개별기업 과소자본세제 대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전세계 자산 대비 부채비율에 120%를 적용하던 것을 100%로 조정
- 과소자본세제 적용 제외 범위를 이자비용 등이 기존 25만호주달러 이하에서 200만호주달러로 상향조정함
- 기존에 국내투자에 대해서 전세계 부채비율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국외투자와 동일하게 적용 가능함
- 공정부채평가(arm's length debt test)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조세위원회(Board of Taxation)는 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까지 정부에 결과 보고가 이루어질 것임[4)]

■ 지분율 10% 이상 보유 시 적용되는 국외배당소득면제 규정을 보다 실질에 부합시키기 위해 「1997 소득

3) *Tax and Superannuation Laws Amendment*(2014 Measures No. 4) Bill 2014: A Bill for an Act to amend the law relating to taxation, superannuation and excise, and for other purposes, The 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House of Representatives & Explanatory Memorandum (circulated by the authority of the Treasurer, the Hon J. B. Hockey MP).

4) Ernst & Young, *Australian Tax Bills affect international financing and structuring*, Global Tax Alert, 18 July 2014, p.2.

세과세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을 개정함

- 호주 부채/자본 구분규정에서 부채로 분류되는 지분투자의 배당에 대해 소득면제를 적용하지 않음
- 세무상 자본으로 분류되는 비지분금융상품에 대해 소득면제 적용
  - "의결권(voting interest)에 따라 수령하는 국외배당을 면제"에서 "지분이익(equity interest)에 따라 수령하는 국외지분 배분액(equity distribution)"으로 조문을 개정
- 적용범위를 회사(company)에서 상장신탁, 집합투자증권, 유한회사 등에 적용하고 중간(interposed) 신탁이나 파트너십을 통해 수취한 간접 배당에도 적용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4. 인도-2014-15 예산 공개[5)]

■ 인도 재무장관은 2014년 7월 10일 의회에서 2014-15 예산(union budget)을 공개함

- 이 예산은 올해 5월 총선에서 집권한 국민민주연합(National Democratic Alliance) 정부의 첫 예산 편성임
  - 예산에서는 경제, 교육, 산업, 사회간접자본, 자본시장 및 금융부문, 사회안전망, 문화 및 관광 등과 더불어 세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재무장관은 연설에서 2014-15 예산은 낮은 인플레이션과 동시에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통해 3~4년 내에 7~8%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밝힘

가. 직접세

■ 소득세의 면세소득 수준 및 공제한도 등을 조정함

- 개인에 대한 면세소득 수준을 60세 미만의 경우 20만루피에서 25만루피로, 60세 이상의 경우 25만루피에서 30만루피로 상향조정
-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법 80C」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하는 투자한도를 10만루피에서 15만루피로 상향조정
- 자가주택의 구입 또는 건설 후 3년 동안 소요된 차입금 이자에 대한 연간 공제액 한도액을 15만루피에서 20만루피로 상향조정

■ 도관으로 간주하는 신탁의 지정, 각종 투자에 따른 공제 등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를 개정함

- 경제를 활성화하고 젊은 세대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SEBI)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간접자본투자신탁과 부동산신탁을 도관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지 않음
- 2017년 3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 2억 5천만루피 이상을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금액의 15%를 공제해 줌
- 철광석 운송을 위한 슬러리 관로와 반도체 웨이퍼제작의 두 산업의 투자금액을 공제함
  - 취득 시부터 8년 이상을 사용하는 자산에 공제를 적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소득에 가

5) Minister of Finance, "Budget 2014-2015 Speech of Arun Jaitley," July 10, 2014. The Finance (No. 2) Bill, 2014.

산함[6)]

- 일몰기간이 다가오는 전력산업에 대한 감세기간(tax holiday)을 2017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기타 자본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특례세율의 적용범위 등을 개정함

- SEBI의 규정에 따른 국외기관투자자(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FII)의 증권거래에서의 소득은 자본소득으로 간주함
- 국내기업의 외화차입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채권에 대해서만 이자지급액의 5%인 원천징수 특례세율(concessional rate)을 모든 외화채권에 적용하며, 외화차입금에 대해서도 2017년 7월 1일까지 적용
- 지분을 주로 투자하는 기구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장기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적용 보유기간을 12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함
  - 현재 은행의 직접투자나 기타 채무증권에 투자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조세재정(tax arbitrage) 거래가 발생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배당배분세(Dividend Distribution Tax: DDT)의 대상 금액을 세금 차감액에서 총액으로 조정함
  - 현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시에는 총배당금액으로, 기업에 대한 DDT에 대해서는 세금 차감액으로 적용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표 1〉 배당배분세(DDT) 과세 비교

상황	금액	DDT
DDT 과세 전 배당지급액	100	
DDT 차감 후 배당지급액(개정 전)	85.47	14.526[1)]
DDT 차감 후 배당지급액(개정 후)	83.00	16.995[2)]
주주가 수령하는 배당금액의 변동	2.47[3) 4)]	

주: 1) 85.47×16.995%(세율)=14.526
2) 100×16.995%(세율)=16.995
3) 85.47−83.00=2.47
4) 결과적으로 주주는 배당수취액이 이전보다 2.47% 줄어들게 됨
자료: Price Waterhouse Coopers, *Union Budget 2014−Stepping on the Accelerator*, p.23.

■ 이전가격의 문제에 대응하며 납세자와의 소송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전합의절차(Advance Pricing Agreement), 정상가격 등과 관련된 개정을 제시함

- APA 시 미래 5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과거 4년간도 소급적용
- 공정가격의 범위에 대한 개념을 도입
- 공정가격을 결정하는 정보 이용 시 현재 단년도에서 다년도 정보 사용

■ 재무장관은 연설에서 직접세의 개정으로 인해 약 2,220억루피의 세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나. 간접세

■ 간접세는 관세, 물품세, 서비스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국내 제조업, 화학 및 석유화학의 활성화,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따른 전력자립도의 유지, 역관세

6) Price Waterhouse Coopers, "Union Budget 2014−Stepping on the Accelerator," p.23.

(inverted duty)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 관세율 등을 개정함

〈표 2〉 주요 품목의 관세율

(단위: %)

품목	개정 전 관세율	개정 후 관세율
프로판, 에탄, 에틸렌 등	5.0	2.5
원유나프탈렌	10.0	5.0
지방산, 팜원유스테아린 등	7.5	5.0
점결탄	–	2.5
스테인리스철강플랫제품	5.0	7.5
콜타르피치	10.0	5.0
폐전지 및 전지고철	10.0	5.0
반가공 다이아몬드	–	2.5
브라운관	10.0	–

자료: Ernst & Young, *Budget 2014: Highlights and Impact Analysis*, 10 July 2014, pp.48~49, 일부 발췌

■ 품목에 따라 물품세의 세율을 조정함
- 식량보안을 위해 식량을 생산능력을 유지하여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식량과 관련된 설비에 대한 물품세를 10%에서 6%로 인하함
- 재생에너지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등과 관련된 설비에 대해 물품세를 면제함
- 담배의 종류에 따라 기존 세율에서 11~72% 인상함

■ 궁극적으로 서비스세를 소비세로 전환할 것이므로 소비세 자체에 큰 변경을 가져오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과세범위 확대와 납세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서비스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면제항목을 조정함
  - 온라인이나 모바일 광고매출, 냉방시설을 갖춘 운송이나 신약의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 교육기관에 대한 부동산 임대를 과세범위에 포함함

■ 재무장관은 직접세의 개정으로 인해 약 753억루피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통계청, 2014년 1분기 정부채무 발표(2014.7.22.)[1)]

• 유로존(EA 18)과 EU 28개국의 GDP 대비 정부채무는 각각 93.9%와 88.0%를 기록하여 전 분기 대비 1.2%p, 0.8%p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4%p, 1.8%p 증가

– 전 분기와 비교해 19개 국가는 GDP 대비 채무비율이 증가했으며, 6개 국가는 감소, 1개 국가는 변동이 없음

– 2014년 1분기 GDP 대비 채무비율이 높은 국가는 그리스(174.1%), 이탈리아(135.6%), 포르투갈(132.9%)이며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10.0%), 불가리아(20.3%), 룩셈부르크(22.8%)임

– 전 분기 대비 GDP 대비 채무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슬로베니아(+7.0%p), 벨기에 · 포르투갈(+3.9%p)이며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는 폴란드(–7.6%p), 독일(–1.1%p), 그리스(–1.0%p)임

〈표 1〉 유로존(EA 18) 및 EU 28개국의 2014년 1분기 정부채무

(단위: 백만유로, % of GDP)

	2013 Q1	2013 Q4	2014 Q1
EA 18			
Government debt	8,792,965	8,905,797	9,055,513
	92.5	92.7	93.9
of which: Currency and deposits	247,743	248,520	254,556
	2.8	2.8	2.8
Securities other than shares	6,912,694	7,021,610	7,181,013
	78.6	78.8	79.3
Loans	1,632,529	1,635,665	1,619,944
	18.6	18.4	17.9
Memo: Intergovernmental lending in	198,925	230,906	230,905
the context of the financial crisis	2.1	2.4	2.4
EU 28			
Government debt	11,176,452	11,401,133	11,571,048
	86.2	87.2	88.0
of which: Currency and deposits	414,686	409,278	422,824
	3.7	3.6	3.7
Securities other than shares	8,967,110	9,189,604	9,362,092
	80.2	80.6	80.9
Loans	1,794,656	1,802,249	1,786,131
	16.1	15.8	15.4
Memo: Intergovernmental lending in	202,861	236,349	236,371
the context of the financial crisis	1.6	1.8	1.8

자료: EU 통계청 보도자료(2014.7.22.)

1) 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PUBLIC/2-22072014-AP/EN/2-22072014-AP-EN.PDF

〈표 2〉 EU 국가별 2014년 1분기 정부채무

(단위: % of GDP, %p))

	2013 Q1	2013 Q4	2014 Q1	2013 Q1	2013 Q4
벨 기 에	105.9	101.2	105.1	−0.9	3.9
불 가 리 아	18.0	18.9	20.3	2.3	1.4
체 코	47.8	46.0	45.6	−2.2	−0.4
덴 마 크	44.4	44.6	44.3	−0.1	−0.3
독 일	80.5	78.4	77.3	−3.2	−1.1
에 스 토 니 아	9.7	10.0	10.0	0.3	0.0
아 일 랜 드	–	–	–	–	–
그 리 스	160.6	175.1	174.1	13.5	−1.0
스 페 인	90.9	93.9	96.8	6.7	2.9
프 랑 스	93.4	94.7	96.6	3.2	1.9
크 로 아 티 아	58.2	67.4	68.0	9.9	0.6
이 탈 리 아	130.2	132.6	135.6	5.4	3.0
키 프 로 스	87.6	111.7	112.2	24.6	0.5
라 트 비 아	39.6	38.1	38.2	−1.4	0.2
리 투 아 니 아	40.7	39.4	40.3	−0.4	0.9
룩 셈 부 르 크	23.3	23.1	22.8	−0.5	−0.3
헝 가 리	82.8	79.3	84.3	1.5	5.0
말 타	74.4	72.6	75.3	0.9	2.7
네 덜 란 드	–	–	–	–	–
오 스 트 리 아	75.5	74.5	75.1	−0.4	0.6
폴 란 드	57.2	57.1	49.5	−7.7	−7.6
포 르 투 갈	127.4	128.9	132.9	5.4	3.9
루 마 니 아	38.7	38.4	39.0	0.3	0.6
슬 로 베 니 아	54.8	71.7	78.7	23.9	7.0
슬 로 바 키 아	55.4	55.4	58.4	3.0	3.0
핀 란 드	54.9	57.0	58.6	3.6	1.6
스 웨 덴	40.5	40.3	40.4	−0.1	0.1
영 국	88.6	90.6	91.1	2.5	0.5

자료: EU 통계청 보도자료(2014.7.22.)

■ EU 통계청, 2014년 1분기 계절조정된 재정수지 발표(2014.7.23.)[2)]

- 유로존(EA 18)과 EU 28개국의 2014년 1분기 GDP 대비 계절조정된 재정수지는 각각 −2.7%와 −1.9%를 기록
  - 전 분기 대비 재정수지는 유로존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0.1%p 변화) EU 28개국은 폴란드 연금 개혁 등 일시적인 영향으로 1.2%p 재정적자가 감소함
  - (EA 18) 2014년 1분기 총수입은 GDP 대비 46.8%, 총지출은 49.5%를 기록
  - (EU 28) 2014년 1분기 총수입은 GDP 대비 46.6%, 총지출은 48.5%를 기록

〈표 3〉 유로존(EA 18) 및 EU 28개국의 계절조정된 재정수지

	2013 Q1	2013 Q2	2013 Q3	2013 Q4	2014 Q1
EA 18					
재정수지	−3.1	−3.3	−3.0	−2.6	−2.7
총수입	46.6	46.7	46.8	46.9	46.8
총지출	49.7	50.0	49.8	49.5	49.5
EA 28					
재정수지	−3.4	−3.4	−3.4	−3.1	−1.9
총수입	45.5	46.0	45.7	45.7	46.6
총지출	48.9	49.3	49.2	48.8	48.5

자료: EU 통계청 보도자료(2014.7.23.)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연구원〉

2) 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PUBLIC/2-23072014-AP/EN/2-23072014-AP-EN.PDF

IMF

■ IMF, 우크라이나 경제개혁 프로그램[3] 1차 검토 결과 발표(2014.7.18.)[4]

- (경제전망)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동부지역 분쟁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프로그램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음
  - 경제성장률이 당초 -5%에서 -6.5%로 하향조정되고 동부지역 세수감소와 치안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우려되며, 예상을 초과하는 자본유출이 외환보유고를 압박
- (정책) 정부는 분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실행
  - 임금 및 연금 상승폭 제한, 공공부문 고용 감축, 재량지출의 엄격한 관리 등
  - 국영 에너지기업(Naftogaz)의 경영투명성 강화와 비용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을 준비
- (지원내용) 이사회 승인 후 IMF로부터 약 14억달러를 지원받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y 2014 발표(2014.7.24.)[5]

- (전망) 미국의 2014년 1분기 실적저조와 신흥국의 하향 전망 등으로 인해, 2014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4년 4월 WEO 대비 0.3%p가 하락한 3.4%로 전망
- (선진국) 일본, 독일, 스페인, 영국의 성장세가 강화되나 미국의 성장 둔화가 이를 압도하여 2014년 1.8% 성장으로 하향전망
  - (미국) 2013년 하반기 재고과잉의 조정, 혹한에 따른 국내수요 감소 등으로 2014년 1분기 실적이 감소해 2014년 1.4%로 전망되어 4월 전망 대비 1.1%p 급락
  - (유럽) 2014년 1.1%, 2015년 1.5%로 전망되어 4월 전망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성장세는 지역에 따라 상이
  - (일본) 예상보다 높은 1분기 실적으로 인해 2014년 성장률이 1.6%로 상승하고, 예정된 경기부양책 축소로 2015년에는 1.1% 성장할 전망
- (신흥개발국) 미국, 중국 등으로부터의 대외수요가 약화되고 투자 성장세 둔화에 따라 국내 수요도 감소하여 당초 전망보다 하향 조정
  - (중국) 중소기업 세금 감면 등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과 부동산시장위축으로 2014년 7.4% 성장이 전망되고, 2015년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정책기조 전환으로 7.1% 성장에 그칠 전망
- (하방위험) 지정학적 위험과 미국 금리상승 등이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
  - (지정학적 위험)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유가상승을 야기
  - (금리상승) 미국의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예상보

3) 2014년 4월, IMF는 우크라이나에 2년간 약 170억달러의 대기성 차관(Stand-By Arrangement)을 지원하기로 합의. 대기성 차관은 단기 국제수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MF의 대출제도로, IMF는 민간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3~5년 만기의 자금을 주로 1~2년간 지원하며, 이를 위해 해당국가는 IMF의 경제정책 조정에 합의해야 함

4) IMF: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4/pr14351.htm

5) IMF: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4/update/02/index.htm;
http://www.imf.org/external/pubs/ft/survey/so/2014/NEW072414A.htm

다 장기 금리가 급격히 높아져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우려

– 일부 유럽국가의 장기 경기 침체와 신흥국의 국내수요약세와 대외취약성 등도 주의

• (정책제언) 2014년 1분기 세계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실제 · 잠재 성장을 높이는 것이 우선순위

– (선진국) 수용적 통화정책이 지속되어야 하고, 단기 회복과 장기 성장을 지원하는 재정 조정의 조화가 필요하며, 금융 규제 개혁이 완료되어야 함

– (신흥개발국) 기초 여건에 따른 환율변동을 용인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해야하며 정책 신뢰성 향상 노력이 필요

– 선진국과 신흥개발국 모두, 잠재성장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구조개혁이 시급

〈표 4〉 세계 경제 전망[1)]

(단위: %)

	실제치		전망치		4월 전망 대비 차이[2)]	
	2012	2013	2014	2015	2014	2015
World Output	3.5	3.2	3.4	4.0	−0.3	0.0
Advanced Economies	1.4	1.3	1.8	2.4	−0.4	0.1
United States	2.8	1.9	1.7	3.0	−1.1	0.1
Euro Area	−0.7	−0.4	1.1	1.5	0.0	0.1
Germany	0.9	0.5	1.9	1.7	0.2	0.1
France	0.3	0.3	0.7	1.4	−0.3	−0.1
Italy	−2.4	−1.9	0.3	1.1	−0.3	0.0
Spain	−1.6	−1.2	1.2	1.6	0.3	0.6
Japan	1.4	1.5	1.6	1.1	0.3	0.1
United Kingdom	0.3	1.7	3.2	2.7	0.4	0.2
Canada	1.7	2.0	2.2	2.4	−0.1	0.0
Other Advanced Economies	2.0	2.3	3.0	3.2	0.0	0.0

〈표 4〉의 계속

(단위: %)

	실제치		전망치		4월 전망 대비 차이[2)]	
	2012	2013	2014	2015	2014	2015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5.1	4.7	4.6	5.2	−0.2	−0.1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3.4	2.2	0.9	2.1	−1.0	−1.1
Russia	3.4	1.3	0.2	1.0	−1.1	−1.3
Excluding Russia	3.6	4.2	2.4	4.4	−0.6	−0.6
Emerging and Developing Asia	6.7	6.6	6.4	6.7	−0.2	−0.1
China	7.7	7.7	7.4	7.1	−0.2	−0.2
India[3)]	4.7	5.0	5.4	6.4	0.0	0.0
ASEAN−5[4)]	6.2	5.2	4.6	5.6	−0.4	0.2
Emerging and Developing Europe	1.4	2.8	2.8	2.9	0.4	0.0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9	2.6	2.0	2.6	−0.5	−0.3
Brazil	1.0	2.5	1.3	2.0	−0.6	−0.6
Mexico	4.0	1.1	2.4	3.5	−0.6	0.0
Middle East, North Africa, Afghanistan and Pakistan	4.9	2.5	3.1	4.8	−0.2	0.2
Sub−Saharan Africa	5.1	5.4	5.4	5.8	0.0	0.2
World Growth Based on Market Exchange Rates	2.6	2.4	2.7	3.3	−0.3	0.0
World Trade Volume (goods and services)	2.8	3.1	4.0	5.3	−0.3	0.0
Imports						
Advanced Economies	1.1	1.4	3.5	4.6	0.0	0.1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5.7	5.7	4.7	6.4	−0.3	0.1
Commodity Prices(U.S. dollars)						
Oil[5)]	1.0	−0.9	0.1	−4.3	0.0	1.7
Nonfuel	−10.0	−1.2	−1.7	−3.6	1.8	0.4
Consumer Prices						
Advanced Economies	2.0	1.4	1.6	1.7	0.1	0.1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6.1	5.9	5.4	5.3	−0.2	−0.1

〈표 4〉의 계속

(단위: %)

	실제치		전망치		4월 전망 대비 차이[2]	
	2012	2013	2014	2015	2014	2015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On U.S. Dollar Deposits (6 month)	0.7	0.4	0.3	0.8	0.0	0.0
On Euro Deposits (3 month)	0.6	0.2	0.2	0.2	0.0	−0.1
On Japanese Yen Deposits(6 month)	0.3	0.2	0.2	0.2	0.0	0.0

주: 1.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은 2014년 5월 5일부터 6월 2일까지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간주. 알파벳순으로 나열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경제규모에 근거하여 정렬
1) 세계 및 지역 경제성장률 수치는 2011년 기준 신 구매력평가(PPP) 가중치에 기초하였으며, 4월 WEO의 수치와 비교할 수 없음
2) 개정된 PPP 가중치로 집계한 2014년 4월 국가 기준 비교. 7월 전망에 우크라이나 전망이 포함되었으나 4월 전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에서 제외
3) 인도의 실적치, 전망치 데이터는 회계 연도 기준이며 경제성장률은 시장가격 GDP 기준임. 요소 비용 기준 GDP에 대응하는 값은 FY2012/13~FY2015/16 각각 4.5, 4.7, 5.4, 6.4%
4)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5) 영국 브렌트(Brent), 두바이(Dubai Fateh), 미 서부텍사스 중질유(Intermediate crude oil)의 단순평균가격. 2013년 원유의 평균가격은 배럴당 104.07달러, 선물시장에 기초한 가격은 2014년 104.14달러, 2015년은 99.62달러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y 2014, Table 1.

■ 트로이카, 키프로스 경제조정프로그램[6] 5차 검토 결과 발표(2014.7.25.)[7]

- (경제전망) 지난 4차 검토에서의 전망과 크게 달라지지 않음
  - 경제성장률은 2014년 −4.2%, 2015년 0.4%로 전망되며, 실업률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
  - 건전한 예산 집행의 결과로 2014년 상반기 재정목표를 여유롭게 달성
- (정책제언) 4차 검토 결과와 유사하게 부실채권 감소, 구조개혁 등을 권고
  - 부실채권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신용회복,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 역할임
  - 금융부문은 구조조정을 계속 이어가야 하고, 당국의 감독 · 규제 강화와 자금세탁방지 조치가 필요
  - 세입관리 개혁, 탈세 방지 조치, 적시의 민영화 계획 등이 필요
- (지원내용) 9월 말 이사회 승인 후 ESM과 IMF로부터 각각 3억 5천만유로, 8,600만유로를 지원받게 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장준희 연구원〉

OECD

■ OECD, 2014년 1분기 고용률 발표(2014.7.16.)[8]

- OECD 국가의 2014년 1분기 고용률은 65.6%로 2013년 4분기 대비 0.2%p 증가
  - 고용률은 2013년 1분기 이후 연속 상승하고 있으나 2008년 2분기(위기 이전) 대비 1.0%p 낮은 수준
- OECD 국가의 연령그룹별 고용률 격차는 지속되고 있지만, 주요국의 고용률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임
  - 2013년 1분기 주요국의 고용률은 미국 67.8%, 영국 71.6%, 일본 72.4%, 한국 65.4%로 대부분 소폭 상승한 반면 캐나다(72.4 → 72.3%)의 경우 직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
  - 연령그룹별 고용률은 모두 직전 분기 대비 상승하였고 특히, 노령(55세~64세) 고용률의 경우 전

6) 2013년 3월, 트로이카(IMF, EU, ECB)는 키프로스에 2016년까지 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합의
7) IMF: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4/pr14363.htm
8) http://www.oecd.org/newsroom/employment-situation-first-quarter-2014-oecd.htm

년 동기 대비 0.9%p 증가한 56.9%로 나타남

[그림 1] OECD 국가의 분기별 고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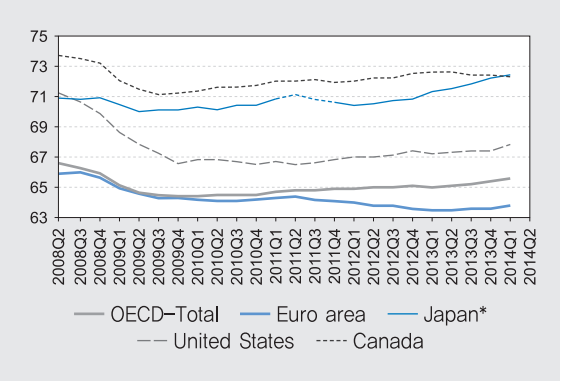

주: 일본의 2011년 1분기 및 3분기 통계 없음. 계절 조정함
자료: OECD, Quarterly Employment Situation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신아 연구원〉

호주

1. 기타

■ 탄소세 폐지법안, 두 번의 부결 끝에 상원 통과(2014.7.17.)[9]

• (배경)[10] 2013년 9월 5일 자유연립당은 탄소세 및 광산세 폐지에 따른 예산효과 추계를 발표하고, 이를 애봇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추진

– 예산효과 추계에서 탄소세 폐지로 4년간 약 60억 호주달러의 세수감소(순효과)를 예측한 바 있음

– 한편, 탄소세 유지 시에는 부수적인 경제비용이 발생하고 비용 대비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표 5〉 탄소세 · 광산세 폐지에 따른 예산효과

(단위: 백만호주달러)

	2013−14	2014−15	2015−16	2016−17	합계
탄소세 폐지 순효과	179	91	−2,240	−4,079	−6,048
탄소세 세수 감소	–	−2,245	−4,530	−6,744	−13,519
탄소세 관련 지출 절감	179	2,336	2,290	2,666	7,471
광산세 폐지 순효과	1,884	4,325	4,430	4,032	14,670
광산세 세수 감소	–	−800	−1,100	−1800	−3,700
광산세 관련 지출 절감	1,884	5,125	5,530	5,832	18,370

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p.136, 〈표 2-II-12〉 재인용
자료: Fiscal Budget Impact of Coalition Policies

• (경과) 탄소세 폐지법안은 2013년 11월 13일 하원 첫 상정 이후 상원에서 두 번 부결(2014년 3월 20일, 2014년 7월 10일), 수정법안* 상정 끝에 2014년 7월 17일 최종적으로 상원 통과

* 탄소세 폐지로 인한 관련 업체들의 비용절감액을 전액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주도록 보장

• 애봇 총리는 금번 탄소세 폐지로 매년 가구당 평균 550호주달러가 절감되고, 기업은 비용부담이 감소하는 등 매년 90억호주달러의 조세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

– 또한, 조세부담 감소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

• 한편, 광산세 폐지법안은 노동당의 반대 속에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지출 절감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음

– 이는 학자녀보너스, 퇴직연금보조금 및 저소득 지원 등이 광산세로 충당되고 있어 폐지 시 관련 지출이 삭감 또는 폐지되기 때문

9) 연방총리 홈페이지 Media 2014.7.17.(http://www.pm.gov.au/media/2014-07-17/government-delivers-commitment-abolish-carbon-tax)
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p.136.

■ 법무부, '재난방재형 호주(Disaster Resilient Australia)' 건설을 돕기 위해 370만호주달러 규모의 교부금 계획 발표(2014.7.28.)[11)]

• 금번 교부금은 자연재해와 비상사태의 예방 및 대처와 관련해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것으로, 연방정부는 19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기금을 조성할 계획

– 새로운 '화재 위험 등급제(Fire Danger Rating System)'의 세부사항 및 요구사항 개발을 위해 45만호주달러 배정

– '국가적 홍수 위험 정보 프로젝트(National Flood Risk Information Project)' 홈페이지 구축과 연구지원에 26만호주달러 배정

• 19개 주요 프로젝트는 법무부 주관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주요사항을 관리하는 '국가적 비상사태 관리 프로젝트(NEMP)'*라는 상위 프로그램하에서 시행

*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Projects: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재난 발생시 위기관리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은숙 연구원〉

캐나다

1. 기타

■ 재무부, 2014년 4~5월 "Fiscal Monitor" 발표 (2014.7.25.)

• FY2014-15 중 4~5월 재정수지는 △11억캐나다달러로 이는 2013년 4~5월 대비(△27억캐나다달러) 약 16억캐나다달러 증가한 수치

– (수입) 2014년 4~5월 수입은 2013년 4~5월 대비 16억캐나다달러 증가한 435억캐나다달러

☞ 이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증가에 기인하며, 특히 법인세의 경우 2013년 4~5월 대비 12.1% 증가함

– (프로그램지출) 2014년 4~5월 프로그램지출은 2013년 4~5월 대비 약 2억캐나다달러 증가한 395억캐나다달러

– (공공채무비용) 2014년 4~5월 공공채무비용은 2013년 4~5월 대비 약 1.7억캐나다달러 감소한 52억캐나다달러

– (재정수지) 2014년 5월 재정수지는 약 2.6억캐나다달러로 전월(약 △14억캐나다달러) 대비 약 16.8억캐나다달러 증가

〈표 6〉 2014년 4~5월 Fiscal Monitor 주요 결과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4월		5월		4~5월	
		2013	2014	2013	2014	2013-14	2014-15
수입		22,507	21,586	19,383	21,916	41,890	43,502
지출	프로그램지출	19,936	20,364	19,298	19,086	39,234	39,450
	공공채무비용	2,854	2,636	2,512	2,563	5,366	5,199
재정수지		△283	△1,414	△2,427	267	△2,710	△1,147

자료: 캐나다 재무부, "The Fiscal Monitor," April and May 2014.

■ 캐나다 정부, 입양비용 세액공제(Adoption Expense Tax Credit) 한도 증액 (2014.7.28.)

• Economic Action Plan 2014에 따라 기존 입양비용 세액공제 최대 한도액을 아동 1인당 11,774캐나

11) 연법무부장관 홈페이지 Newsroom 2014.7.28.
(http://www.ministerjustice.gov.au/Mediareleases/Pages/2014/ThirdQuarter/28July201437milliontohelpbuildadisasterresilientAustralia.aspx)

다달러에서 1만 5천캐나다달러로 증액

– 현재 입양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하며, 2015년 이후에는 2014년 기준(1만 5천캐나다달러)으로 물가수준과 연동하여 한도액 조정

* 이는 FY2014–15 예산안의 낮은 세금 정책 중 하나

〈자료 수집 및 정리: 서주영 연구원〉

프랑스

1. 기타

■ 프랑스 상반기 예산집행 결과 발표(2014.8.8.)[12]

• 프랑스 통계청은 상반기 예산집행 결과를 발표

– (재정수지) 2014년 상반기 재정적자는 594억유로로 2013년 동기간(593억유로)과 유사한 수준

– (수입 및 지출) 지출은 1,944억유로로 2013년 동기간 대비 19억유로(0.9%) 감소했으며, 수입은 1,516억유로로 2013년 동기간 대비 11억유로(0.7%) 감소

〈표 7〉 2014년도 상반기 예산집행실적

(단위: 백만유로)

	2012 (연간)	2013 (연간)	상반기		
			2012	2013	2014
일반회계 재정수지	−88,156	−75,429	−39,897	−43,552	−42,782
재정지출	374,171	376,669	185,214	196,206	194,351
재정수입	286,014	301,240	145,318	152,654	151,569
특별회계 재정수지	1,006	561	−16,782	−15,762	−16,623
총재정수지	−87,150	−74,868	−56,679	−59,314	−59,405

자료: 프랑스 통계청, *La situation du budget de l'État*, 2014.8.8.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진아 연구원〉

독일

1. 예산 · 결산 등

■ 독일 재무부, FY2014 2분기 예산집행 결과 발표(2014.7.21.)[13]

• (재정수지) 2014년 6월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159억유로로 전년 동기(184억유로) 대비 감소

– (재정지출) 2014년 2분기까지 1만 5천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억유로(0.4%) 감소

– (재정수입) 2014년 2분기까지 1,340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8억유로(1.4%) 증가

• (신규차입) 2014년 6월 기준, 채무 상환액은 약 7억유로

12) 정부포털, http://www.gouvernement.fr/gouvernement/pour-un-nouveau-modele-energetique-francais

13) 원문: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Service/Publications/Monthly_Report/Key_Figures/2014-07-federal-budget.html
발표자료: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Monatsberichte/2014/07/Downloads/monatsbericht_2014_07_english.pdf?__blob=publicationFile&v=4

〈표 8〉 FY2014 2분기 예산 집행 결과

(단위: 백만유로)

	2014(추정)	2014(1~6월)	2013(1~6월)
재정지출	296,500	150,047	150,687
재정수입	289,782	134,048	132,239
(조세수입)	268,197	121,631	120,691
재정수지	△6,718	△15,973	△18,410
신규차입[1)]	6,500	△704	1,367

주: 1) (−) 채무상환, (+) 차입
자료: 독일 재무부, "Overview of federal budgetary and financial data up to and including June 2014."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선미 연구원〉

이탈리아

1. 기타

■ 이탈리아 통계청(ISTAT), 2014년 2분기 실질 GDP 잠정치 발표(2014.8.6.)[14)]

• 2014년 2분기 실질 GDP 잠정치는 전 분기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

– 농업, 산업 및 서비스의 세 가지 경제활동 주요 영역에서 하락세

– 실질 GDP 잠정치는 2013년 4분기 이후 2분기 연속 후퇴

〈표 9〉 이탈리아 분기별 실질 GDP

(단위: 백만유로, %)

	GDP (2005년기준)	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11− Ⅰ	356,621	0.1	1.4
2011− Ⅱ	357,461	0.2	1.1
2011−Ⅲ	356,706	−0.2	0.4
2011−Ⅳ	354,340	−0.7	−0.6
2012− Ⅰ	350,544	−1.1	−1.7
2012− Ⅱ	348,812	−0.5	−2.4
2012−Ⅲ	347,442	−0.4	−2.6
2012−Ⅳ	344,234	−0.9	−2.9
2013− Ⅰ	342,233	−0.6	−2.4
2013− Ⅱ	341,160	−0.3	−2.2
2013−Ⅲ	340,756	−0.1	−1.9
2013−Ⅳ	341,220	0.1	−0.9
2014− Ⅰ	340,885	−0.1	−0.4
2014− Ⅱ	340,198	−0.2	−0.3

자료: 이탈리아 통계청 보도자료

〈자료 수집 및 정리: 황보경 연구원〉

일본

1. 예산 · 결산 등

■ '2015년도 예산 개산요구의 기본방침' 각의 승인(2014.7.25.)[15)]

• 2015년도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2014년도 예산에 이어 민간수요 주도의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의 양립을 목표로 하는 신축성 있는 예산으로, 정책의 우선순위 재검토, 낭비를 철저히 배제하고 예산내용을 중점화

– (연금 · 의료) 전년도 당초 예산금액에서 자연증

14) 이탈리아 통계청(http://www.istat.it/it/archivio/130059)
15) 재무성, 「平成27年度予算の概算要求に当たっての基本的な方針について」, 2014.7.25.

가분(8,300억엔)을 가산한 범위 내에서 요구

- (지방교부세교부금) '중기재정계획' 과의 정합성에 유의하여 요구
- (의무적 경비)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금액을 요구하며, 국세(國勢)조사경비의 증가 등 특수 요인에 대해서는 가산 또는 감산
- (동일본대지진특별회계에의 세입) 기존 방침에 따라 소요액 요구
- (기타경비) 전년도 예산액의 90%(요망 기초액) 범위 내에서 요구
- '골태 방침 2014'[16], '일본재부흥전략 개정 2014'[17] 등을 바탕으로 한 모든 과제에 대해 '새로운 일본을 위한 우선과제 추진 범위'를 설정, 각 부처는 요망 기초액의 30% 범위 내에서 요구

■ 2013년도 결산 발표(2014.7.31.)[18]

- FY2013 결산 일반회계 세입결산총액은 106조 446억엔, 세출결산총액은 100조 1,888억엔 규모
- FY2013 신규 발생 잉여금은 2조 374억엔이며, 신규 발생 잉여금에서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등 재원 순잉여금, 부흥분관련 잉여금을 모두 차감한 순잉여금은 1조 3,987억엔 규모

〈표 10〉 FY2013 일반회계 결산개요 내역

(단위: 억엔)

구분	금액	참고
1. 세입결산총액(수납공제세입액)	1,060,446	
2. 세출결산총액(지출공제세출액)	1,001,888	
3. 재정법 제41조[1]의 잉여금	58,557	(1-2)
4.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개정 등의 법률 부칙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197	
5. 재계산	58,360	(3-4)
6. 5의 내용 중 2012까지 발생한 잉여금 사용 잔액	53	
7. 신규발생잉여금	58,306	(5-6)
8. 2015년도 이월세출예산 재원 순잉여금 계상 공제금액	37,931	
9. 이월세출예산 재원 공제 후 신규발생 잉여금	20,374	(7-8)
10.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등 재원 순잉여금 계상 공제금액	5,881	
11. 부흥분(2011년도 1 · 2차 추경예산) 관련 잉여금	560	
12. 잔액	13,987	(9-10-11)

주: 1) 매 회계연도에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그 익년도 세입에 이월시키는 것으로 함

자료: 재무성, 「平成25年度決算概要」, 2014.7.31.

16) 2014년 6월 24일 각의 결정된 2014년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 자세한 내용은 『2014년 상반기 재정동향』 일본편 참조

17) 아베노믹스 세 개의 화살 중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의 2014년 개정 내용

18) 재무성, 「平成25年度決算概要」, 2014.7.31.

〈표 11〉 FY2013 일반회계 결산개요(잉여금)

(단위: 억엔)

예 산(추경 후)				결 산			
세 입		세 출		세 입		세 출	
전년도잉여금	30,583	전년도 이월액	76,885	전년도 잉여금 (이월재원포함)	106,748	법률개정법 부칙에 의한 공제액	197
						내년도 이월액	37,931
						FY2012까지 발생한 잉여금 사용 잔액	53
		세출예산액	980,769			세출불용	17,834
						세입증감	2,738
						지출공제세출액	1,001,888
공채금수입	454,620	주요내역		공채금수입	434,545	주요내역	
[건설공채	70,140]	• 사회보장관계비	293,712	[건설공채	70,139]	• 사회보장관계비	292,320
[특례공채	358,370]	• 문교 및 과학진흥비	57,717	[특례공채	338,369]	• 문교 및 과학진흥비	61,614
[연금공채	26,110]			[연금공채	26,035]		
세외수입	42,026	• 국채비	218,707	세외수입	49,623	• 국채비	212,935
세 수	453,540	• 지방교부세교부금등	175,534	세 수	469,529	• 지방교부세교부금등	175,534
		• 방위관계비	48,659			• 방위관계비	47,922
주요 내역		• 공공사업관계비	63,244	주요 내역		• 공공사업관계비	79,752
• 소득세	147,850	• 기타	123,793	• 소득세	155,308	• 기타	131,809
• 소비세	106,490			• 소비세	108,293		
• 법인세	100,650			• 법인세	104,937		
[세입예산액]	980,769	[세출예산현재액] 1,057,654 (전년도 이월액 차감	980,769)	[수납공제세입액]	1,060,446	[지출공제세출액] 1,001,888 (재정법제41조 잉여금 가산	1,060,446)

자료: 재무성, 「平成25年度決算概要」, 2014.7.31.

2. 기타

■ 내각부, '중장기 경제 재정전망'[19] 발표(2014.7.25.)

• (경제)향후 10년(2013~2022년) 평균 실질성장률은 2%, 평균 명목성장률은 3%를 나타낼 전망

– 세계경제 상승추이에서 일본 경제재생을 위한 대담한 금융정책, 구조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유발하는 성장전략이 효과적으로 실현됨을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소비세율 인상 영향 제외)은 중기적으로 2%에 근접한 안정적인 추이를 나타낼 전망

• (재정)2020년도 GDP 대비 국가 · 지방 기초재정수지는 △1.8%로 흑자달성 목표를 위한 수지개선 노력 필요하며, GDP 대비 채무잔고(부흥채 제외)는 약 185.5%로, 안정적인 인하를 위한 노력 필요

– 2016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 고령화 요인 등에 의한 사회보장 세출 증가, 사회보장외 일반세출이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증가, 「부흥재원확보법」 등을 바탕으로 한 복구 · 부흥대책 실시 및 부흥특별세 실시, 부흥채 발행을 가정

– 2015년도 GDP 대비 국가 · 지방 기초재정수지(복구 · 부흥대책 경비 및 재원 금액 제외 베이스)는 △3.2%로, 재정적자 반감목표(2010년 수준의 절반, GDP 대비 △3.3%)를 달성할 전망으로 지난 1월 전망과 동일

■ 내각부, 「2014년도 연차경제재정보고」[20] 발표(2014.7.25.)

• 일본경제 · 재정을 둘러싼 과제에 대해 현황 파악 및 논점을 정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일본경제 관련 정책적 제언을 정리

– (일본경제의 미래와 리스크)소비세 인상 전 증가 수요의 감소가 줄어들고 정책효과가 실현, 완만한 회복 유지 전망

☞ 단, 중국경제의 감속, 미국 양적완화 축소의 영향,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유의하고, 소비세 인상 전 증가 수요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주의

〈표 12〉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실질 GDP 성장률	2.3	1.2	1.4	1.8	1.9	2.1	2.3	2.3	2.3	2.4	2.4
명목 GDP 성장률	1.9	3.3	2.8	3.6	3.4	3.5	3.6	3.6	3.7	3.7	3.7
소비자물가상승률	0.9	3.2	2.5	2.7	2.0	2.0	2.0	2.0	2.0	2.0	2.0
완전실업률[1]	3.9	3.5	3.5	3.4	3.3	3.3	3.2	3.2	3.3	3.3	3.3
기초재정수지(명목 GDP 대비)	△6.2	△5.1	△3.2	△2.4	△2.2	△2.1	△2.0	△1.8	△1.5	△1.3	△1.1
채무잔고(명목 GDP 대비)	192.3	192.7	192.5	190.4	189.0	187.7	186.4	185.5	184.6	183.9	183.5

주: 1) 완전실업자는 직업이 없으나 직업이 생기면 바로 취업가능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완전실업률은 노동력인구(취업자와 완전실업자의 합계)에서 완전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자료: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平成 26年 7月 25日 経済財政諮問会議提出)」, 2014.7.25.

19)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14.7.25.

20) 내각부, 「平成26年度 年次経済財政報告」, 2014.7.25.

– (디플레이션 탈출과 지속적인 임금상승을 위한 과제)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실질임금 개선이 필요

☞ 인재육성을 통한 노동의 질 향상, 고용 유동성 및 근로방식 유연성 향상

–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산업 과제)생산성 향상 및 국내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급제약을 극복, 비교우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부가가치를 창출

☞ 여성 및 고령자 능력 활용, 세계제일의 비즈니스 환경 정비, 국내외 기업에 의한 투자 촉진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은 연구원〉

스페인

1. 기타

■ 고용사회복지부 장관인 파티마 바네스(Fátima Báñez)는 25세 미만의 청년실업자 고용 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발표(2014.7.7.)[21]

• 고용문제 개선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서 높은 청년실업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청년고용 장려 정책을 시행

• 기업이 25세 미만의 청년실업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6개월 간 매월 300유로를 지급 받음

– 교육 · 훈련을 받지 않고 있는 25세 미만의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청년 실업자가 청년 고용보장 프로그램(National System of Youth Guarantee)에 등록하여 참여

■ 스페인 통계청, 2014년 2사분기 고용자 수 및 실업률 발표(2014.7.24.)[22]

• 노동시장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고, 경제회복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23]

– 고용자 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1.12% 증가하여 약 1,735만명으로 집계

– 실업자 수는 약 562만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7% 감소

– 실업률은 전년 동기 26.1%에 비하여 약 1.6%p 감소하여 24.47% 기록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연구원〉

영국

1. 기타

■ 영국 재무부, 공공지출 통계(Public Spending Statistics) 발표(2014.7.15.)[24]

• 재무부는 FY2013-14의 최초 공공지출 실적치를 포함한 FY2009-10부터 FY2013-14까지의 공공지출 실적데이터를 업데이트

– 총관리지출(Total Managed Expenditure)은 FY2013-14에 7,143억파운드(GDP 대비 43.8%)로 전년 대비 401억파운드(5.9%) 증가

– 부처별 지출한도(DEL)는 FY2013-14에 3,589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19억파운드(0.5%) 감소

21) 총리실, http://www.lamoncloa.gob.es/serviciosdeprensa/notasprensa/mempleo/Paginas/2014/070714-banez.aspx
22) 스페인 통계청, http://www.ine.es/en/inebaseDYN/epa30308/epa_inicio_en.htm
23) 총리실, http://www.lamoncloa.gob.es/serviciosdeprensa/notasprensa/mineco/Paginas/2014/240714reduccionparo.aspx
24) 영국재무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ublic-spending-statistics-release-july-2014

- FY2013-14에 10개의 공공지출 분야 중 2개 분야(오락 · 문화 · 종교 -9.2%, 공공질서 · 안전 -3.6%)만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나머지는 전년 대비 모두 증가
  ☞ 이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분야는 주택(19%), 경제(9.6%), 환경보호(7.2%) 분야

〈표 13〉 총관리지출(Total Managed Expenditure)

(단위: 백만파운드)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자원 DEL	338,015	350,838	345,788	343,376	338,915
자원 AME	266,996	284,430	298,246	312,864	327,242
공공부문 경상지출	605,010	635,268	644,034	656,240	666,157
자본 DEL	57,007	49,816	42,338	38,961	42,021
자본 AME	11,385	9,621	8,333	-21,045	6,078
공공부문 총투자[1)]	68,392	59,437	50,671	17,916	48,099
공공부문 순투자[1)]	48,393	38,653	29,046	-4,612	24,740
총관리지출(TME)[1)]	673,402	694,705	694,705	674,156	714,256
총DEL[2)]	381,179	380,145	368,857	360,831	358,882
부처별 AME	260,028	166,236	248,349	258,687	283,182
기타 AME	32,196	148,324	77,499	54,638	72,192

주: 1) This excludes the temporary effects of banks being classified to the public sector.
2) Total DEL is given by resource DEL excluding depreciation plus capital DEL.
자료: 영국 재무부, *Statistical Bulletin: Public Spending Statistics*, July 2014.

〈표 14〉 분야별 공공지출

(단위: 백만파운드)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일반공공서비스	51,841	66,650	68,512	67,353	70,000
국방	37,712	39,287	38,662	36,355	36,428
공공질서 및 안전	34,118	33,015	32,035	31,300	30,164
경제	48,679	39,888	37,503	35,607	39,030
환경보호	10,397	10,929	10,462	10,604	11,372
주택 및 지역사회 시설	16,344	13,119	10,047	9,461	11,258
의료	116,917	119,826	121,236	124,273	129,451
오락 · 문화 · 종교	13,179	12,962	12,511	12,731	11,562
교육	88,484	91,499	86,897	86,990	90,218
사회보호	223,001	230,398	239,996	250,474	251,272
EU 거래 (EU transactions)	904	3,628	2,034	4,307	5,174
총관리지출(TME)	673,402	694,705	694,705	674,156	714,256

자료: 영국 재무부, *Statistical Bulletin: Public Spending Statistics*, July 2014.

■ 영국 통계청, 2014년 2분기 공공부문 재정 현황 발표(2014.7.22.)[25)]

- 2014년 2분기 공공부문 경상재정적자(Public Sector Current Budget)는 전년 동분기 대비 91억파운드 증가한 277억파운드이며, 공공부문 순차입(Public Sector Net Borrowing)은 전년 동분기 대비 100억파운드 증가한 320억파운드
  - 2014년 6월 기준 공공부문 순부채(Public Sector Net Debt)는 1조 3,046억파운드(GDP 대비 77.3%)로 전년 동월 대비 972억파운드 증가

25) 영국 통계청, http://www.ons.gov.uk/ons/rel/psa/public-sector-finances/june-2014/index.html

〈표 15〉 공공부문 재정(Public Sector Finance)

(단위: 십억파운드[1])

	2분기			June		
	2014/15 (A)	2013/14 (B)	(A−B)	2014C)	2013(D)	(C−D)
경상재정수지	−27.7	−18.6	−9.0	−9.9	−6.5	−3.4
순투자	4.3	3.4	1.0	1.5	1.1	0.4
순차입	32.0	22.0	10.0	11.4	7.6	3.8
순부채	1,304.6	1,207.4	97.2	1,304.6	1,207.4	97.2
GDP 대비 순부채(%)	77.3	74.9	2.4	77.3	74.9	2.4

주: 1) not seasonally adjusted
자료: 영국 통계청, *Public Sector Finances*, June 2014.

■ 영국 통계청, 2014년 2분기 GDP 성장률 발표(2014.7.25.)[26]

• 2014년 2분기 GDP는 2014년 1분기 대비 0.8%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GDP 성장 기여도가 가장 큰 부문은 서비스업(0.77%p)

– 주요 산업부문별 산출량은 전 분기 대비 서비스업은 1%, 제조업은 0.4%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0.5%, 농업은 0.2% 감소

〈표 16〉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

(단위: %p)

	GDP Index (2010=100)	GDP	Agriculture	Production	Construction	Services
		(% change on previous quarter)				
2012 Q2	101.0	−0.4	−2.2	−1.0	−3.6	−0.1
2012 Q3	101.7	0.8	−0.3	0.2	−2.1	1.0
2012 Q4	101.5	−0.2	−0.2	−2.1	1.9	−0.1
2013 Q1	102.1	0.5	−4.9	0.4	−0.7	0.5
2013 Q2	102.7	0.7	2.1	0.6	1.9	0.5
2013 Q3	103.6	0.8	0.3	0.7	2.8	0.7
2013 Q4	104.3	0.7	0.2	0.4	0.5	0.7
2014 Q1	105.1	0.8	1.0	0.7	1.5	0.8
2014 Q2	106.0	0.8	−0.2	0.4	−0.5	1.0

자료: 영국 통계청, "Gross Domestic Product Preliminary Estimate–Q2 2014," 2014.7.

[그림 2] 2014년 2분기 GDP 성장 기여도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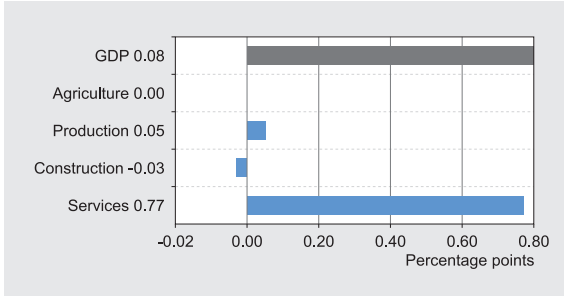

자료: 영국 통계청, "Gross Domestic Product Preliminary Estimate–Q2 2014," 2014.7.

■ 영국 10개 해안도시의 경제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정책 시행(2014.8.1.)[27]

• 10개 해안도시에 신규 사업 활성화, 겨울폭풍 피해 복구, 관광명소와 유적지의 설립을 위해 해안권 지

26) 영국 통계청, http://www.ons.gov.uk/ons/dcp171778_371964.pdf
27) 영국재무부, https://www.gov.uk/government/news/seaside-funding-success-for-10-coastal-towns

역기금(Coastal Communities Fund)[28]을 통해 850만파운드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하였으며, 1,4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 해안지역은 신사업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이바지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곳으로 영국 장기 경제계획의 중요한 부분임

• 또한, 향후 민간 및 공공 부문으로부터 추가 620만 파운드를 지원받을 예정

〈표 17〉 10개 해안도시 재정 지원 내역

(단위: 천만파운드, 개)

지역	지원내용	지원액	일자리 창출 규모
펜잰스(Penzance)	Jubilee 수영장 수리, 사회적기업 개발	1,950	38
포츠(Portsmouth)	'Victorian Arches' 재개발	1,755	105
서퍽(Suffolk)	홍수방지 시스템 구축	633	51
웰스(Wells)	Maltings 건물의 예술교육 공간으로의 용도변경	610	95
콘월(Cornwall), 데번(Devon), 도싯과 서머셋(Dorset and Somerset)	남서부 해안도로 개발	1,114	782
요크셔(Yorkshire)	야생동물 자연보호지역 시설 확장	452	14
험버사이드(Humberside)	상징적인 마태복음의 등대의 복원 및 방문자센터의 설립, 교통시설의 개발 등	498	77
헐(Hull)	유명 과일시장의 재건 및 도로, 거리가구 향상 등	800	100
랭커셔(Lancashire)	유휴 부지를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	395	11
브라이(Brighton), 노스요크셔(North Yorkshire)	새로운 유스호스텔 설립	401	76

자료: 영국 재무부, "seaside funding success for 10 coastal towns(2014.8.1.)."

■ 영국 북부지역의 '북부 경제발전소(northern economic powerhouse)' 시행 계획 발표(2014.8.5.)[29]

• (배경) 현재 북부지역의 리즈(Leeds), 리버풀(Liverpool), 맨체스터(Manchester), 뉴캐슬(Newcastle), 셰필드(Sheffield) 5개 대도시 간 교통의 미발달로 접근성이 떨어져 도시 간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상황

• (추진 계획) 향후 15년간 영국의 5개 북부도시를 상호 연결하는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북부지역에 거대경제권인 '북부 경제발전소(northern economic powerhouse)'를 형성할 계획

- HS2(High Speed 2),[30] 철도, 고속도로, 공항 등의 인프라를 확장할 예정

• (경제적 기대효과) 이번 북부 경제발전소 계획으로 북부지역은 더 생산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곳으로 성장하여 국가 GDP 성장과 세수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기업 투자와 혁신 촉진,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 달성, 일자리 기회 확대, 거래 비용의 절감과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의 이용, 사업가능 장소로서 북부지역의 비교우위 강화

〈자료 수집 및 정리: 하에스더 연구원〉

28) 「재정동향」 3월 2호 참고

29) 영국 재무부, https://www.gov.uk/government/news/northern-powerhouse-chancellor-sets-out-pathway

30) 도시 간 초고속 열차

미국

1. 기타

■ CBO, 「2014년 장기재정전망보고서」 발표(2014.7.15.)[31]

- 향후 2~3년 동안 GDP 대비 비정부 부문 소유채무가 소폭 하락한 후, 다시 현재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
- FY2015~2024에 재정적자는 총 7.6조달러에 이를 전망
  - 고령화, 의료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지출의 증가는 재정에 큰 압박
  -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던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이자지출의 증가로 이어질 것
- 재정적자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비정부부문 소유채무는 FY2039에 GDP 대비 100%까지 증가
- 기준선 전망에 따르면 FY2039까지 재정지출은 GDP 대비 26%를 기록할 전망
  - 주요 의료비용이 GDP 대비 14%까지 증가
  - 순이자지출이 GDP 대비 4.5%까지 증가
  - 사회보장관련지출, 의료프로그램, 이자지출을 제외한 비용은 GDP 대비 7%까지 하락

[그림 3] CBO, 장기재정전망 FY2014~2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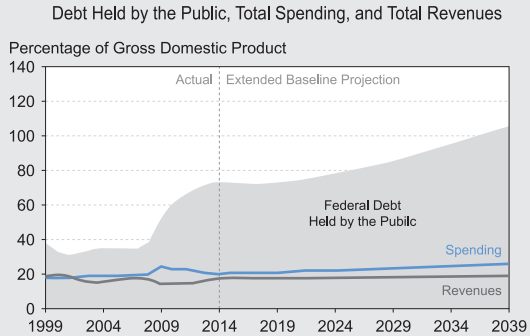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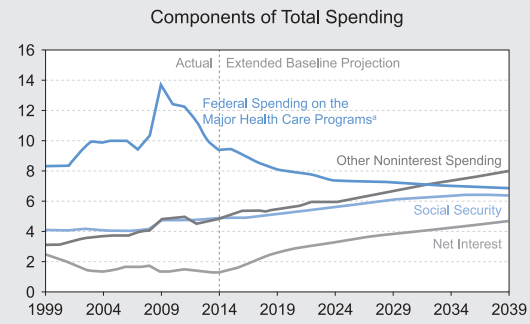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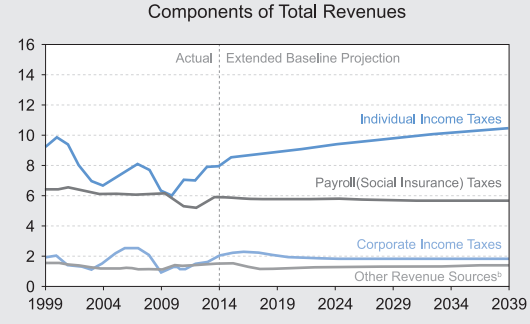

자료: *Congressional Budget Office*

31) CBO, *The 2013 Long-Term Budget Outlook*, 2014.7.15.

■ CBO, FY2015 대통령 예산안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 발표(2014.7.22.)[32]

• FY2015 대통령 예산안에 포함된 정책들은 현재의 법안에 비해 미국 GNP를 2015~2019년에 0.1~0.6%, 2020~2024년에는 0.8~2.1%를 높임

– 이민정책의 변화로 인한 인구 유입 증가로 2015년 이후 1인당 GNP는 하락할 전망

[그림 4] CBO, 장기재정전망 FY2014~2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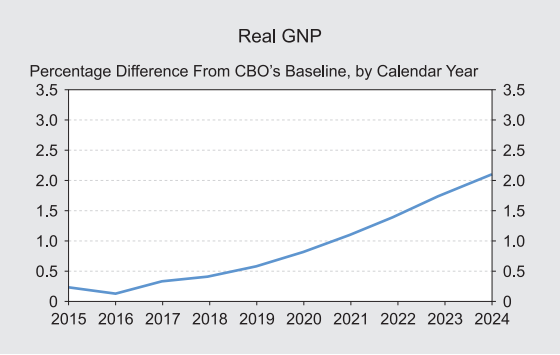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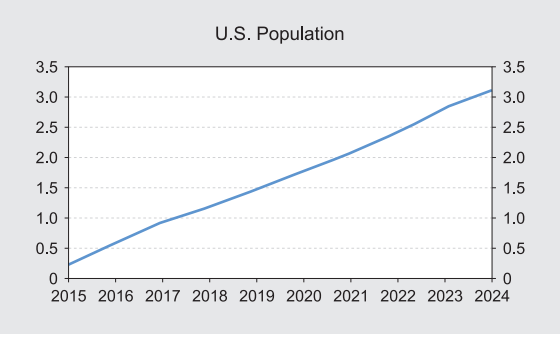

[그림 4]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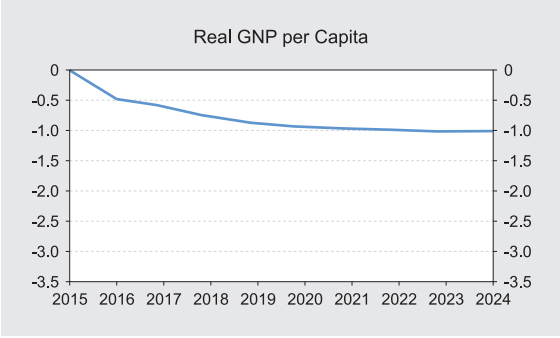

자료: *Congressional Budget Office*

• 전체적으로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이민 정책 변화로 인한 노동인구 증가로 세수 확대가 예상

– 하지만, 세율 상승으로 노동공급이 감소할 수 있고 이자율의 상승으로 이자지출이 증가될 수 있음을 지적

■ OMB, *FY2015 Mid-Session Review* 발표(2014.7.11.)[33]

• 2014년도의 수정된 재정적자 전망치는 GDP 대비 3.4%로 예산안 전망에 비해 0.3%p 하락

–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5년에 3% 이하를 기록하고 2024년까지 2.1%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

32) CBO, *The Economic Effects of the President's 2015 Budget*

33) OMB, *The FY2015 Mid-Session Review*

〈표 18〉 FY2015 예산안과 Mid-Session Review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교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FY2015 예산안	3.7	3.1	2.8	2.3	1.9	2.3	2.2	2.1	2.1	1.8	1.6
FY2015 Mid-Session Review	3.4	2.9	2.7	2.3	2.2	2.6	2.6	2.5	2.6	2.3	2.1

자료: *FY2015 Mid-Session Review*

■ 통계청, 2분기 미국 GDP 성장률 4.0% 발표(2014.7.30.)[34]

- 전년 동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이 4%를 기록하며 1분기 부진(-2.1%)를 벗어남
- 개인소비지출, 재고투자, 수출, 정부지출 등에서 전기에 비해 증가세를 보여 수입 증가를 상쇄하며 경기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

■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서를 통해 자산매입 규모 추가 축소 결정(2014.7.30.)[35]

- 2분기 경기가 반등함에 따라 월별 모기지채 매입 규모를 150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200억달러에서 150억달러로 감축해 총 100억달러 감축
  - 2013년 12월 양적완화 축소 이후 여섯 번째 테이퍼링으로, 10월에 연준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
- 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저금리기조 유지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연구원〉

주요 보고서

1. OECD,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Ageing: The Case of Finland(2014.6.3.)[36]

■ 핀란드의 고령화로 인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연금과 의료시스템 개선방안을 모색

■ 핀란드는 급격히 고령화되면서 동시에 연금지출의 증가로 공공재정에 압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노년부양비율[37]은 1970년 15% 미만, 2010년 25% 이었으며 2060년 4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또한 2050년 핀란드의 전체인구 중 80세 이상 인구비율은 12%로 2010년 5%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
- 1980년부터 2009년까지 북유럽 국가들의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의 지출변화를 살펴보면 덴마크와 스웨덴, 노르웨이는 GDP 대비 1%p가량 증가하였으나 핀란드의 경우 3.5%p 상승

34) 미국 통계청, Gross Domestic Product, 2nd quarter 2014(advance estimate); Includes historical revisions, http://www.bea.gov/newsreleases/national/gdp/2014/gdp2q14_adv.htm

35) FRB, Federal Reserve issues FOMC statement, http://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monetary/20140730a.htm

36)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the-economic-consequences-of-ageing-the-case-of-finland_5jz2qt1dtnlt-en

37) 15~64세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령인구 수

[그림 5] 노인부양비와 연금수령액의 급격한 증가율

(단위: GDP 대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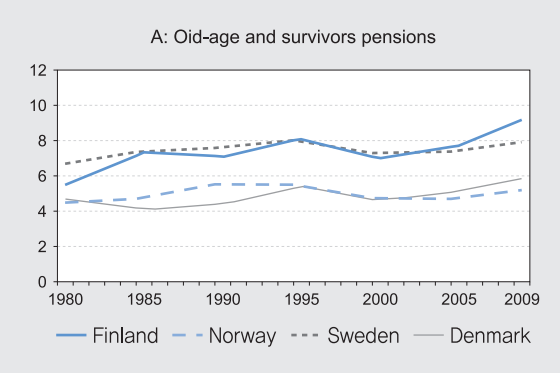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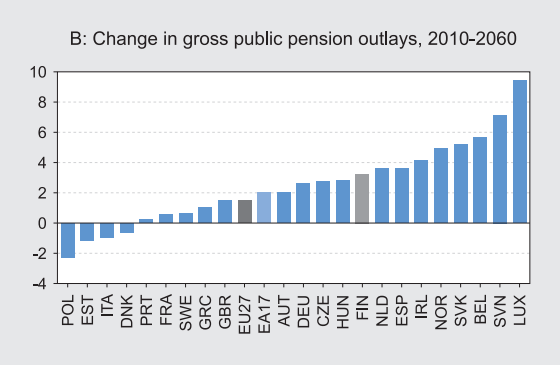

자료: OECD,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Ageing: The Case of Finland*, Figure 2.

■ 고령화로 인한 의료 및 장기요양비 증가, 노동력 감소, 고령화와 생산성의 관계 등의 문제점을 분석

• (의료 및 장기요양비 증가) 북유럽국가들의 2060년 의료 및 장기요양비는 2006~2010년 평균 대비 2.5~8.6%p 증가할 것으로 예측

– 2060년 의료비의 60% 이상을 인구의 17~27%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되어 세대 간 형평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

[그림 6] 북유럽 국가들의 공공의료 및 장기요양 지출 예측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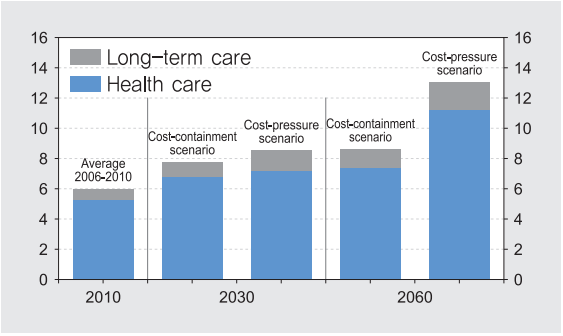

자료: OECD,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Ageing: The Case of Finland*, Figure 6.

• (노동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고령 근로자의 증가로 노동시장참여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향후 50년간 계속될 것으로 판단

– 특히 핀란드의 노동시장참여율은 1990년대 62%에서 2060년 54%로 다른 북유럽 국가의 비해 노동시장참여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판단

• (고령화와 생산성의 관계) 고령화와 생산성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가 존재하나 관계가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38)]

– 22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Adult Skills (PIAAC)을 조사한 결과, 젊은그룹과 노령그룹 간의 생산성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OECD, 2013b), 50세부터 몇 가지 정신적 및 신체적 능력이 쇠퇴하는 것으로 나타남(Skirbekk, 2003)

– 고령화와 생산성은 관계가 없으며 고령노동자의

38)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참고

경우 숙달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는 연구(OECD, 2006a)

■ 고령화 사회에 맞는 연금 및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령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연금지출의 문제해결에 합의를 보이는 가장 나은 방법은 퇴직연령을 늦추고 노동 가능한 기간을 길게 하는 것임

• 핀란드는 최근 덴마크와 같이 E-health 발전에 집중하고 있으며, 장기치료방식을 비용효율적인 방법(보호시설 → Service housing)으로 제공

–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최근 몇 년간의 환자기록을 표준화하고 전자식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만성질환관리뿐만 아니라 치료의 효율성 향상을 달성

– 2017년까지 장기보호시설에 투입되는 의료비용 약 3억유로(GDP의 0.15%)가 감소

• 고령근로자의 고용증대를 위한 노동시장 조성, 이민정책조정으로 부족한 노동인구 증가시키고 더불어 고령화를 통한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창출하도록 함

2. OECD, Changes in Family Policies and Outcomes: Is there Convergence?(2014.7.11.)[39] [40]

■ 각 국가들의 가족[41]현황 및 가족정책의 발전(가족에 대한 공공지출과 재정적 지원, 육아 휴직 등 아동 관련 휴가, 보육 등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 분석

■ OECD 국가들의 교육,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아동복지 관련 통계 등으로 가족현황에 대해 조사[42]

• (교육 및 여성고용) 교육수준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교육률 증가는 여성고용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OECD 국가들의 15~64세 여성고용률은 1990년 53.2%, 2000년 56.2%, 2010년 59.5%로 증가

– OECD 국가들의 파트타임 여성고용률도 증가하였으나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아동복지) 지난 20년간 유아사망률은 줄어들었으

〈표 19〉 고용률

(단위: %)

	OECD average			OECD standard deviation			OECD change[1]		
	1990	2000	2010	1990	2000	2010	1980–90	1990–00	2000–10
Female employment rate, aged 15–64	53.2	56.2	59.5	14.0	12.1	10.3	–	+20/24	+26/33
Incidence of part-time employment, women, aged 25–54	24.5	23.3	25.2	12.3	12.6	12.3	–	–10/19	+19/31
Incidence of part-time employment, men, aged 25–54	3.1	3.5	4.8	1.6	1.5	1.9	–	+15/19	+26/31

자료: OECD, *Changes in Family Policies and Outcomes Is there Convergence*, Table 1.1.

39) http://www.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changes-in-family-policies-and-outcomes-is-there-convergence_5jz13wllxgzt-en

40) OECD 국가의 전반적인 내용만을 요약한 것으로 각 국가별 통계자료는 보고서 원문 참고

41) Family 또는 Families는 households with dependent children로 정의

42) 1980, 1990, 2000, 2010년의 OECD 국가들의 평균, OECD 국가들의 표준편차, 일정기간동안 변화한 국가 수(OECD 국가들 중 +는 증가한 국가 –는 감소한 국가를 표시)를 분석

나 아동빈곤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가족복지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임

〈표 20〉 아동복지

(단위: %)

	OECD average			OECD standard deviation			OECD change[1]		
	1990	2000	2010	1990	2000	2010	1980–90	1990–00	2000–10
Child poverty rate	12.2	12.2	13.2	6.6	5.7	6.2	–	+16/25	+18/27
Infant mortality rate	12.9	7.5	4.9	12.6	7.0	3.9	–	–29/29	–29/29

자료: OECD, *Changes in Family Policies and Outcomes Is there Convergence*, Table 1.1.

- 2007~2008년 경제위기는 여성고용률을 감소시키고 아동빈곤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2000~2010년 OECD 평균 아동빈곤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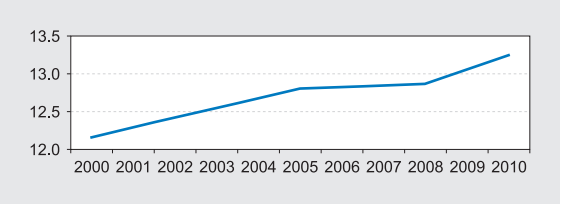

자료: OECD, *Changes in Family Policies and Outcomes Is there Convergence*, Chart 1.16.

[그림 8] 2000~2012년 OECD 평균 여성고용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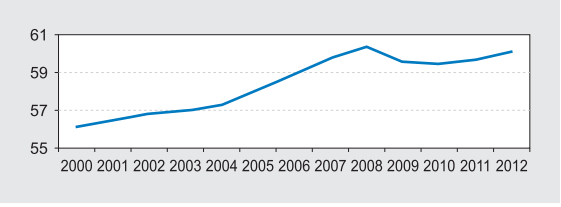

자료: OECD, *Changes in Family Policies and Outcomes Is there Convergence*, Chart 1.16.

■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을 위한 공공지출 현황, 재정적 지원형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육지원 등에 대해 분석

- (공공지출의 현황) 각 국가들은 1980년 이후 가족정책을 확대해왔으며 자녀세액공제, 아동수당, 육아휴직수당, 공식적인 보육서비스 등을 지원
  - 2010년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에 대한 평균 공공지출은 GDP 대비 2.61%로 2000년 2.08% 대비 소폭 증가
  - 지원방식은 현금, 현물급여, 세금우대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2010년 세금우대지원은 전체 공공지출의 12%에 해당하며 2000년 7% 대비 증가
  - 한국의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은 GDP 대비 1% 수준으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음

〈표 21〉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의 비중

(단위: % of GDP, %)

	OECD average		OECD standard deviation		OECD change	
	2000	2010	2000	2010	1990–00	2000–10
Spending on family benefits	2.08	2.61	0.99	1.05	–	+29/33
Share of spending as cash benefits	56	51	21	19	–	–23/33
Share of spending as in-kind benefits	37	37	17	16		+21/33
Share of spending as tax breaks	7	12	13	13	–	+16/33

자료: OECD, *Changes in Family Policies and Outcomes Is there Convergence*, Table 2.1.

[그림 9]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의 비중 (2001, 2005, 2009년)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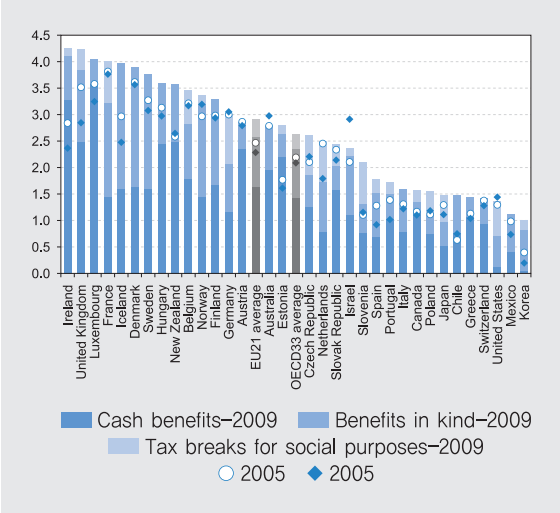

자료: OECD, *Changes in Family Policies and Outcomes Is there Convergence*, Chart 2.1.

• (재정적 지원형태) 많은 국가들이 공공지출의 비중을 0~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에 두고자 하나 여전히 초 · 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공공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보육에 대한 OECD 국가의 평균 공공지출은 2009년 0.7%로 2000년 대비 0.2%p 증가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보육에 대한 지출은 유아 교육 및 관리에 사용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여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유급)은 1970년 17.6주, 2000년 45.5주, 2010년 47.5주로 점점 증가

–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 관련 휴가가 가능해졌으며 2014년 7월 일부국가들[43]은 'father quota', 'bonus months', 'a gender equality bonus'를 도입

– 2011년 OECD 국가들의 출산휴가를 살펴보면, 영국이 52주로 가장 길고 한국의 경우 OECD 국가들의 평균 18주보다 낮은 수준

〈표 22〉 아동 관련 휴직기간

(단위: %)

	OECD average				OECD standard deviation				OECD change			
	1980	1990	2000	2010	1980	1990	2000	2010	1970–80	1980–90	1990–00	2000–10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duration of protected leave in weeks	40.9	62.5	76.0	82.3	48.6	60.3	60.9	57.4	–	+18/30	+19/30	+12/30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duration of paid leave in weeks	17.6	37.4	45.5	47.5	14.2	45.1	51.8	37.9	–	+15/30	+13/30	+14/30
Paternity leave, duration in weeks	0.1	0.1	3.4	4.7	0.3	0.4	7.4	7.7	–	+1/30	+10/30	+15/30

자료: OECD, *Changes in Family Policies and Outcomes Is there Convergence*, Table 2.1.

43)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포르투갈 등 11개 국가

[그림 10] 1970년 및 2011년 OECD 국가들의 출산휴가

(단위: wee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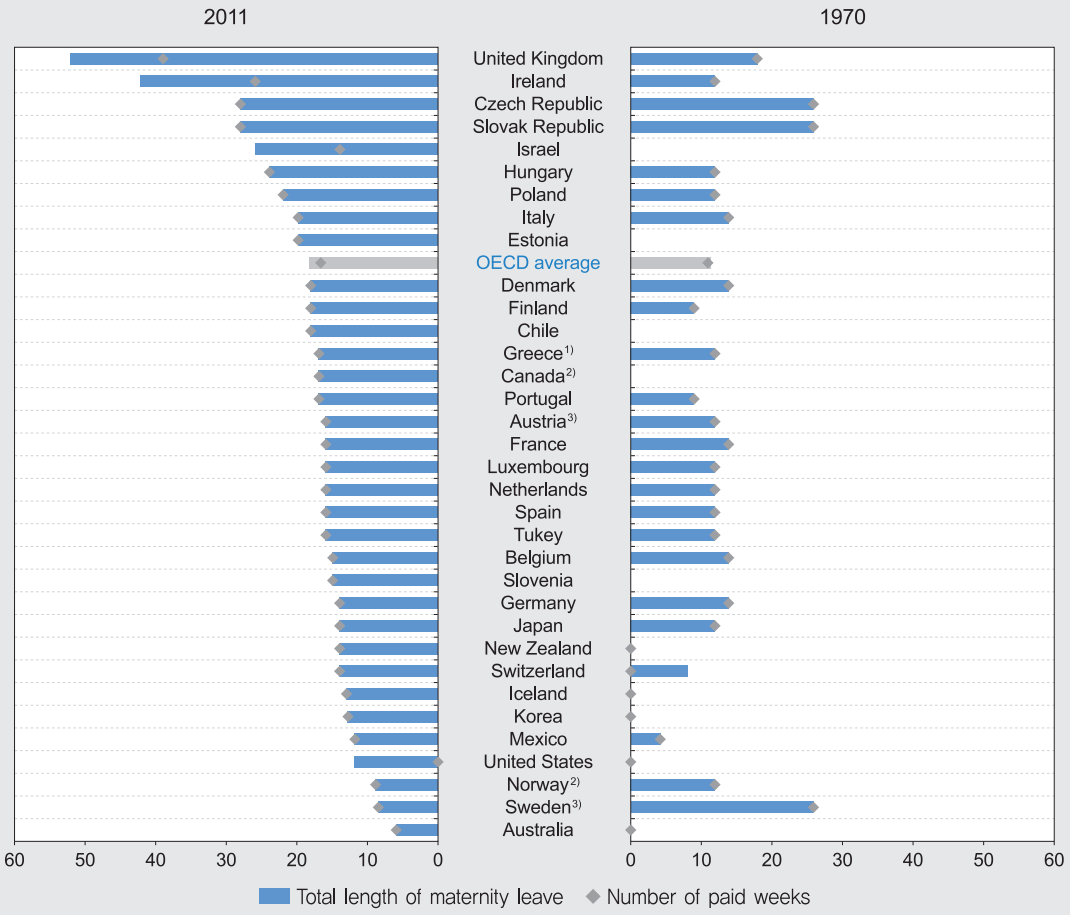

주: 1) 그리스의 경우 기본 출산휴가는 17주지만 추가적으로 6개월 동안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등 혜택을 부여
2) 캐나다의 대부분의 지역의 출산휴가는 17주이나 퀘벡주(Québec)와 서스캐처원주(Saskatchewan) 지역에서는 18주를 부여
3)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은 법적으로 출산휴가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은 parental leave로 대체하여 표기

자료: OECD, *Changes in Family Policies and Outcomes Is there Convergence*, Chart 2.5.

3. OECD, Vulnerability of Social Institutions(2014.7.8.)[44]

■ 최근 경제위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지출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연금 · 의료 · 실업보험 시스템이 가진 취약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안 등을 모색

■ 최근 경제 위기가 남긴 실업과 정부부채의 급증은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s)의 재정건전성을 장단기적으로 약화시킨 것으로 나타남

- 노령인구부양비율(old-age support ratio)[45]은 2010년 4.2에서 2050년 2.1명(OECD 평균)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위 현상은 기대수명 증가와 사망률 감소에 기인하며, BRIICS 국가의 경우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보임

[그림 11] 국가별 노령인구부양비율 추이 변화 예측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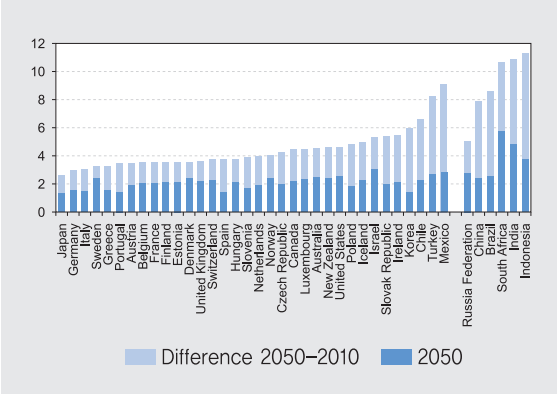

자료: OECD, *Vulnerability of Social Institutions*, Figure 2.

-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공공사회지출 및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비율이 급격히 증가([그림 12])

[그림 12] 경제위기 기간의 사회 지출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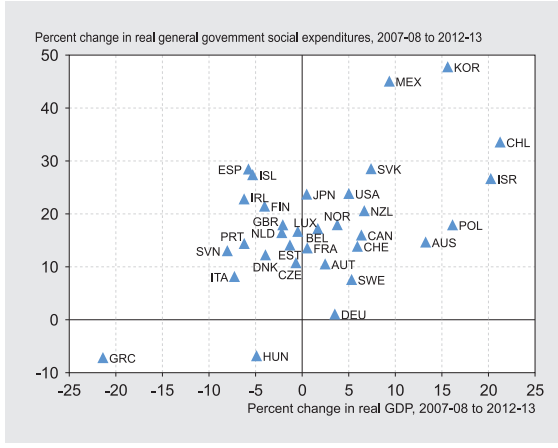

주: 사회지출은 일반정부의 사회보장현금지출을 의미함. 실업, 의료, 연금지출뿐만 아니라 가족, 주거, 질병급여 지출 등도 포함

자료: OECD, *Vulnerability of Social Institutions*, Figure 13.

■ 사회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금 · 의료 · 실업보험 시스템이 가진 취약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

- (연금)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이며, 이는 고령화와 미래 생산성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함
  - OECD 국가들의 공적연금지출은 2010년 GDP의 9%에서 2050년 GDP의 12%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6개국은 연금지출이 GDP의 1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44)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vulnerability-of-social-institutions_5jz158r4q0zn-en

45) 생산가능 인구/65세 이상 인구(노인 1명당 부양 생산인구)

- 연금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퇴직연령을 최대한 늦추고 노년층 일자리를 제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 또한, 개인연금의 커버리지를 최대한 확대시켜 고령화로 인해 빈곤노인층이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의료) 의료지출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대수명 연장, 새로운 의료 기술 발전에 따른 비용증가, 개인소득 및 GDP 변동 등을 꼽을 수 있음
- 의료지출 지속가능성과 의료서비스의 적절성(adequacy)은 trade-off 관계(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은 의료서비스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이므로 적당한 조정기제가 필요
- 경기호황기에 완충(buffer)펀드를 조성하여 불황기에 급격한 의료지출 삭감 방지, 의료서비스 공급자들 간의 경쟁 조성으로 재정건전성 및 서비스 질 향상, 개인의료보험 커버리지 확대 등을 의료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
- BRIICS 국가들의 경우 1인당 의료지출이 OECD 평균의 10~30% 수준이므로 서비스 질 및 커버리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

• (실업보험)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국가들의 실업률이 급증하였는데, 특히 이 기간 동안 청년층 빈곤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실업보험은 급여수준과 지급기간이 길고 커버리지가 넓을수록 오히려 일할 욕구가 감소하면서 사회지출이 증가하게 되며, 반대로 짧은 지급기간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노동시장의 위험분담이라는 실업보험의 제기능을 상실하게 됨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 ALMP)을 통한 실업급여 지출 감소, 일터로의 복귀를 통한 정부수입 증대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
- 실업급여의 기간이 짧고 지원이 제한적인 국가들이 경제위기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실업급여의 기간과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유용한 방안
- BRIICS 국가들의 경우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빈곤으로부터 취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 정착 및 커버리지 확대를 통한 제도권으로의 편입이 시급한 과제임

4. IMF, Adjustment in Euro Area Deficit Countries: Progress, Challenges, and Policies(2014.7.14.)[46]

■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외부적 불균형이 있던 모든 국가들이 심각한 금융 스트레스를 경험

• 유로 지역 내 국가 간 불균형을 초래한 다양한 요인이 존재
- 환율 리스크와 다른 거래비용이 사라지며 유로지역의 소득수준이 수렴되게 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국가마다 상이한 모습을 보임
- 프랑스와 독일 같은 유럽 주요 국가들로부터 유입된 자본이 재정적자를 기록한 국가들에 실물자산 붐으로 이어짐
- 많은 적자 국가에서 이전(transfer)이 감소하고 임금수준이 상승해 경상수지 적자 악화
- 화폐가치 절상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낮은 생산성과 구조적 경직성으로 인해 유로 지역 불균형

46) http://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1716

이 초래됨
  - EMU의 약한 금융 감독, 수요관리 등의 문제는 외부적 불균형을 악화시킴
- 2009년 그리스에서 시작해 2010년 아일랜드, 2011년 포르투갈로 번져나간 금융위기로 인해 해당 국가들은 대규모 적자와 자본시장 접근성을 잃음
  - 이후 이탈리아와 스페인에도 시장에 대한 우려가 퍼져나감
- 위기 발발 이후로 유로 지역 내 국가 간 자본유입이 중단

■ (불균형 조정 메커니즘) 수출 경쟁력 강화, 내부적 밸런스 조정, 국가 간 노동 이동 강화, 안정적 조정을 위한 중앙으로부터의 지원, 금융시스템의 역할 등이 필요
- 단기에는 외부자금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자국가들은 국제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식적인 자금조달이나 금융 협조가 필요함
- 중기에는 명목 이자율 변동 없이, 적자 국가들은 수출 증대와 수입 감축을 위해 통화가치의 평가절하가 필요

■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단위노동비용 기반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이 최고점에 비해 10~25% 하락
- 명목환율 하락은 크지 않았지만 단위노동비용이 크게 하락
  - 아일랜드는 임금 삭감과 노동력 감축(labor shedding) 등으로 인해 단위노동비용이 15~20% 하락
  -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노동력 감축으로 단위노동비용이 5~10% 하락
  - 그리스는 임금 삭감으로 단위노동비용이 10~15% 하락
- 노동비용 조정은 재화와 서비스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킴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수요의 반등으로 인한 수출량 증대
  -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서 수출업자의 평균이익이 증가
  - 유로 바깥 지역에서의 수요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나, 유로지역 내에서의 수요는 미진했음

■ (지속가능성) 현재의 재정수지 개선이 구조적 요인이라면 또 다른 외부 불균형을 유발하지 않고 실업률을 낮출 수 있지만, 경기순환적 요인이라면 예산제약으로 인해 실업률을 낮은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 2007~2012년 사이에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에서 경기순환적 요인이 경상수지 회복에 큰 공헌을 함
  - 구조적 요인은 경기순환적 요인에 비해 작으나,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에선 중요하게 작용
- 잠재 GDP와 실제 GDP의 차이로 나타나는 산출 갭(output gap)과 수입 하락이 경상수지 적자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아웃풋 갭을 줄이는 것이 외부적 불균형이 다시 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불균형 조정) 높은 성장률을 달성해야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음
- 잠재성장률은 낮게 유지되고, 이에 따라 실업률 또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지속 가능한 순해외채무(NFL: net foreign liability)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

■ (정책) 다양한 종류의 개혁으로 잠재산출량을 높이고, 유로지역 내의 내부적 · 외부적 균형 조정을 할 수 있음
- 거시경제 정책, 구조적 개혁, 금융부문 조정 및 개혁, EMU 구조 강화 등의 정책들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줄이면 기업과 은행은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성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
- 추가적인 금융완화 정책도 금융시스템 강화와 상대적 가격 조정 등을 통해 수요 확대와 내부적 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구조적 개혁) 명목임금상승률을 낮추고 상대적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통해 실질실효환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내부적 평가절하가 이뤄져야 함
-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적 개혁은 장기적으로 조정을 강화시킬 수 있음
- 하방 임금 경직성을 제거하여 조정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음
- 노동시장 유연성의 강화를 통해 생산성에 따라 임금 수준을 더 나은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됨
- 생산품 시장의 규제완화는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적 성장을 장려함

■ (통합) 자본시장의 발전과 통합으로 위기 관리 능력을 개선하고 회복을 위한 조치의 유동화가 가능해질 수 있음
- 유로지역 은행연합(Banking Union)의 지속적 노력은 위험 완화 등의 방법으로 불균형 개선에 공헌함
- 강력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서비스의 국가 간 이동성 향상,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를 통한 요소시장 통합, 재정통합(fiscal union) 등도 불균형 조정을 촉진할 수 있음

5. IMF, Fiscal Rules and the Procyclicality of Fiscal Policy in the Developing World(2014.7.)[47]

■ 개발도상국의 재정준칙 도입 현황[48]
- (도입 추이) 1990년대 중반부터 개발도상국의 재정준칙 도입이 급증했으며 2012년 말 기준으로 준칙을 운영하는 개발도상국 수(47개)가 선진국(28개)을 초과

[그림 13] 재정준칙 도입 국가 수(1990~2012)

(단위: 국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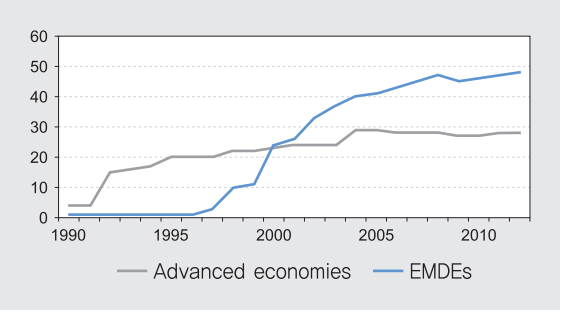

자료: IMF(2014), Figure 2.

47) https://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1738.0
48) IMF Fiscal Affairs Department(Schaechter 외, 2012)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

• (도입 이유) 개발도상국들은 통화동맹(currency union) 가입을 위한 수단, 높은 채무와 자금조달 비용 관리(안정화), 경제 자유화 프로그램(개혁) 이후 재정 프레임워크 강화 등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
  – 약 절반 정도(특히 라틴 아메리카, 남아시아)는 재정 위기나 채무위기 시 재정준칙을 도입하였고, 재정안정화계획의 일부로 도입하기도 함
  – 재정준칙이 MTEF(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와 관련하여 도입되는 경우도 있음
• (특징)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재정수지준칙과 채무준칙을 가장 많이 도입하였으며 두 준칙을 결합하여 운영하기도 함
  – 수지준칙과 채무준칙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발견된 반면 개발도상국은 절반 수준에 그침

[그림 14] 재정준칙 유형별 도입 국가 수(2012)

(단위: 국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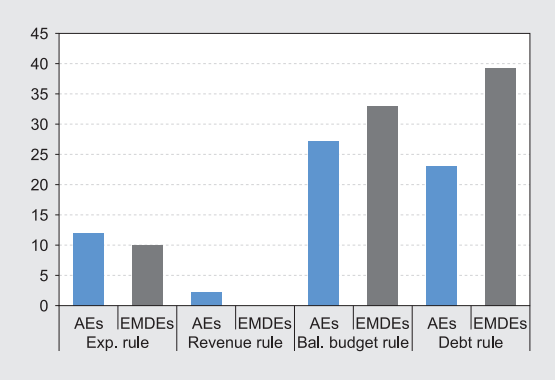

자료: IMF(2014), Figure 4.

• (준칙 변경) 선진국과 비교해, 위기 이전에는 개발도상국에서 재정준칙을 더욱 자주 변경하였으나 위기 이후에는 개발도상국의 변경 빈도가 상대적으로 작아짐
  – 이는 위기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더 급진적인 선택인 준칙 적용 유보에 의존하였기 때문

■ 개발도상국의 재정준칙과 경기순응성의 관계[49)]
• 평균적으로 공공지출이 선진국에서는 경기와 거의 상관 없는 모습을 보인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경기순응적임(특히 중동 지역이 더욱 경기순행적임)

〈표 23〉 공공지출의 경기순환적 요소와 실질 GDP의 회귀계수(1995~2012)

전체	선진국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유럽	중동
0.126	−0.039	0.137	0.208	0.125	0.240	0.210	0.528

자료: IMF(2014), Table 2.

• 개발도상국에서는 재정준칙 도입 이후에도 재정정책의 순응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준칙과 재정기조) 준칙 운영 시 선진국의 재정기조는 평균적으로 경기역행적으로 바뀌었으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경기순응성이 남아 있음
    * 재정준칙이 있는 경우 음의 상관계수를 보이는 국가 비중이 선진국은 약 절반을 차지하나, 개발도상국은 1/4에 못 미침

49) 분석방법: 156개국(선진국 31개, 개발도상국 125개)에 대한 unbalanced 패널 데이터를 이용,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공공지출의 경기순환적 요소와 실질 GDP의 상관계수를 계산하여 예산이 아닌 공공지출의 경기 순행성을 분석함. 일반정부 지출과 GDP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고, 경기순환적 요소는 Hodrick-Prescott filter를 통해 도출

〈표 24〉 재정준칙 도입 시 회귀계수(1995~2012)

	전체	선진국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유럽	중동
재정준칙 없음	0.210	0.046[1)]	0.412	0.204	0.270	0.305	0.199	0.528
재정준칙 도입	0.117	−0.321	0.125	0.224	0.124	0.193	0.552	–

주: 1) 재정준칙이 없는 선진국의 기간이 짧아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음
자료: IMF(2014), Table 3.

– (지역별)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재정 준칙과 다소 낮은 경기순응성 간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유럽지역에서는 경기순응성이 더 높게 나타남([그림 4]참고)

– (준칙 유형별) 다른 준칙에 비해 지출 준칙이 경기역행성과 더 관련이 있으나, 선진국과 달리 개발도상국에서 재정준칙이 큰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음

[그림 15] 1995~2012 준칙 유형별 경기순응성 (국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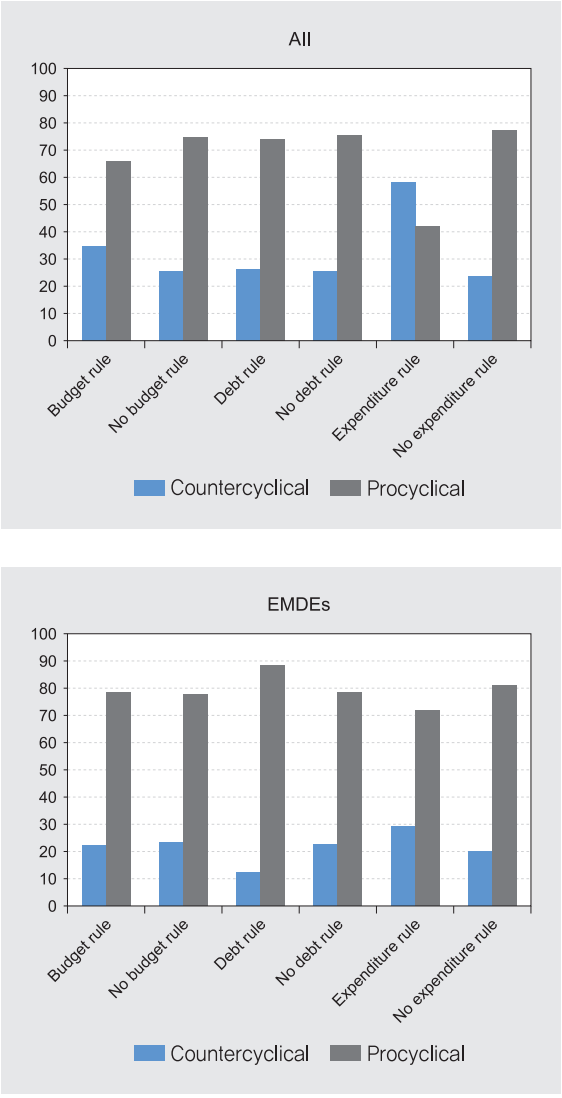

자료: IMF(2014), Figure 10.

■ 재정준칙의 설계와 경기순응성

• 재정준칙의 유연성이 확보되고 제도적인 지원 장치

가 있는 경우 재정준칙과 관련된 경기순응적 편향을 줄일 수 있음

- 경기조정된 목표, 명확한 예외 조항, 강화된 법적 강제 장치 등 차세대 준칙의 특징이 경기순응성을 줄이는 데 관련이 있다는 일부 근거가 나타남

• 첫째, 개발도상국이 운영하고 있는 재정준칙의 단순성이 지출의 경기순응적 기조를 북돋움

- (경기조정된 목표) 재정준칙에 경기조정된 목표를 도입하는 것이 공공지출의 높은 경기역행성과 관련이 있으나, 개발도상국 중 경기조정된 목표를 도입한 국가는 많지 않음
- (예외조항) 준칙 운영 국가 중 예외조항이 부재/미비한 경우 더 빈번하게 경기 순응성이 나타남

• 둘째, 좁은 적용 범위, 약한 강제 절차, 모니터 기관 부재 등 취약한 법적 · 관리적 환경은 경기순응성을 높일 수 있음

- 준칙의 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준칙 지수[50]는 선진국보다 낮음
- 법적 기반, 범위 및 강제 절차, 재정책임법, 재정위원회 등의 보완 장치는 준칙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여 필요시 경기역행적 조치를 위한 여력을 제공

• 셋째, 예산제도 수준 지수[51]와 경기순응성 상관계수에 음의 관계가 발견되어 더 높은 수준의 재정제도가 더 낮은 경기순응성과 관련됨을 알 수 있음

- 경기순응성을 줄이는 더욱 적극적인 제도를 만들고 재정 여력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은 재정준칙의 디자인을 개선할 여력이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신아 연구원〉

50) 준칙 지수(fiscal rule index)는 재정준칙 실행을 뒷받침하는 요인들의 수준을 측정함. 자세한 내용은 Schaechter 외, "Fiscal Rules in Response to the Crisis-Toward the 'Next-Generation' Rules. A New Dataset," 2012 참고

51) 예산제도 수준 지수(index of quality of budget institution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abla-Noriss 외, "Budget Institutions and Fiscal Performance in Low-Income Countries," 2012 참고

[그림 16] 2004~2012년의 회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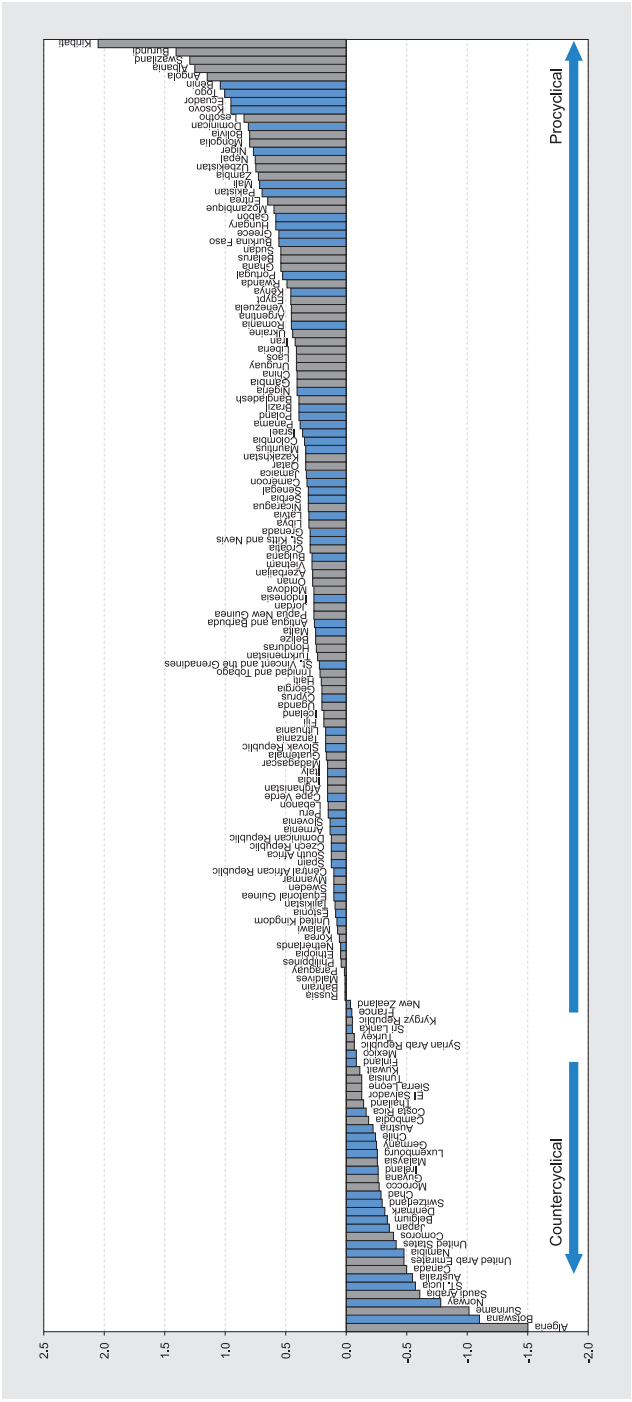

주: 표시부분은 재정준칙 적용 국가임

정책흐름

- 2014년 세법개정안
- 새 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방향과 1차 중간평가 결과 · 후속조치 확정
- 지방세외수입금 "납부는 쉽게, 관리는 효율적으로"

2014년 세법개정안

-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

* 본 자료는 2014년 8월 6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Ⅰ. 2014년 세법개정 여건

1. 경제 여건

■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세월호 사고에 따른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당초 성장률 전망(3.9%)보다 낮은 3.7% 성장 전망

* 성장률(전년 동기비, %): ('13.1/4)2.1 (2/4)2.7 (3/4)3.4 (4/4)3.7 ('14.1/4)3.9

• 고용 여건은 경기회복 부진 등으로 하반기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어 당초 전망 수준인 45만명(고용률 65.2%)에 그칠 전망

* 취업자 증감(전년 동기비, 만명): ('13.4/4)54 ('14.1/4)73 (4월)58 (5월)41 (6월)40

• 임금상승 정체, 취업자 증가세 둔화 등 기업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체감경기는 부진한 상황

* 실질임금증가율(%) : ('12) 3.1 → ('13) 2.5 → ('14. 1/4) 1.8

* 소득증가율 배율(가계/기업):
('80~'89)0.90 → ('90~'99) 0.94 → ('00~'12)0.59

2. 사회 여건

■ 고령화 추세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소비여력 감소 등 사회 활력 위축 우려

* 고령화 → 초고령화 사회 진입기간 : 한국 26년, 일본 36년, 독일 154년, 미국 94년

■ 소득불평등은 '11년 이후 점차 개선되어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 지니계수 : ('06)0.306 → ('08)0.314 → ('10)0.310 → ('12)0.307 → ('13)0.302

• 다만,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 상대적 빈곤율(%) : (전체/고령층) 한국('11) 14.6 / 45.6, OECD('12) 11.3 / 11.3

Ⅱ. 2014년 세법개정 방향

■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통한 민생안정을 세제측면에서 적극 지원

• 공평과세 실현 및 납세편의 제고 등 세제합리화 노력도 지속 추진

◈ (경제 활성화) 가계소득 증대, 투자 · 소비 확대, 중소 · 벤처 지원 등
◈ (민생안정) 재산형성 지원, 노후소득 보장, 주거 안정, 안전 · 복지 강화 등
◈ (공평과세) 비과세 · 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역외탈세 방지 등
◈ (세제 합리화)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협력비용 감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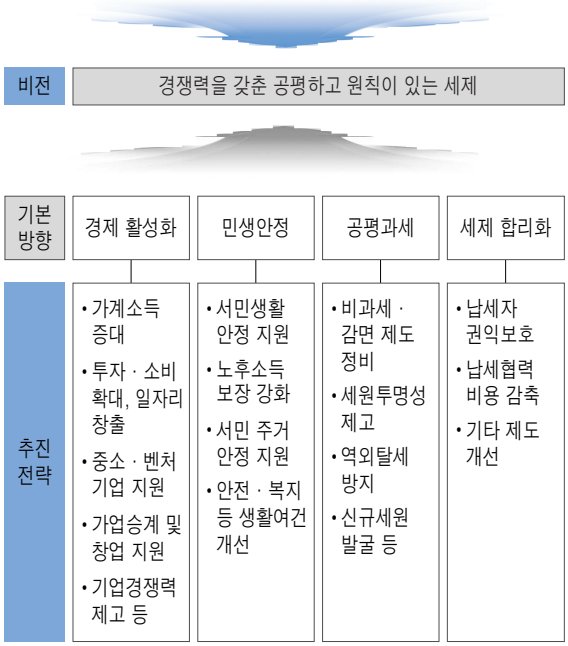

Ⅲ. 주요 개정내용

1 경제 활성화

1.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3년간 시행)

1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 세액공제 신설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임원, 고액연봉자를 제외하여 산정)을 초과하는 임금증가액

2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 → 9%)하여 소액주주 세부담 경감

* ① 시장평균 배당성향 · 배당수익률 120% 이상 & 총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 상장주식 ② 시장평균 배당성향 · 배당수익률 50% 이상 & 총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25%) 허용

3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추가과세(단일세율 10%)

–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단, 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과세방식: A방식 또는 B방식 중 선택(최초 선택시 3년간 계속 적용)

☞ (A) [당기소득 × 기준율 α(예:60~80%) − 투자 · 임금증가 · 배당액 등*] × 세율(10%)

☞ (B) [당기소득 × 기준율 β(예:20~40%) − 임금증가 · 배당액등*] × 세율(10%)

* 대 · 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예: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ⅰ) 당해연도 기준미달액은 다음연도의 기준초과액으로 공제 가능(미공제 잔액은 과세)

ⅱ) 당해연도 기준초과액으로 다음연도의 기준미달액에서 공제 가능

2. 투자 · 소비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1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우대

* (기본공제) 기업규모, 투자지역(수도권 · 지방)에 따라 투자금액의 1~4% 공제
* (추가공제) 투자금액의 3%(고용증가인원 1명당 1천만~2천만원 한도)

- 고용을 유발하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본공제율은 1%p 인하하고, 추가공제율을 1%p 인상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투자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 추가공제율을 각각 1%p 인상

개정안 반영 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변화

(단위: %)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안	수도권 밖	수도권 안	수도권 밖	수도권 안	수도권 밖
기본공제		1 → 0	2 → 1	2 → 1	3 → 2	4 → 3	4 → 3
추가공제	일반	3 → 4	3 → 5	3 → 4	3 → 5	3 → 4	3 → 5
	서비스업	3 → 5	3 → 6	3 → 5	3 → 6	3 → 5	3 → 6
합계	일반	4	5 → 6	5	6 → 7	7	7 → 8
	서비스업	4 → 5	5 → 7	5 → 6	6 → 8	7 ? 8	7 → 9

2 설비투자 등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영위기업이 설비투자 증가 시 조기에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가속상각 허용

  * 감가상각연수 가감범위 :
    중소기업('14.10.~'15.12. 취득분) ±25% → ±50%
    서비스업('15.1.~'15.12. 취득분) ±25% → ±40%

- 기술취득비용을 조기 회수할 수 있도록 특허권에 대한 비용처리 기간(감가상각 내용연수)을 10년 → 7년으로 단축

3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등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16.12.31.까지)
- 건전한 소비진작, 내수 활성화를 위하여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14.7.~'15.6)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 → 40%로 인상

  * '14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금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13년 연간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4 청년 · 여성 등 일자리 창출 지원

-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병역 이행 후 동일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2년 추가(3년간 50% → 5년간 50%)
- 출산 ·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 동안 인건비의 10% 세액공제('17.12.31.까지 운영)

  * 퇴직 前 1년 이상 근로, 출산 · 육아의 사유로 퇴직, 퇴직 後 3~5년 내 재취업

-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대학교 →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 한국형 직업학교로 확대

  * 기업이 대학교에 지급한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비에 대해 3~25% 세액공제

5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17% 분리과세)를 2년 연장하되, 헤드쿼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적용기한 폐지

  * 글로벌기업의 핵심 기능(사업전략, 인사관리, R&D 등) 지원 · 조정 업무 수행

3. 중소 · 벤처기업 지원

1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준 조정

-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 자본금이 증가하여도 중소기업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15.1.시행)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기준 준용(음식업 400억원, 운수업 800억원, 도소매업 1,000억원, 제조업 1,500억원)

•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대해서도 종업원 수, 자기자본 기준은 폐지하고, 자산총액(5천억원 이상) · 매출액(1천억원 이상) 기준만 존치

2 창업 · 벤처 생태계 조성

•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하는 금액 중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50% → 100%로 인상('17. 12. 31.까지)

* (현행) 5천만원 이하분 50%, 5천만원 초과분 30% (소득금액 50% 한도)

•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신주를 발행하여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시가-스톡옵션행사가액) 허용

※ 현재 현금정산형 및 자기주식 교부형 스톡옵션만 손금산입 가능

• 창투회사 · 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 비과세, 증권거래세 면제 등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 12. 31.까지)

3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영화관 운영업을 대상 업종에 추가

* 42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별 · 업종별 · 규모별로 5~30% 세액감면

•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제외기간을 3년 연장('17. 12. 31.까지)

* 상속 · 증여세 과세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할증평가(10~30%)

•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기계 등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관세감면율을 30% → 50%로 확대('15. 12. 31.까지)

•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를 연간 1,800만원 → 2,400만원으로 2년간 확대('16. 12. 31.까지)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중소기업 7%, 중견 · 대기업 3%)을 중견기업에 대해 3% → 5%로 인상

• 중소 화주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제3자 물류비용세액공제율*을 3% → 5%로 확대

* 화주기업이 물류전문회사에 지급한 물류비용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담보제공부담 완화를 위해 통관담보금액*을 물품과세가격의 60% → 40%로 경감

* 수입업체가 통관보류 해제 요청시 물품과세가격의 120%(중소기업은 60%)를 통관담보로 제공

4. 가업승계 및 창업 지원

1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중소 ·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

* 중소 · 중견기업(매출 3,000억원 미만) 상속시 상속재산가액의 100%(500억원 한도) 공제

• 공제대상을 매출액 3천억원 →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

• 공제대상 가업요건 완화(10년 이상 경영 → 5년 이상)

• 최대주주 지분보유요건 완화(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50%(상장 30%) → 1인 지분 25% 이상시에도 적용)

• 상속인의 가업사전종사(2년 이상) 및 1인단독상속 요건 폐지

• 사후관리기간을 단축(10년 → 7년)하고, 각종 사후관리의무 완화

① (업종유지) 세분류 내 → 소분류 내+사업전환업종(중기청 승인)

② (가업용 자산 유지) 80%(5년 내 90%) 이상 → 폐지(단, 개인기업은 50% 이상)

③ (고용유지) 매년 80% 이상, 10년 평균 100%(중견기업은 120%) 이상 → 매년 고용유지요건 폐지, 7년 평균 100% 유지

2 가업 사전증여 및 창업지원 확대

-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저율과세(10%) 특례 적용한도를 주식가액 30억원 → 100억원으로 확대
  - 특례세율은 10% → 과표 30억원 초과분은 20% 적용
    ※ 사회 · 경제적 공헌도가 검증된 "명문장수기업"에 대해 추가지원방안 마련
- 가업 · 창업자금 사전증여시 일시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5년간 분납 허용

5.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이전 지원세제 합리적 재설계

- 지방이전기업이 실질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 기간(5~10년) 기산점을 지방이전일 → 최초 소득발생일로 변경
  * 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② 중소기업 공장이전(적용기한 3년 연장), ③ 본사 지방이전(적용기한 3년 연장), ④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
- 기업이 일시에 이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본사 인원 50% 이상 지방근무 판단 시점을 지방이전일 → 이전일부터 3년 후로 완화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은 무점포 판매업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6. 기업 경쟁력 제고

1 M&A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

- 구조조정 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시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
  * 구조조정기업 지배주주 등이 보유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신주 등을 교부받거나 다른 내국법인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전부와 교환하는 경우
- 적격합병 · 분할시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사후관리요건* 적용 예외사유**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기업 등으로 확대
  *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합병 · 분할 이후 2년 내 처분하지 않을 것
  ** (현행) 법정관리상 회생절차에 따른 주식 처분 → (개정안)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 등에 따른 주식 처분 추가
- 기업재무안정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등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

2 문화 · 의료분야 경쟁력 제고

- 신성장동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문화콘텐츠 분야 핵심기술(영화 · 애니메이션 기술 등) 추가
  *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산업 R&D비용의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 12. 31.까지)
  * 문화접대비에 대해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 손금산입
-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에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종이신문과 동일하게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3 톤세* 적용대상 해운기업 확대

* 선박의 순톤수 ·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과세

- 해운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톤세 적용기한을 5년 연장('19. 12. 31.까지)
- 관광진흥 및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용대상을 '국제순항여객운송사업'까지 확대

4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 친환경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200만원 한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 12. 31.까지)

2 민생안정

1.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1 서민 재산형성 지원

-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고령자 등 지원을 위한 생계형저축과 통합 · 재설계하고 '비과세종합저축' 으로 명칭 변경
  - 가입대상을 고령자 ·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납입한도는 5천만원으로 확대(기존 생계형저축 3천만원)
  - 단, 고령화 추세, 노인복지법령상 연령기준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가입연령을 5년에 걸쳐 60세 →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120만원 → 240만원으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3년간 납입한도(120만원) 유지
- 서민층* 및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15~29세)에 대하여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7년 → 3년으로 완화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연간 144만원 납입한도)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 12. 31.까지)

2 서민이용 물품 · 용역에 대한 세부담 경감

-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영유아용 기저귀 ·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 12. 31.까지)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물품에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 추가
- 소비위축 등으로 인한 음식 · 숙박업자 등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년 연장('16. 12. 31.까지)
  * 신용카드 등으로 받은 물품 · 용역대금의 1%(음식 · 숙박업 간이과세자 2%)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14년까지 각각 1.3%, 2.6% 우대공제율 적용)
- 시외버스와 유사한 대중교통수단인 일반 고속버스(우등버스 제외) 운송 용역에 대해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18. 3. 31.까지)
- 서민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를 2년 연장('16. 12. 31.까지)
  * 휘발유 · 경유 250원/ℓ , LPG부탄 161원/ℓ 환급(연간 10만원 한도)

3 농 · 어민 등 지원

- 농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농 · 어업용 수입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 12. 31.까지)
-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 12. 31.까지)
  * 8년 이상 재촌,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990㎡ 이내) 등 폐업시 양도소득세 면제
- 재촌자경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 12. 31.까지)
-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 12. 31.까지)
  *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 · 고향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재촌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거리기준을 농지로부터 20km → 30km 이내 거주로 확대

4 중산층 상속 · 증여세 부담 경감

- 그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상속 · 증여재산에

서 공제되는 인적공제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한도 수준을 현실화

* 다자녀 · 장애인 및 부모 봉양 등 개별 인적공제가 일괄공제(5억원)보다 높아지도록 하여 상속 가구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화

구 분		현 행	개정안
상속공제	자 녀 연로자 장애인 · 미성년자	3천만원 3천만원(60세) 年500만원×잔여연수*	5천만원 5천만원(65세) 年1천만원×잔여연수*
증여공제 (10년 합산)	자녀 → 직계존속 기타 친족	3천만원 500만원	5천만원 1천만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Min(20%, 2억원)	Min(20%, 3억원)

* 장애인은 78세(여성 84세), 미성년자는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동거봉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을 40% → 100%로 확대(공제한도 5억원 유지)

2.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1 사적연금 가입 제고

•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

* (현행) 연금저축+퇴직연금 400만원 → (개정안) 400만원+퇴직연금 한도 300만원

2 퇴직소득의 연금화 유도 및 과세체계* 개편

* 퇴직소득금액에 정률공제(40%), 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 1년당 30~120만원) 적용

• 퇴직금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세금부담을 30% 경감

• 정률공제(40%)를 퇴직급여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전환하여 고액 퇴직자에게 유리한 퇴직소득 과세체계 개편

근로 · 퇴직소득 간 실효세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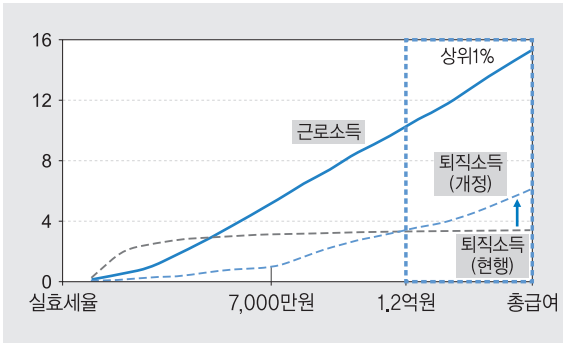

퇴직소득 과세체계 개편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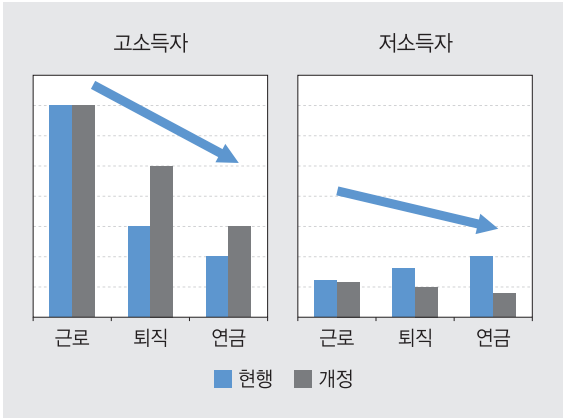

• 부득이한 사유(사망, 의료비 등)로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저율(3~5%) 분리과세

* 현재는 기타소득으로 12% 분리과세

3 소규모 자영업자 노후소득보장 지원

• 노란우산공제*(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 불입원금 · 운용수익을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하여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 소기업 · 소상공인의 폐업 · 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 (현행) 납입시 300만원 소득공제, 수령시 원금 비과세, 운용수익 이자소득 과세

4 기부장려금 제도 도입

•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기부자가 신청하는 경우 기부금단체에 환급

3. 서민 주거안정 지원

1 주택구입비 부담 완화

•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 · 한도 확대

현 행		개 정 안	
차입금요건	공제한도	차입금요건	공제한도
• 만기 15년 이상 <신 설>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기 타	 1,500만원 500만원	•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800만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 설>		• 만기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원

2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기간을 2년 연장하되, 분리과세 금액 한도 설정*

* (현행)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분 14%(분리과세 한도 없음)

* (개정안)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 기존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시 기존 임대기간의 50%(최대5년)를 준공공임대기간으로 인정

* 요건: ① 85㎡ 이하 ② 10년 의무임대 ③ 시세 이하 임대료 ④ 임대료 5% 인상 제한

【참고】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2.25, 3.5) 관련 임차인 · 임대인 세제대책

임차인

□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월세 지원 강화

• 월세 지급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1년에 한 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하는 효과)

• 공제대상 확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포괄)

월세 소득공제 개선방안

	현 행	개 선
공제대상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공제방식	소득공제	10% 세액공제
공제율 · 한도	월세액의 60%, 500만원	월세액 중 750만원까지(75만원)

임대인

□ 소규모(年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3년간 한시적 비과세('14~'16년 소득분) 후 분리과세('17년 소득분부터)

– 필요경비율 60%, 단일세율 14%

– 기본공제 4백만원 인정(단, 타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과세

□ 주택임대사업 결손금을 근로소득 등 타소득금액에서 공제 허용

□ 준공공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 감면율 확대(20% → 30%)

□ 신규 · 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

□ 일정 임대주택리츠에 부동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중소기업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 감면

4. 안전 · 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1 안전 · 복지시설 등 투자 지원

-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공제율 상향조정 및 공제대상 추가
  * (공제율) 중견기업 3% → 5%, 중소기업 3% → 7%
  * (공제대상)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및 소방시설 등 추가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대상 법정기금 사용범위에 중소기업의 안전관련 설비 투자 포함
  *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신 · 기보 보증기금,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7% 세액공제(기금사용은 일정범위로 한정)
- 화재 · 도난 등 위험 발생을 예방하는 무인경비업의 출동차량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3%~10%) 대상에 토양오염 방지시설 추가
-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의료법인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한도 확대('16. 12. 31.까지 수익사업소득의 80% → 100%)
-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7%) 대상*에 종업원 건강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는 직장 내 부속의료기관을 추가
  * (현행)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체력단련시설 등

2 의사자 등 유가족 지원 확대

- 의사자 · 국가유공자 유족이 받는 위로금 · 성금 등 증여세 비과세
- 기업이 근로자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

3 공평과세

1. 비과세 · 감면제도 정비

◇ 성과평가를 통해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제도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
- 다만, 농어민 · 중소기업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유지

1 국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
  * 내국법인(모회사)이 국외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경우 국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비율 상당액을 국내모회사의 법인세에서 공제
- 국내 · 외 투자 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을 모회사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국외자회사 범위 축소*
  * (공제대상) 현행 자 · 손회사 모두 공제 → 손회사 제외(국외자회사 지분율) 현행 10% 이상 → 25% 이상

2 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 농협, 신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일부 세무조정 후 9%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 조합법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례제도를 3년 연장('17. 12. 31.까지)

– 단, 영세 중소기업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당기순이익 1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특례세율을 9% → 17%로 조정

3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단, 재활용 폐자원 공제율(5/105) 등을 감안하여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현행 9/109 → '15~'16년 7/107 → '17년 5/105)

※ 국회심의시 마진과세 도입 여부와 함께 논의

4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 · 경비 · 청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 · 경비 ·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 12. 31.까지)

– 다만,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비수도권읍 · 면지역 제외)에 대해서는 과세 전환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 · 경비 · 청소용역은 영구 면제

5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건물 · 구축물*의 처분 · 전용 제한기간을 2~3년 → 5년으로 연장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미술관, 공연장 등, 근로자복지증진투자세액공제 대상 임대주택, 기숙사 등

6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조세감면 정비

구 분	조세감면 내용	정비 사유
일몰종료	• SOC 채권 분리과세	• 타 금융상품과의 형평성
	• 해외펀드 손실상계	• 충분한 기간 동안 지원한 점 감안
	• 자본확충목적회사 증권거래세 면제	• 지원대상이 없는 점 감안
	• BTO 방식의 학교시설운영권 등 부가가치세 면제	• 면세효과 미미, 타 사회기반시설과의 형평성 감안
재설계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2년간 50%)	• 고부가가치 투자 유도를 위해 외투 R&D센터 등에 한하여 4년 연장
	• 해외자원개발펀드 분리과세	• 유사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감안, 분리과세 한도 2억원 신설
	•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 유사 감면과의 형평성을 감안, 감면제도로 전환 (감면한도:1년 2억원, 5년 3억원)
	•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발전 · 투자촉진지구) 세액감면	• 「지역개발지원법」상 낙후형 지역개발사업으로 통합 감안, 제도 통합

2. 세원투명성 제고

1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모든 법인사업자('15. 7. 1. 시행),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 3억원 초과 과세 · 면세 겸영사업자('15.7.1. 시행), 직전연도 수입금액 일정규모(예: 10억원) 이상 면세사업자('16.1.1. 시행)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자동차 관련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추가

* 고소득 전문직 등 44개 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부과

**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2 면세유 부정유통 관리 강화

• 면세유 부정유통 유인을 줄이기 위해 '09. 12. 31. 이전에 출고된 중고난방기에도 면세경유 대신 면세등유를 공급

* 현재 '10.1.1. 이후 출고분, '11.7.1. 이후 취득하는 중고난방기에 대해 등유만 공급

- 면세유 사용실적 또는 농어업 생산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년간 면세유 사용 제한
-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를 받은 경우 그 친족이 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

3 세수일실 방지를 위한 납부방법 등 개선

- 자료상을 이용한 신종 세금탈루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을 추가

  * 물품매입자가 물품구매시 대금을 금융기관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금융기관이 대금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과세관청에 직접 납부하는 제도

- 서화 · 골동품을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원천징수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양도자가 원천징수하여 신고 · 납부

  *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 서화 · 골동품에 대해 양도가액의 80%(10년 이상 보유시 9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에 20% 세율로 원천징수

- 법인격을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대상법인을 비상장 · 코스닥 상장법인 → 모든 법인으로 확대

4 탈세 감시 및 처벌 강화

- 음성적 현금탈세 차단 등을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1건당 50만원 → 100만원으로 인상
- 지능적 · 국제적 조세포탈 등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조세범 공소시효를 5년 → 7년으로 연장
- 타인 명의의 기존 사업장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자 등에 대하여 조세범으로 처벌

5 체납세액 징수노력 강화

- 체납처분 집행시 재산소재파악 등을 위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 가족 등을 질문 · 검사권 대상*에 포함

  * (현행) 체납자, 체납자와 거래관계 ·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등

- 고액 관세채권(5억원 이상)에 대하여 내국세와 동일하게 징수권 소멸시효를 5년 → 10년으로 연장

3. 역외탈세 방지 강화

1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을 1년 이상 → '6개월(183일) 이상' 으로 강화

  * 미국 · 영국 · 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6개월(183일) 기준 적용

2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 현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 증여시 증여자에게 과세하되, 해당 재산에 대해 해외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면제

- 국외재산 증여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 과세면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한함)

3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 강화 등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벌금 등 제재를 강화*하되, 수정신고 · 기한후신고시 과태료 감면 확대(감면율 10~50% → 10~70%)

  * (벌금) 미신고금액(50억원 초과시)의 10% 이하 → 20% 이하
  (과태료) 미신고금액의 4~10% → 10~20%

-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인상*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 15년
  (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의 40% → 60%

4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강화

- 국내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과다한 이자비용 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 모회사로부터의 차입금 한도 강화(자본의 3배 → 2배)

  * 현재 국외 모회사에 지급하는 차입금한도 초과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

- 해외자회사의 과다한 이익유보에 대한 과세 강화

  * 과세대상 자회사의 범위(지분율 50%) 판정시 내국인 주주와 지분을 합산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범위를 현행 외국인 → 내국인까지 확대

4. 신규 세원 발굴

1 해외 오픈마켓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 국내외 용역공급자 간 과세형평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예:구글, 애플)에서 구입한 전자적 용역(앱, mp3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국외사업자의 온라인 간편사업자등록을 통한 부가가치세 납부(EU시행)

2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

- 해외 과세사례 등을 감안하여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15. 7. 1.시행)

  * 구체적인 과세 전환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는 시행령 개정시 확정·발표

4 세제 합리화

1.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1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법제화

- 영세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무보수 세무대리인 제도"를 법규화

  * 현재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

2 경정청구기간 등 확대

- 경정청구기간을 3년 → 5년으로 확대하여 부과제척기간과 일치
- 납세자뿐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화재 등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납부기한 등 연장사유로 인정
- 근로장려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3개월 → 6개월로 연장

3 공익사업 대토 보상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 대토 보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선택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15% → 20%)

  * 보상받은 대토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4 관세 재심사 제도 도입

-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제도 도입('13. 12. WTO DDA 무역원활화협정)

2. 납세 협력비용 감축

1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한도 폐지

-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등 국세(관세 포함) 납부한도(1,000만원) 폐지

2 신고·납부절차 등 간소화

- 「임대주택법」상 임대조건신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임대신고 관련 서식을 통합하여 1회만 신고하도록 개선

  * 임대사업자 과세특례요건(임대기간 등)은 세무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망으로 확인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 → 6개월 이내로 연장

•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 제출기한을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월 → 과세기간 종료일로 변경

3 외국인투자기업 불편 해소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투기업 투자이행기간(5년)이 연장(최대 1년)되는 경우 해당 기간 내 투자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혜택* 적용

* 소득세 ·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 감면

3.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 제도개선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유예기간 1년 연장

•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개인 · 중소기업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10%p) 유예기간을 1년 연장('14. 12. 31. →'15. 12. 31.)

2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조정(400$ → 600$)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30% 공제(한도 : 15만원)

* 제주도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도 400$ → 600$로 상향조정

– 다만,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0% → 40%로 인상(2년 이내 2회 이상 상습위반자는 60% 적용)

3 납세협력수준에 따른 가산세 차등화

• 법인이 제출기한 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내(현행 1개월 내)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 경감(2% → 1%) 허용

• 내국세와 동일하게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수정신고 기간별로 차등 경감*

* 보정기간(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경과 후 6개월 내 20%, 1년 6개월 내 10%

4 영세사업자 가산세 경감

•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확대(전년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된 점을 감안하여 가산세 경감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16. 12. 31.까지)

* (지연전송) 공급가액×0.5% → 공급가액×0.1%
(미전송) 공급가액×1.0% → 공급가액×0.3%

5 외부감사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시 가산이자율 경감

•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가산이자율을 연간 10.95% → 2.9%로 인하

Ⅳ.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1. 세수효과 : 총 +5,680억원

■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5,680억원

• (증가 요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 퇴직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등

• (감소 요인)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등

연도별 세수효과(전년 대비 기준)

(단위: 억원)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후
계	5,680	550	510	1,090	580	2,950
소득세	760	90	△170	430	400	10
법인세	3,060	△50	60	110	–	2,940
부가가치세	2,170	720	720	550	180	–
기타	△310	△210	△100	–	–	–

2. 세부담 귀착

(단위: 억원)

서민 · 중산층[1]/중소기업	고소득자/대기업	기타[2]	계
△4,890	+9,680	+890	+5,680

주: 1) OECD의 서민 · 중산층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총급여 5,700만원 이하)
2) 외국인 · 비거주자 · 공익법인 등

Ⅴ. 추진일정

1. 개정 대상 법률 : 총 16개

■ 내국세(13개)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세무사법

■ 관세(3개)

•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 추진일정

■ 8~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상정(9월 중순)

■ 9. 23일까지 정기국회 제출

새 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방향과 1차 중간평가 결과 · 후속조치 확정

* 본 자료는 2014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서 발표한 「새 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방향과 1차 중간평가 결과 · 후속조치 확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상화 대책을 지속하면서도 경기대응능력 제고, 생산성 ·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는 「새 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확정

◇ 1차 중간평가 결과 지역난방공사, 한국감정원 등 11개 기관에 대한 방만 중점관리기관 또는 점검기관 지정을 해제

■ 7. 31.(목) 14시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 「새 경제팀의 정상화 대책 추진방향」과 「2014 공공기관 1차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논의 · 확정하였음

■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 새 경제팀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모멘텀은 일관성 있게 유지하되

– 공공기관 정상화의 기본원칙은 견지하면서도,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또한 공공기관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노동계와의 소통도 노사정위원회의 대화채널을 활용하여 강화하겠다고 설명하였음

•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음

– 부채감축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공사채 총량을 총부채의 60% 이내로 설정하고

– 이 비율을 매년 줄여나가는 공사채 총량제도를 금년 10월부터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한편

– 부채감축계획 수립 이후 환율 하락 등으로 발생한 재원 중 5조원 이상을 국민의 안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제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능 조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아울러 공운위에서 17개 기관의 방만경영 이행실적에 대한 1차 중간평가 결과를 의결함

•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완료한 13개 기관 중 부채 중점관리기관(석탄공사, 철도시설공단)을 제외한 11개 기관*은

– 방만 중점관리기관 또는 점검기관 지정을 해제키로 하였음

* ① 방만 중점관리기관(9): KIC, GKL, 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거래소, 무역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주택보증, 지역난방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② 중점외 점검기관(2): JDC, 한국감정원

- 반면, 수은, 부산항만공사, 가스기술공사, 정책금융공사 등 4개 기관은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점관리기관 또는 점검기관 지정 해제를 유보하고
  - 향후 실시될 후속 중간평가에서 다시 점검키로 하였음

■ 이어 15시부터 부총리 주재로 39개 부채 ·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장, 126개 기관 감사, 공운위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금번 워크숍은 새 경제팀의 정상화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 기관장 ·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것을 당부함
- 또한 정상화 추진 우수사례와 토론 등을 통해 조기 노사협상 타결, 비핵심자산 매각 등 정상화에 있어 서로의 노하우와 애로사항을 공유함

■ 향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은 정상화 이행 실적을 중간평가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10. 10일)의 국민 상세 보고 등으로 진행될 예정임

- 정부는 오늘 발표한 새 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공공기관 정상화가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하겠음

지방세외수입금 "납부는 쉽게, 관리는 효율적으로"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 본 자료는 2014년 8월 7일 안전행정부 지방세입정보과에서 발표한 「지방세외수입금 "납부는 쉽게, 관리는 효율적으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14. 8. 7(목)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 · 관리를 위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 법 시행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주민편의가 제고된다.
- 한편, 자치단체에서는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해 지방세 과세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 압류 등의 명확한 체납처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100만원 이상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시 자치단체에서 체납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 고액체납자(500만원 이상)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하여 체납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또한, 전산시스템을 설치 · 이용하여 신속 · 정확한 지방세외수입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범위를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종*으로 열거하여 명확히 하고 있다.

  * 지방세외수입징수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과징금 54종, 이행강제금 12종, 부담금 14종

■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 법 시행으로 지방세와 같이 지방세외수입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져 주민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중해야"… 전문가들 세법개정안 갑론을박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더 원활하게 환류시키려면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기업을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대주주에게,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자금 여력이 있는 회사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의견은 한국재정학회와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13일 열린 '2015년도 세법 개정안 라운드테이블'에서 제시됐다.

◇ **"투자 · 배당 증가분을 고려해야"**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타당성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실효성에는 회의가 있다"면서 "투자와 임금, 고용, 배당을 늘리지 않은 기업에 대한 압박 수준을 높여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원안대로 시행되면 상당수 대기업이 투자나 임금, 배당을 늘리지 않더라도 세금을 더 내지 않는다"면서 "투자와 배당도 금액 자체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처럼 증가분을 차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안으로는 당기소득 중 200억원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 법인세 인하분 3%를 세율로 적용한 후 여기에서 인건비와 투자 · 배당액 증가금액을 빼는 산식을 제시했다.

이는 투자 성향에 따라 당기소득의 20~40% 또는 60~80%에서 기준선을 정해 10% 세율을 적용하는 기업소득환류세 정부안보다 더 강한 방식이다. 그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산식이 너무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서 "산식에 기업의 투자 규모를 고려하지 말고 '안 쓸 거면 돌려주자'는 소득환류세제 개념에 어긋나지만 않도록 산식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철회 의견도**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우철 교수는 "실제 임금증가 대상이 돼야 할 일반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상승보다는 우량 중소기업 등 세제 혜택이 없어도 임금 인상이 가능한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소득 증대세제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크기가 인금 인상 시기 조정을 유도할 만큼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종규 연구위원은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주식을 보유한 최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면서 "대주주 분리과세를 철회하거나 분리과세 세율을 정부안보다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임금소득은 530조원, 이자소득은 49조원, 배당소득은 14조원"이라며 "배당소득은 워낙 덩치가 작아 경제 선순환에 기여를 못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원칙과도 배치되는데 이런 점을 흔들면서까지 세법에서 무

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우철 교수는 "배당된 소득은 결국 주식시장으로 재유입되거나 2차적 배당 형태로 가계에 귀속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전병목 박사는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면 직 · 간접적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 확대에 이바지하고 주가 상승을 유도해 자산효과를 유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4-08-13〉

공공기관 감사, '정치인 낙하산' 줄줄이

재미 방송인 자니 윤(본명 윤종승 · 78)씨가 한국관광공사 감사로 임명되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특히 그가 정부 내부의 반대를 뚫고 '감사' 자리에 낙점된 과정이 알려지면서,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의 허술한 감사 인선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은 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해 방만한 경영이나 도덕적 해이가 쉽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를 감시해야 할 감사의 전문성이 다른 기업보다 더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감사 인사는 이와 반대로 전문성이 없고 정부나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상임감사에 대한 감시와 평가는 올해 들어 후퇴했다. 기획재정부가 올 들어 공공기관장 평가방식을 바꾸면서,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도 '매년'에서 '재임 중 1회'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해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하는 『KIPF 공공기관 이슈 포커스』 8월호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 상임감사가 줄줄이 낙하산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상임감사 임기 중 1회 평가는 그들이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유도하던 긍정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38개 중점 관리 대상 공공기관 중 상임감사 11명이 정치인 출신이고, 감사원 출신이 아닌 관료 출신이 11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2014-08-12〉

증세 반대하지만… 종교인 과세 · 담뱃세 인상은 압도적 찬성

"사내 유보금 투자유도 좋은 생각" 65.6%
반대하는 기업과 의견 차이 크게 벌어져

세금은 항상 뜨거운 이슈다.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은 갈린다. 서울경제신문 창간 54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6명(64.8%)이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에는 79.6%가 찬성했고 담뱃세 인상에도 73%가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국민 10명 중 4명 가까이가 '1년 전에 비해 가정 경제의 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할 정도로 현재의 경제상황은 좋지 않다. 그래서인지 국민들은 '7 · 24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60% 가까이가 부작용은 있겠지만 경기부양책에 동의한다고 한 것은 경기 흐름을 우상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바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다.

기업과 국민 사이의 간극도 컸다. 특히 기업 유보금 등에 대한 과세나 투자유도 방침에 대해 재계는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내고 있음에도 설문 응답자의 65.6%가 '좋은 생각'이라는 의견을 냈다. 법인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들 10명 중 8명이 찬성했다. 기업의 이익규모는 커지는데 국민들의 주머니는 얇아지고 있는 데 대한 허탈감 등

으로 해석된다.

주요 증세 방안에 대한 의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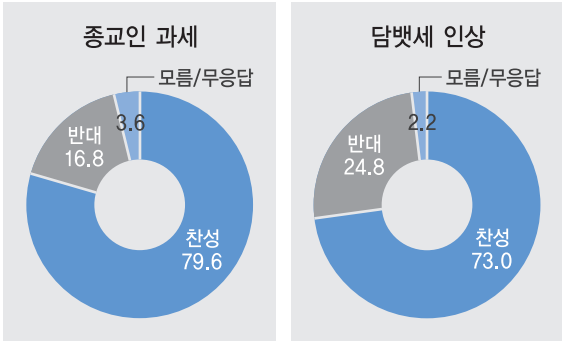

◇ 증세는 반대하지만… 담뱃세 인상, 종교인 과세 '대찬성'

경기부진과 복지지출 증가로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한 증세에 대한 찬성 의견은 32.0%에 그쳤다. 증세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는 얘기인데 증세 반대는 새누리당 지지자(67.3%)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67.3%) 등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다만 일부 세부 항목에서는 증세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무엇보다도 세법개정안을 앞두고 항상 쟁점으로 부각했던 종교인 과세와 담뱃세 인상에는 다수가 찬성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문에 79.6%가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 의견(16.8%)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73.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24.8%에 그쳤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종교인 과세와 담뱃세 인상을 이제는 해야 할 때가 됐다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기업과 국민, 벌어지는 간극

몇몇 항목을 보면 기업과 국민의 간극이 컸다.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신규투자나 배당으로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답한 비율은 19.4%에 그쳤다. 65% 이상이 찬성 의견을 냈는데 재계가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일부 기업은 수천억원의 세금부담을 지게 된다"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안에는 82.6%가 찬성하고 12.5%만이 반대했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활성화는 곧 기업활동 활성화이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을 분리해서 볼 수 없다"면서 "기업 유보금이나 법인세 관련 답변을 보면 국민들이 다소 감정적으로 보고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내유보금이 가계소득으로 직결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지 않았거나 법인세를 인상하면 곧 부가세도 오르고 장기적으로 임금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2014-08-01〉

재정포럼

2014년 8월호 통권 제218호

■ **발 행 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 행 인** /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 집 위 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혜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담당연구원** / 최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원)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장은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홍유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14년 8월 14일 발행 / 제18권 제8호(통권 제218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02) 2186-2130~4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TEL: (02) 2269-2234
■ **인 쇄** / 상일인쇄 TEL: (02) 2269-6770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 · 전화 · FAX · 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 · 이름 · 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2) 2186-2132
- FAX: (02) 2186-2139
- E-mail: pub@kipf.re.kr
- 주소: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441-05-000011
- 예 금 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